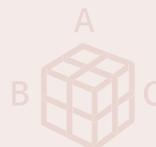


2018년 교육정책 연구보고서

학교 인권교육 개선방안 연구

8권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2018년 교육정책 연구보고서

학교 인권교육 8권 개선방안 연구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학교 인권교육 개선방안 연구 :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연구진

연구 책임자 | 박용조(진주교육대학교)

공동 연구자 | 정용석(진주교육대학교)

자문위원 | 이필우(거제여자상업고등학교)

곽병현(창원남산초등학교)

이준혁(김해삼성초등학교)

연구 보조원 | 김수민(진주교육대학교)

※ 이 연구는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연구용역비로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 제시된 정책대안이나 의견 등은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팀의 견해를 밝혀둡니다.

<연구 요약>

학교 인권교육 개선방안 연구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류 보편 가치인 인권의 영역과 범위는 확대되고 있다. 인권 문제에 있어서, 이전에는 덮어 두었던 것들이 오늘날에 와서 문제로 제기되어 쟁점이 되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전혀 인식조차 하지 못했던 것들이 오늘날에 와서 새롭게 문제로 인식되기도 한다. 인권은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개념이 수정되고 보완되어 왔다. 최근 10년래, 한국의 인권 상황 또한 많은 변화를 거쳐 왔으며, 이에 따라 인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추구하기 위하여 인권교육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상남도 초·중등학교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남도 초·중·고등학교의 인권교육 실태를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학교 인권교육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2. 연구내용 및 범위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인권교육 개념 정리 및 국내·외 학교 인권교육 정책 연구 동향 검토, 경남의 학교 인권교육 현황 실태 조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학교 인권교육 개선 방안 제안으로 구성된다.

3. 연구 방법

- 인권교육의 개념과 학교 인권교육 체계 및 선행연구 정리는 문헌 연구 및 자료 수집을 통하여 정리하였다.

- 경상남도의 초·중·고등학교의 인권교육 실태 조사를 상세화하기 위하여 설문지는 기관용, 교원용, 학생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 기관용은 경상남도 지역교육청(18개)과 초·중·고등학교(956개) 전체에 설문 의뢰하였고, 교원용 및 학생용은 지역, 학생수, 공·사립 등을 고려하여 62개 학교를 선정하여 설문 의뢰하였다. 기관용은 11개 지역교육청과 764개 초·중·고등학교에서 응답하여 응답률은 81.1%이고, 교원용 및 학생용은 50개 학교로부터 설문지를 회수 받음으로써 회수율은 80.6%이었다.

4. 연구 결과

- 인권교육의 개념과 (학교)인권교육 체계, 선행 연구 및 정책 동향

오늘날에는 인권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에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학교)인권교육의 의미는 인권의 지식, 기능, 가치·태도의 발달을 통하여 보편적인 인권 문화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학교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권교육 계획, 선행 조건 조성, 운영 방식에 대한 결정이 있고, 이후에 학교 교육 일반의 체계에 따라 인권교육은 목표, 내용, 방법, 평가로 구분되어 실천되며, 마지막으로 인권교육 활동에 대한 사후 관리가 뒤따른다.

학교 인권교육 관련 선행연구에는 인권교육 프로그램 효과 검증 연구, 인권 관련 내용 수업의 효과 검증 연구, 초·중등교육에서 인권실태를 조사한 연구가 있었다. 본 연구는 경상남도라는 특정 지역의 학교 인권교육 실태를 조사하고, 학교교육의 일반 체계에 따라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국내 학교 인권교육 정책은 교육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시·도교육청 등 여러 국가기관에서 추진되고 있다. 학교 인권교육의 주요 동향을 보면, 19대 국회에서 ‘인권교육지원법’ 제정이 추진되었으나 철회되었고, 시·도교육청의 경우, 1-2개 부서에서 장애학생 인권교육 및 노동인권교육을 인권교육의 주요 담당 업무로 추진하고 있다.

○ 경상남도의 학교 인권교육 현황 실태 조사 및 결과

○ 설문지의 체계 및 구성

학교 인권교육 현황 및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지 내용의 형식은 안내문, 인적사항, 도입설문, 본설문으로 나누어지며, 본설문은 일반적인 학교 교육 체계에 따라 교육 계획, 선행조건, 운영, 실천, 사후 관리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 ‘인권교육 계획’ 설문 조사 결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의 활용과 배당 시수가 미흡하고, 교육방식은 일방적이고 획일화된 방법(유인물읽기, 동영상시청 등)이며, 인권교육 프로세스에 필요한 요소인 교과와의 연계, 교원 인권연수, 가정·지역사회·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인권교육 선행 조건’ 설문 조사 결과

교원 및 예비교원 연수, 교내외 활동 조직, 프로그램, 지역사회와의 연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인권교육의 운영’ 설문 조사 결과

학생들은 인권 개념을 잘 알고 있고, 학교에서 인권 정보를 획득하는 비중이 큰 편이며, 인권교육 경험이 많아 긍정적이다. 인권교육은 주로 도덕, 사회, 국어 교과를 통하여 받으며, 교과 외 시간에 인권교육을 받는 경우 방송 계기교육, 외부강사 초청강연, 학교 행사를 통해서 이다. 학생과 교원 모두 인권교육이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교원의 인권교육 경험은 보통 수준이다. 장애학생, 다문화가정학생, 독특성을 가진 학생에 대한 따돌림 및 성희롱 성폭력 대

상으로서의 인식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원의 경우 부정적인 인식이 더 많았다. 학교규칙에 대한 의견수렴 및 교원에 대한 안내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인권교육의 실천’ 설문 조사 결과

학생들이 인식하는 인권교육의 목적과 내용은 지식, 기능, 가치·태도 면에서 긍정적이었고, 인권교육의 방법은 주로 선생님의 설명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권교육에 대한 평가는 인권에 대한 지식 및 정보 획득에 대한 인식 비중이 친인권적인 행동과 태도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학교규칙 안내 받은 경험, 학교규칙에 따른 생활지도, 학교규칙 확인 가능 여부 면에서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학교규칙 제·개정 과정에 의견 수렴 과정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 ‘인권교육의 사후 관리’ 설문 조사 결과

학생들은 교과수업시간을 통한 인권교육이 가장 적절하다고 하였으며, 인권교육의 방법은 초등은 외부강사 활용, 체험 및 참여식 수업, 중등은 동영상 활용 수업, 외부강사활용 수업 순으로 선호하였다. 교원들은 학교 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고,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학생과 교원을 위한 인권연수와 권위주의적인 의식 및 행사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많은 수의 교원들이 인권교육 연수에 참여할 의향이 있었고, 인권교육 연수에 서 선호하는 내용은 학생인권과 교권 침해 보장, 학생과의 인간관계 및 면학분위기 조성, 우리 사회의 인권문제와 대안, 인권교육 자료와 수업기법 순으로 나타났다.

○ 경상남도 학교 인권교육 개선방안

이상과 같은 경상남도의 학교 인권교육 실태 조사를 토대로 학교 인권교육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학교 인권교육을 실효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인권교육에 대한 학

생과 교원의 요구를 사전에 조사하여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실태 조사에 따르면, 학교 인권교육과 학생 및 교사의 요구 사이에는 괴리가 여러 부분에서 발견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교원의 인권교육에 대한 요구 사항을 사전에 조사하여 학교 인권교육의 계획과 실천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학교 인권교육의 강화 방안으로서, 학교 인권교육의 실천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인권교육 계획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교과와의 연계, 교원 인권연수, 가정·지역사회·관계기관과의 협조 등 학교 인권교육을 위한 프로세스들이 부족하거나 미비되어 있다. 학교에 일방적으로 자료를 배부해 주기보다, 먼저 인권교육을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환경(예컨대, 시간과 시수)을 확보해주어야 한다. 학교급별로 인식의 차이가 실태 조사의 여러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으므로, 그리고, 학교급의 요구에 맞는 적용 가능하고 검증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학교 인권교육 실천계획을 마련하여야 하는 것이다.

○학교 인권교육이 지식 중심으로 흐르지 않도록, 교원과 학생의 실제 삶과 학교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실감나는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보급한다.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학교 인권교육에 대해 인권 관련 지식과 정보가 상대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 교원들은 인권교육 연수에 필요한 내용으로 학교생활에서 부딪히는 현실적인 내용을 선호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학교생활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인권 관련 내용 사례를 발굴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학교 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면서 학생들의 생활과 밀착된 실천 가능한 인권교육 영역부터 반드시 실시하도록 권고한다.

명백하게 법령으로 규정된 인권교육, 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한 학교규칙 교육, 장애인 복지법에 근거한 장애학생 인권교육,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한 노동 인권교육부터 학교 현장에서 반드시 실천하도록 한다. 교원의 94.9%가 학교로부터 학교규칙 개정에 대한 안내를 받고 있음에도, 학생에게 학교규칙을 확인 가능하도록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39.6%나 된다. 학교규칙교육과 마찬가지로 장애학생 인권교육, 노동 인권교육 모두 법령에 명시되어 있고 학교 현장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에 밀착된 참여형 주제들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독려와 권고가 필요하다.

○인권교육의 기본 방법으로서 ‘참여적 접근법’을 학교 현장에서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각종 교원연수의 주제로 도입한다.

인권교육의 목적이나 내용이 아무리 바람직하더라도 인권교육의 방법이 잘못되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이루어지는 인권교육 방식의 대부분은 유인물 읽기, 동영상 시청 등 학생들에게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다. 학교 인권교육에서 추구하는 ‘참여적 접근법’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참여적 접근법에 대한 이해와 현장 적용을 위해서는 각종 교원연수에서 참여적 접근법을 연수 주제로 도입하여야 한다.

○학교 인권교육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가칭 ‘인권교육지원센터’와 같은 별도의 추진 기관의 설립이 요구된다.

교사들은 인권교육을 위한 선행 조건인 교원 및 예비교원 연수, 교내외 활동 조직, 프로그램, 지역사회와의 연대 모두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교원 연수, 활동 조직, 지역사회 연대 등은 교육청의 1-2개 담당부서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고, 이들 선행 조건들은 미리 준비해야 할 물적·인적 환경들로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될 뿐만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안들이다. 따라서,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칭 ‘인권교육지원센터’와 같은 별도의 전담 추진 기관의 설립이 요청된다.

목 차

I. 서론	19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9
2. 연구내용 및 범위	21
3. 연구 방법	21
II. 이론적 배경	23
1. 인권과 (학교)인권교육	23
2. 학교 인권교육의 체계	26
3. 학교 인권교육과 학교 규칙	30
4. 학교 인권교육 관련 선행 연구	31
5. 국내 학교 인권교육 정책 동향	32
6. 외국의 학교 인권교육 동향	38
III. 연구 방법	41
1. 연구 대상	41
1) 학생	41
2) 교원	42
2. 연구 내용	43
1) 인권교육 (실행) 계획	43
2) 인권교육 선행 조건	43
3) 인권교육의 운영	44
4) 인권교육의 실천	44
5) 인권교육 사후 관리	44
3. 조사 도구	44
1) 학생용 설문지	45
2) 교원용 설문지	45
3) 학교·기관용 설문지	46
4) 설문지 배부 및 회수율	46
4. 자료 처리	48

IV. 연구 결과	49
1. 인권교육 (실행) 계획	49
2. 인권교육 선행 조건	52
3. 인권교육의 운영	54
1) 학생	54
2) 교원	63
4. 인권교육의 실천	63
1) 학생	63
2) 교원	91
3. 인권교육의 사후관리	103
1) 학생	103
2) 교원	104
V. 요약 및 제언	107
1. 요약	107
2. 제언 : 경상남도 학교 인권교육을 위한 개선방안	112
■ 참고문헌	116
■ 부 록	
2018년 학교 인권교육 실태 조사(학교·기관용)	120
2018년 학교 인권교육 실태 조사(교원용)	123
2018년 학교 인권교육 실태 조사(초등용)	131
2018년 학교 인권교육 실태 조사(중등용)	140

표 목 차

<표Ⅱ-1> 학교 인권교육의 목표	28
<표Ⅱ-2> 학교별 인권교육 내용	28
<표Ⅱ-3> 시·도교육청별 학교인권교육 담당부서와 인권교육 내용	35
<표Ⅱ-4> 교육청별 인권조례 내용 비교	38
<표Ⅲ-1> 초등학교 학생들의 지역별 학년별 인원 수	41
<표Ⅲ-2> 중학교 학생들의 지역별 학년별 인원 수	41
<표Ⅲ-3> 고등학교 학생들의 지역별 학년별 인원 수	42
<표Ⅲ-4> 교원들의 지역별 학교급별 인원 수	42
<표Ⅲ-5> 교원들의 지역별 학교급별 인원 수	43
<표Ⅲ-6> 경남 시군교육청 및 각급 학교 인권교육 담당자 중 응답자 수	43
<표Ⅲ-7> 학생용 설문지 내용 구성	45
<표Ⅲ-8> 교원용 설문지 내용 구성	46
<표Ⅲ-9> 관리자용 설문지 내용 구성	46
<표Ⅲ-10> 학교·기관용 설문 응답 정보	47
<표Ⅲ-11> 학교급별 설문지 회수 정보	47
<표Ⅲ-12> 지역별 설문지 회수 정보	47
<표Ⅳ-1> 인권교육이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한 학습 주제에 포함 유무 빈도	49
<표Ⅳ-2> 인권교육에 배정된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 빈도	50
<표Ⅳ-3> 창의적 체험활동에서의 인권교육 방식 빈도	50
<표Ⅳ-4> 인권교육을 위한 계획 수립 여부 빈도	51
<표Ⅳ-5> 인권교육 계획에 포함된 내용 빈도	51
<표Ⅳ-6> ‘인권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의 어려움’에 대한 항목별 반응 점수	52
<표Ⅳ-7> 인권 교육 관련 및 예비교사 연수 부족에 대한 인식 빈도	52
<표Ⅳ-8> 인권교육에 필요한 학교 내외의 활동 조직 부족에 대한 인식 빈도	53
<표Ⅳ-9> 인권교육 프로그램(자료, 정보 등) 미흡에 대한 인식 빈도	53
<표Ⅳ-10> 지역사회 및 관련 기관과의 연대 부족에 대한 인식 빈도	54
<표Ⅳ-11> ‘인권’의 개념에 대한 평균 점수	54
<표Ⅳ-12> ‘인권’의 개념에 대한 인식 빈도	54
<표Ⅳ-13> ‘인권 정보 획득 출처’에 대한 인식 빈도	55
<표Ⅳ-14> ‘장애학생, 다문화가정학생, 독특성을 가진 학생’에 대한 평균 점수	56
<표Ⅳ-15> ‘장애학생에 대한 따돌림’에 대한 인식 빈도	56
<표Ⅳ-16> ‘다문화가정 학생 따돌림’에 대한 인식 빈도	57

<표IV-17> ‘독특한 행동이나 취향을 가진 학생 따돌림’에 대한 인식 빈도	57
<표IV-18> ‘장애학생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대한 인식 빈도	58
<표IV-19> ‘다문화가정학생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대한 인식 빈도	58
<표IV-20> ‘독특한 행동이나 취향을 가진 학생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대한 인식 빈도	59
<표IV-21> 인권 관련 선언, 협약, 조례, 지침 등에 대한 인식 빈도	59
<표IV-22>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빈도	60
<표IV-23> 인권교육 경험유무에 대한 인식 빈도	60
<표IV-24> 인권교육 받은 경로에 대한 인식 빈도	61
<표IV-25> 인권교육 받은 교과목에 대한 인식 빈도	62
<표IV-26> 교과 수업 시간 이외의 인권교육 시간에 대한 인식 빈도	62
<표IV-27>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빈도	63
<표IV-28> 인권교육 경험유무에 대한 인식 빈도	63
<표IV-29> 인권교육 받은 시간에 대한 인식	64
<표IV-30> 인권교육 직무연수 받은 이유에 대한 인식	64
<표IV-31>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노력에 대한 항목별 반응 점수	65
<표IV-32> ‘학교교육과정에 인권교육 시간 확보’에 대한 인식 빈도	65
<표IV-33> ‘다양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인식 빈도	66
<표IV-34> ‘교사양성 과정에서 인권교육 강화’에 대한 인식 빈도	66
<표IV-35>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 강화’에 대한 인식 빈도	67
<표IV-36>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에 대한 인식 빈도	67
<표IV-37> ‘지역사회 및 관계기관과의 연대 강화’에 대한 인식 빈도	68
<표IV-38> ‘장애학생, 다문화가정학생, 독특성을 가진 학생’에 대한 인식	68
<표IV-39> ‘장애학생에 대한 따돌림’에 대한 인식 빈도	69
<표IV-40> ‘다문화가정 학생 따돌림’에 대한 인식 빈도	69
<표IV-41> ‘독특한 행동이나 취향을 가진 학생 따돌림’에 대한 인식 빈도	71
<표IV-42> ‘장애학생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대한 인식 빈도	71
<표IV-43> ‘다문화가정 학생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대한 인식 빈도	71
<표IV-44> ‘독특한 행동이나 취향을 가진 학생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대한 인식 빈도	71
<표IV-45> 학교 규칙 개정의 안내받은 경험	71
<표IV-46> ‘학교규칙에 따른 학생생활 지도’에 대한 인식 빈도	72
<표IV-47> ‘학생에게 학급규칙 안내함’에 대한 인식 빈도	72
<표IV-48> ‘학교규칙 개정을 위한 학교규칙개정위원회 역할 안내받은 경험’에 대한 인식 빈도	73
<표IV-49> ‘학급규칙 제.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방법’에 대한 인식 빈도	73
<표IV-50> ‘인권교육의 목적’에 대한 항목별 평균 점수	74
<표IV-51> ‘인권의 뜻, 인권에 대한 지식알기’에 대한 인식 빈도	74

<표IV-52> 인권 침해 문제 해결하기'에 대한 인식	75
<표IV-53> '인권을 위한 행동하기'에 대한 인식 빈도	75
<표IV-54> '인권을 위한 마음과 태도 갖기'에 대한 인식 빈도	76
<표IV-55> '인권교육의 내용'에 대한 항목별 평균 점수	76
<표IV-56> '인권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인식 빈도	77
<표IV-57> '참여와 활동을 통하여 인권을 실행하기'에 대한 인식 빈도	77
<표IV-58> '세부적인 인권문제(예, 차별, 편견, 무관심 등) 등'에 대한 인식 빈도	78
<표IV-59> '인권 관련 기준, 제도, 협약 인식 빈도	78
<표IV-60> '인권 교육 방법'에 대한 인식 빈도	79
<표IV-61> '인권교육을 받은 후의 도움이나 변화'에 대한 항목별 평균 점수	80
<표IV-62> '인권교육에 대한 지식 습득'에 대한 인식 빈도	80
<표IV-63> '인권에 대해 더 알고 싶어짐'에 대한 인식 빈도	81
<표IV-64> '인권침해에 대한 정보 획득'에 대한 인식 빈도	81
<표IV-65> '인권에 적절한 행동에 대한 정보 획득'에 대한 인식 빈도	82
<표IV-66> '친구들이 서로 다름을 알'에 대한 인식 빈도	82
<표IV-67> '인권침해 피해자 도움 제공 태도 증가'에 대한 인식 빈도	83
<표IV-68> 학교 규칙 개정의 안내 빈도	83
<표IV-69> '학교규칙에 따른 학교생활'에 대한 인식 빈도	84
<표IV-70> '학급에서 학급규칙 확인 가능'에 대한 항목별 인식 빈도	84
<표IV-71> '학급규칙 제정 주체'에 대한 인식 빈도	85
<표IV-72> '학급 규칙 개정을 위한 학교규칙규정위원회 역할 안내받은 경험'에 대한 인식 빈도	85
<표IV-73> '학급규칙 제정 과정 참여 경험'에 대한 인식 빈도	86
<표IV-74> '학급규칙 제 개정을 위한 학생의견 수렴 방법'에 대한 인식	87
<표IV-75> '선생님의 학급 운영, 수업 및 생활교육'에 대한 반응 점수	87
<표IV-76> '학생의 인권존중'에 대한 인식 빈도	88
<표IV-77> '학급이나 수업에서 학생 참여 촉구'에 대한 인식 빈도	88
<표IV-78> '학급 규칙을 학생 스스로 정함'에 대한 인식 빈도	89
<표IV-79> '학생들과 열린 마음으로 대화함'에 대한 인식 빈도	89
<표IV-80> '학생지도시 체벌 사용하지 않음'에 대한 인식 빈도	90
<표IV-81> '학생의 개인 정보를 존중해 줌'에 대한 인식 빈도	90
<표IV-82>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빈도	91
<표IV-83> 인권교육 경험유무에 대한 인식 빈도	91
<표IV-84> 인권교육 받은 시간에 대한 인식 빈도	92
<표IV-85> 인권교육 직무연수 받은 이유에 대한 인식 빈도	92
<표IV-86>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대한 항목별 반응 점수	93

<표IV-87> ‘학교교육과정에 인권교육 시간 확보’에 대한 인식 빈도 93
 <표IV-88> ‘다양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인식 빈도 94
 <표IV-89> ‘교사양성 과정에서 인권교육 강화’에 대한 인식 빈도 94
 <표IV-90>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 강화’에 대한 인식 빈도 95
 <표IV-91>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에 대한 인식 빈도 95
 <표IV-92> ‘지역사회 및 관계기관과의 연대 강화’에 대한 인식 빈도 96
 <표IV-93> ‘장애학생, 다문화가정학생, 독특성을 가진 학생’에 대한 항목별 평균 점수 97
 <표IV-94> ‘장애학생에 대한 따돌림’에 대한 인식 빈도 97
 <표IV-95> ‘다문화가정 학생 따돌림’에 대한 인식 빈도 98
 <표IV-96> ‘독특한 행동이나 취향을 가진 학생 따돌림’에 대한 인식 빈도 98
 <표IV-97> ‘장애학생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대한 인식 빈도 99
 <표IV-98> ‘다문화가정 학생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대한 인식 빈도 99
 <표IV-99> ‘독특한 행동이나 취향을 가진 학생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대한 인식 빈도100
 <표IV-100> 학교규칙 개정의 안내받은 경험 빈도100
 <표IV-101> ‘학교규칙에 따른 학생생활 지도’에 대한 인식 빈도 101
 <표IV-102> ‘학생에게 학교규칙 안내’에 대한 인식 빈도 101
 <표IV-103> ‘학급 규칙 개정을 위한 학교규칙규정위원회 역할 안내받은 경험’에 대한 인식 빈도102
 <표IV-104> ‘학급규칙 제.개정을 위한 학생의견 수렴 방법’에 대한 인식 빈도102
 <표IV-105> ‘적절한 인권교육 시간 ’에 대한 인식 빈도103
 <표IV-106> ‘인권교육 방법’에 대한 인식 빈도104
 <표IV-107> ‘인권관련 선언, 협약, 조례의 친숙도’에 대한 인식 빈도104
 <표IV-108>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노력’에 대한 인식 빈도 ...105
 <표IV-109> ‘인권교육 연수에 참여할 의향’에 대한 인식105
 <표IV-110>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연수 내용’에 대한 인식106

그 림 목 차

<그림 II -1> 인권교육의 상호의존성25

I.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인류 보편 가치인 인권의 영역과 범위는 확대되고 있다. 인권 문제에 있어서, 이전에는 덮어 두었던 것들이 오늘날에 와서 문제로 제기되어 쟁점이 되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전혀 인식조차 하지 못했던 것들이 오늘날에 와서 새롭게 문제로 인식되기도 한다. 인권은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개념이 수정되고 보완되어 가는 것이다.

최근 10년래, 한국의 인권 상황 또한 많은 변화를 거쳐 왔으며, 이에 따라 인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추구하는 인권교육의 필요성이 다음과 같이 증대되고 있다.

첫째,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모든 유엔 가입국은 4년마다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를 한다. 한국은 2012년 UPR에서 70개의 인권상황에 대해 권고를 받았고, 한국 정부는 40개에 대하여 수용한다고 했다. 2017년 UPR에서는 218개의 인권상황에 대한 권고를 했으며, 한국 정부는 이 중에서 121개를 수용한다고 밝혔다(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 심의대응 한국 NGO모임, 2018). 한국 정부가 이들 나머지에 대해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제시한 것은 두 번 모두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것이었다. 사회적 합의란 사회구성원들이 사안에 대한 의견 일치나, 의식 공유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라는 점에서, 인권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사회구성원들의 인권의식이 전제가 된다. 인권의식이 인권교육을 통하여 증진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인권교육이야말로 사회적 합의의 근본 해법이 되는 것이며, 결국 사회구성원에 대한 인권교육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것이다.

둘째, 인권 취약집단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016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국민인권의식 조사에서 일반 국민의 인권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인권 존중 의식이 조금 높아진 것에 비해, 취약집단, 즉 장애인, 미혼모, 병력이 있는 사람 등의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에서는 보통 이하의 점수를 받아 대부분의 취약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정우 외, 2016: 124). 특히, 지난 2011년 우리 사회를 경악에 빠뜨리게 한 일명 ‘도가니’ 사건 발생 이후,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보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음에도, 올해 7월, 강원도 내 사립 특수학교에서 성폭력 사안이 발생함으로써 인권 취약집단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에서의 인권침해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기되었다.

셋째, 국민의 인권 및 인권교육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이 있

였으나, 인권교육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현안 과제가 되었다. 인권교육 관련 법령은 대략 다음과 같다. 2004년 제정되어 2017년까지 20여 차례 개정되어 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 폭력의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2008년 제정된 법교육 지원법은 일반국민 및 청소년에게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법적 능력, 합리적 사고능력, 긍정적 참여능력, 질서의식, 헌법적 가치관 등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긍정적 참여능력, 헌법적 가치관 등 직접적으로 인권교육과 관련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2008년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학교와 관련해서는 학교에서 학생 대상의 다문화 이해교육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교원에 대한 교육 또는 연수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교육과 관련되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2011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은 학교의 장이 학칙에 대하여 학생의 의견을 듣고 반영토록 노력해야 함을 처음으로 명시함으로써 학생이 학교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학생들이 학칙의 제·개정에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의 자율과 책임, 자치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살아있는 학생 인권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¹⁾. 이러한 일련의 법령 마련과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국민인권의식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12.8%만이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전체의 82%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구정우 외, 2016: 115, 133-134). 결국 인권은 구호나 법령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과 실현의 문제이며 인권교육의 실천은 이러한 문제의 주요한 해법이 될 수 있으며, 한국에서 학교교육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고려할 때, 학교 인권교육은 인권 실현에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넷째, 경상남도의 경우 2018년 학생인권실태를 조사한 결과 경상남도의 인권종합점수는 70.08점으로 50점을 '보통'이라 할 때, 보통보다 높은 수준지만, 분야별 인권 종합점수에서 인권분야가 66.60점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상남도 교육청, 2018:10-13 참조). 특히 인권교육의 한 영역인 인권보장교육과 성평등인권교육의 인권종합점수는 각각 62.09점, 64.55점으로 인권분야 평균인 66.60점보다 낮고, 중·고등 학생의 경우 인권보장교육 59.01점, 성평등인권교육 52.00점으로 경상남도의 학생 인권 종합점수 70.08점 보다는 현저히 낮아서 경상남도의 학교 인권교육 전반에 대한 실태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초 연구로서, 경상남도의 초·중·고등학교의 인권교육 실태조사를 통하여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인권교육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학교 인권교육은 학교 안팎의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제한되거나 방해받고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또한 여러 측

1) 2012년 개정에서 학칙 제·개정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학생, 학부모, 교원으로 확대되었음.

면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그동안 시행되고 실천되었던 학교 인권교육의 모습과 이들의 현장 적합성 및 효율성을 따져 보아야 한다. 학교 인권교육은 교과 시간, 창의적 체험활동 뿐만 아니라 학교 인권교육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도 열려 있다. 단일 프로그램으로서 학교 인권교육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인권 증진에 도움이 되는 인권교육으로서 학교규칙,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 학교와 지역사회단체와의 연계 등과 같은 학습 환경들이 친인권적 학습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2. 연구내용 및 범위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인권교육 개념 정리 및 국내·외 학교 인권교육 정책 연구 동향 검토, 경남의 학교 인권교육 현황 실태 조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학교 인권교육 개선 방안 제안으로 구성된다.

- 인권교육의 개념과 학교 인권교육 체계, 선행 연구 및 정책 동향
 - 인권, 인권교육, 학교인권교육의 개념
 - 학교 인권교육의 체계 및 접근 방법
 - 학교 인권교육 정책에 대한 선행 연구 및 정책 동향 조사 및 검토
- 경남의 학교 인권교육 현황 실태 조사
 - 학교 인권교육 현황 및 실태 조사를 위한 연구 방법 논의
 - 학교 인권교육 현황 및 실태 조사를 위한 문항 작성
 - 경남의 학교 인권교육 현황 실태 조사
- 경남의 학교 인권교육 개선 방안 제안
 - 학교 인권교육 현황 실태 조사 결과 분석 및 논의
 - 학교 인권교육 개선 방안 제안

3. 연구 방법

- 인권교육의 개념과 학교 인권교육 체계 및 선행연구 정리는 문헌 연구 및 자료 수집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학교 인권교육의 개념과 철학 및 학교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문헌연구를 통하여 확인한다.
 - 학교 인권교육의 내용과 운영 체계에 대하여 문헌연구를 통하여 논의한다.
 - 학교 인권교육 정책에 대한 국내외 연구동향은 선행연구의 조사 및 검토를 통하여 확인한다.
- 경남의 학교 인권교육 현황 실태 조사, 학교 공동체 생활 속에서의 인권교육 실천방안, 시사점 및 정책 제언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과업을 수행한다.
- 문헌연구를 통하여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경남의 학교 인권교육 현황 실태 조사를 위한 설문내용의 준거, 기준, 내용을 마련한다.
 - 학교 인권교육 현황 실태 조사는 경상남도 교육청 산하의 지역교육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에 대한 전반에 대하여 설문 조사한다.
 - 설문지, 학교 인권교육 현황 등을 파악하는데 학교인권교육에 관심이 있는 초·중등학교의 현장교사를 중심으로 자문위원을 구성한다.
 - 조사된 내용과 자문위원의 지문을 기초로 학교 인권교육 실천방안, 시사점 및 정책을 제언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인권과 (학교)인권교육

○ 인권의 의미

인권이란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의미의 인권을 선언한 최초의 헌법적 문서는 버지니아 권리장전과 프랑스 인권선언이다(권영성, 1988: 240). 1776년 버지니아 권리장전 제1조에서는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게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천부적 권리를 가지는 바, … 생명과 자유, 재산의 취득과 유지, 그리고 행복과 안전을 추구하고 달성하는 권리 등을 … 박탈할 수 없다.” 라 하고 있으며, 1789년 프랑스혁명에서 채택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중, ‘인간의 권리선언’ 전문에서는 “인간의 자연적이고 양도불가능하고 신성불가침한 제권리를 엄숙히 선언한다” 라고 하면서, 제1조 “인간은 권리에 있어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 생존한다”와 제 16조 ‘인권보장과 권력분립이 되어있지 아니한 나라는 헌법을 가졌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함으로써 인권은 박탈 할 수 없고, 자연적이면서 양도불가능하며, 신성불가침의 권리라는 천부인권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권은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원칙을 지니고 있다(안경환, 2011:14-15). ①인권은 법률 및 관습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 근본적으로 국가권력을 제한한다. ②인권은 모든 장소의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향유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통상 인권은 모든 특권개념과는 반대된다(인권의 보편성). ③어떤 특수한 입장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는 다른 사람의 권리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만큼만 제한되어야 한다(인간의 상호의존성). ④인권은 그 내재된 권리의 일부의 구현으로는 보장될 수 없고, 그 전체가 실현될 때만 완전히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인권의 불가분성).

그리고 인권은 고정 불변하는 개념이 아니다. 1세대 인권: 시민적·정치적 권리, 2세대 인권: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3세대 인권: 연대와 단결의 권리처럼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인권도 있고, 인권의 내용이 수정되기도 한다. 인권의 명칭도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Rights of Man’이었으나 여성운동의 전개와 여성의 정치참여로 ‘Human Rights’로 개명된 것처럼 인권의 영역이 확장되기도 한다.

오늘날에는 인권을 법으로 규정하고 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는 인권을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도 인

권을 인간으로서 갖게 되는 천부적인 권리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 (학교)인권교육의 정의

인권교육은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핵심적인 활동이다. 그런데 인권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각 단체나 기관에 따라 달리 정의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럽회의(Council of Europe)의 청소년 인권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인권교육을 “... 상호 문화적인 학습 및 소수자의 참여와 권한 부여를 촉진하는 프로그램과 함께, 인간 존중의 평등을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둔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이라고 하고(Council of Europe, 2012: 17), 국제앰네스티 (Amnesty International)는 인권교육이란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어디서나 자신의 인권과 타인의 권리에 대해 학습하고 그러한 인권과 권리를 어떻게 주장하는지를 배우게 되는 과정이다. 인권교육은 인간이 자신의 공동체, 사회 및 전 세계에서 평등, 존엄성 및 존중을 증진하는 기능과 태도를 발달시키도록 해 준다.”고 하며(Amnesty International, 2015: 1), Reardon(1995: 3)은 “인권교육의 기본틀은 원칙과 표준에 기초한 의도된 사회 교육이다. ... 주된 목적은 도덕적인 선택을 하고, 이슈에 대하여 원칙에 기초하여 입장을 선택하며, 민주적인 시민으로서 행동하는 역량을 기르는 것으로, 다시 말해 도덕적 완결성과 지적 완전성을 발달시키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한다.

세계인권선언 채택 이후, 유엔 총회는 회원국과 사회의 모든 부문에 이러한 인권선언문을 배포하고, 그 내용을 일반 대중에게 교육하도록 촉구하여 왔으며, 1994년 세계인권회의의 요청에 따라, 1994년 유엔 총회가 1995년부터 2004년까지 기간을 유엔 인권교육 10개년으로 선포함으로써 국제 사회가 합의한 인권교육에 관한 개념과 정의가 제시되기에 이르렀다. 유엔 인권교육 10개년 실행계획(Plan of Action for the Decade)에 의하면, 인권교육을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2006: 23-24). “지식 및 기능의 제공과 태도의 형성을 통해 보편적 인권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다음 사항을 지향하는 훈련, 보급 및 홍보를 위한 노력이다. a)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 b)인간의 개성과 그 존엄성에 대한 인식의 완전한 개발 c)모든 국가, 원주민, 인종·국적·종교·언어 집단 사이의 이해, 관용, 성평등, 우호관계 증진 d)모든 사람들이 자유 사회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 부여 e)평화유지를 위한 유엔 활동의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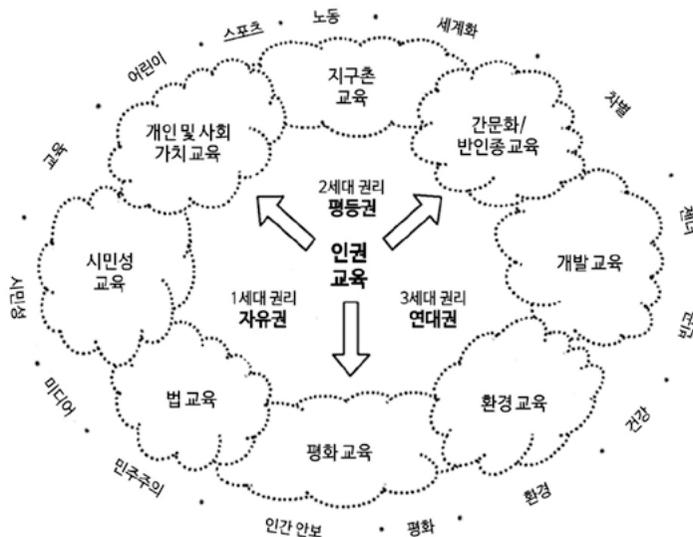
The Advocates of Human Rights²⁾는 인권교육은 보편적인 인권 문화의 구축이라는 폭넓은 목적을 가지고 인권의 지식, 기능, 가치를 발달시키는 학습이라고 정의한다

2) The Advocates of Human Rights는 미국 연방법의 비영리 조직으로 세계 인권 운동의 최전선에서 시민 사회를 증진하고 법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 인권 표준을 이행하는 단체이다 (<http://www.theadvocatesforhumanrights.org/mission>).

(The Advocates of Human Rights, 2009: 4). 유엔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와 유엔교육과학문화위원회(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는 인권교육을 “개인 간, 사회 내에서, 국가 간에 인권, 기본적인 자유, 관용, 평등 및 평화에 대한 존중심의 강화를 지향하는 행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식을 공유하고, 기능을 나누며, 태도를 형성함으로써 보편적인 인권 문화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훈련 및 정보”라고 정의한다(OHCHR & UNESCO, 2012: 1).

이상에서 살펴 본 바, 인권교육은 기관 및 연구자에 따라 인권의 기초로서 인간의 존엄성, 평등, 평화 등 내용 면에서의 강조점을 달리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인권의 지식, 기능, 가치-태도의 발달을 통하여 보편적인 인권 문화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인권교육이 접근하는 방식은 다양하며 상호 의존적이다. 예를 들어, 평화 교육은 인간의 존엄성과 평화와 안전의 권리를 포함한다. 다문화 교육은 차별 금지 및 자기 언어, 문화 및 종교에 대한 참여라는 인권 원칙을 반영한다. 법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국제 인권 기준에 따라 법을 평가할 수 있다. 인권은 나누어 저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The Advocates of Human Rights, 2009: 4). 다음 <그림 1>은 인권교육의 상호 의존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권이 우리의 삶의 모든 측면과 관련되고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 주체들은 평화 교육, 시민성 교육, 법 교육, 환경 교육, 지구촌 교육 등 다양한 교육적 접근을 통하여서도 다루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교육적 접근들 모두가 인권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II-1> 인권교육의 상호의존성 (출처: Council of Europe, 2002: 27)

2. 학교 인권교육의 체계

○ (학교)인권교육을 위한 선행 조건

인권교육의 내용 각각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반 사정을 고려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는 인권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학교 인권교육의 프로세스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2006: 24-25).

- 학교 교육을 규제하는 국내법에 인권교육 포함
- 교과과정 및 교과서 개편
- 인권에 대한 훈련과 인권교육방법론을 포함하는 현직 및 예비교사 연수
- 학내 활동과 가정 및 지역사회 현장 활동에 기초한 특별활동 조직
- 교육적 자료의 개발
- 교사와 기타 전문가(인권단체, 교직원노조, 비정부 기관, 전문가 협회)등으로 구성된 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이상과 같은 학교 인권교육 프로세스는 인권교육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요소들로서, 학교가 인권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할 선행 조건들인 것이다.

학교 인권교육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의도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학교 교육의 일반적인 체계에 따라 실행된다. 따라서, 학교 인권교육의 체계도 목표, 방법, 내용, 평가로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 목표

목표란 교육을 통하여 기대하는 성과를 의미한다. 따라서 목표는 사전에 의도된 것으로 교육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내용, 방법, 평가의 준거가 된다. 학교 인권교육의 목표는 인권교육의 정의 속에 포함되어 있다. 전술한 바, 인권교육이란 인권에 관한 지식, 기능³⁾, 태도, 행동 등에 대한 모든 학습을 말하며, 이는 개인에서 시작해서 전체 사회를

3) 인용 원문에는 '기술'로 표현되어 있으나, 기술로 번역한 영어 원문이 'skill' 이고, 교육 일반에서 이를 기능(技能)으로 번역하므로 여기서는 '기능'으로 바꾸어 인용함.

아우르는 역량강화 과정으로서(강은지 역, 2015: 10) 사회 변화를 추구한다. 유엔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 계획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권교육은 보편적인 인권 문화 구축을 위한 학습, 교육, 훈련, 정보 수집 등이다. 전자에서 말하는 사회변화는 매우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그 방향은 보편적인 인권 문화가 구축된 사회로서 '인권 친화적인 사회문화의 조성'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하위 목표로서 지식, 기능, 가치·태도 목표가 있으며, 이들 각각을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구정화 외, 2009: 44-45 참조).

- 지식 목표 : 학생들이 인권에 대해 알고 이해하는 것이다. 인권이란 무엇이며, 내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인식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인권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확대되어 왔으며 현재의 인권상황은 어떠한가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알도록 한다.
- 기능 목표 : 학생들이 인권 친화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은 인권에 대한 지식과 인권적 가치·태도의 함양과 그리고 인권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다. 학생들이 인권 관련 쟁점을 인식하고 인권적 관점에서 자신의 입장을 선택한 후, 상호 연대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며 인권을 실현하는 방법을 깨우치게 된다.
- 가치·태도 목표 : 학생들의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것이다. 인권 감수성이란 인권문제가 개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인권 관련 상황으로 지각하고 해석하며, 그 상황에서 가능한 행동이 다른 관련된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알며,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인식하는 심리적 과정이다(문용린 외, 2002: 11). 이러한 인권감수성이 높다는 것은 학생들이 인권 침해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갖는 것을 말한다.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 시민윤리 등 사회 현상 속에서 어떤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민감하게 발견해내고, 인권을 침해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공감하며 인권적 관점에서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것이다.

이상의 인권교육의 목표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II -1> 학교 인권교육의 목표



○ 내용

내용이란 설정된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르치고 배우는 대상을 의미한다.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학습내용이며,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교육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 인권교육의 핵심내용은 세계인권선언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며, 학교별 인권교육의 내용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2006: 27).

<표 II -2> 학교별 인권교육 내용

단계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 (만3세-7세)	초등학교 고학년 (만8세-11세)	중학생 (만 12세-14세)	고등학생 (만15세-17세)
주요 개념	·자아 ·공동체 ·개인책임	·개인의 권리 ·집단 권리 ·자유 ·평등 ·정의 ·법치주의 ·정부 ·안보	·국제법 ·세계평화 ·국제발전 ·국제 정치경제론 ·국제 생태학	·도덕적 편입/배제 ·도덕적 책임/이해
실행	·의무 ·공정성	·다양성의 가치 인정	·다른 관점에 대한	·시민단체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아표현/경청 ·협력/분담 ·소집단 활동 ·개별활동 ·원인/결과의 이해 ·민주주의 ·타인의 입장 이해 ·갈등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정성 ·사실과 의견 구분 ·학교 또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 ·시민으로서의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해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인용하기 ·연구 수행/정보 수집 ·정보 공유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적 책임 완수 ·시민불복종운동
세부적 인권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종차별 ·성차별 ·불공정성 (감정적, 신체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별/편견 ·빈곤/기아 ·불법(부당함) ·민족중심주의 ·자기중심주의 ·수동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지 ·무관심 ·냉소주의 ·정치적 억압 ·식민주주의/제국주의 ·경제적 세계화 ·환경 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량학살 ·고문 ·전쟁범죄 등
인권 기준, 제도 및 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급규칙 ·가정생활 ·공동체 규범 ·세계인권선언 ·아동권리협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의 역사 ·지방, 국가의 법체계 ·지방, 국가의 인권 관련 역사 ·UNESCO, UNICEF ·비정부기구(NGO) 	<ul style="list-style-type: none"> ·UN규약 ·인종차별 철폐 ·성차별 철폐 ·UN난민고등판무관 ·지역별 인권협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네바 협약들 ·전문 협약들 ·인권기준의 변천

○ 방법

여기서 말하는 방법이란 교사가 정해진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학습자의 내·외적 환경을 조작해 가는 몇 가지 변인들의 상호작용을 말한다. 교사의 입장에서는 교수(teaching)이 될 것이고, 학생의 입장에서는 학습(learning)이 된다. 인권교육에서의 방법에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교사의 수 만큼이나 많을 수 있다. 그러나 인권교육의 실천에서 기본적인 방법으로 참여적 접근법(Participatory Approach)을 들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권교육의 참여적 접근법은 인권에 대한 개인의 지식과 경험의 공유를 장려하

고 중시하며 개인의 신념과 가치에 대한 핵심적 반영을 고무한다. 이는 상호 존중 및 상호 학습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학습과정에서 학습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뿐 만 아니라 이를 포함시킨다(강은지 역, 2015: 14-15).

인권교육은 교수자와 학습자 양자 모두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 교수방법, 즉 인권을 통한 교육(Education Through Human Rights)을 지향해야 하며, 이는 유엔인권교육훈련선언 제2조에 명시되어 있다.

○ 평가

교육 목표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행위이다. 여기에는 결과를 알아보는 학생의 성취 정도의 평가뿐만 아니라, 내용, 방법과 관련지어 그 효과를 알아보는 것도 포함된다. 본 연구와 관련되는 학교 인권교육의 평가를 위해 구하고자 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 a.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왜 운영하나?
- b. 교육 내용이 학습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나?
- c.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자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 d. 학습결과가 학습자의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나?
- e. 학습자가 배운 바를 생활이나 활동에 적용하고 있나?
- f. 학습자의 활동이 보다 광범위한 공동체/사회의 변화에 기여하고 있는가?(강은지, 2015: 22)

이들 중, a는 인권교육의 목표와 c는 인권교육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인권교육의 평가를 위해서는 b.교육 내용이 학습자의 욕구 충족 정도, d.학습결과 학습자의 행동 변화 정도, e.학습자가 배운 바를 생활이나 활동에 적용 정도, f.학습자의 활동이 더 넓은 사회의 변화에 기여 정도를 중심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3. 학교 인권교육과 학교 규칙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법령이 없기 때문에 학교 인권교육은 교과에 통합되어 실천되거나,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하여 접근할 수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경우, 단위 학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학교 인권교육의 실태를 조사하려는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 인권교육 실태를 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규

정하고 있는 학교규칙의 운영 과정을 확인하고자 한다.

학교규칙의 운영 과정은 학교 인권교육의 목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학교규칙 중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과정에 학생, 학부모, 교원 등 모든 학교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학교 인권교육의 목표인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의 조성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다. 특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하면,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 즉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학칙개정절차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모든 학교가 학교규칙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학교규칙은 학교 인권교육의 내용에 해당한다. 학교규칙은 학교 운영과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공동체 규범으로, 학교규칙 중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 인권교육의 내용 요소인 '인권 기준, 제도 및 기제'에 해당한다. 학생 생활규정, 학교 생활규정, 교칙, 학칙 등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고 있으며, <표 2>에 의하면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급규칙이 여기에 해당한다.

학교규칙의 운영에 학교 인권교육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학교규칙의 운영 과정에 학교규칙에 대한 사전 지식을 공유한다는 점, 학생, 학부모, 교원의 참여가 보장되고 있다는 점,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점 등에서 학교 인권교육이 지향하는 참여적 접근법과 상응하는 것이다.

4. 학교 인권교육 관련 선행 연구

본 연구는 경남의 학교 인권교육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하려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다.

○ 별도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발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있다(김윤진·조경진, 2017; 김은진, 2017; 김보위, 2016; 이민영, 2016; 김혜련, 2016; 정순례, 2015; 이미선, 2015; 최용성, 2014; 김영신·박가나, 2013; 염하나, 2009; 김영로, 2008; 이상애, 2009; 이상희, 2007; 조인숙, 2005; 서기남, 2003). 별도의 프로그램이 인권감수성이나 또는 다른 영역에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를 검증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교 인권교육의 실태를 확인하려는 본 연구와는 구별된다.

○ 인권 관련 내용에 대한 차별화된 수업 방안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연구가 있다(신봉선, 2016; 서은아, 2014; 김윤정, 2013; 박은영, 2013; 이주은, 2012; 조은미, 2012; 김덕진, 2009; 정소영, 2009; 신옥임, 2006). 이들 연구 또한 학교 인권교육의 실태를 확인하려는 본 연구와는 비교된다.

○ 본 연구와 유사한 연구로 2011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초·중·고등학교 인권교육 실태조사'가 있다. 이 연구는 초·중등교육에서 인권교육 실태를 분석한 것으로 학교 인권교육의 문제점과 한계를 진단하여 이를 토대로 학교 인권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학교인권교육 실태 조사를 위한 교원과 학생의 설문을 통하여 교원에게는 교원의 인권교육 경험과 요구, 교원의 인권인식, 교원의 인권교육 연수, 학교 인권교육 운영 현황 경험과 교육 요구 등을 조사하였고, 학생에게는 인권 관련 교육 경험, 인권 및 인권에 대한 관심과 태도, 학급 및 학교의 인권 분위기 및 인권에 대한 태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경남 이라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라는 점에서 차별화되며, 학교 인권교육의 실태 조사라는 점을 고려하여 UN이 제시하고 있는 학교 인권교육을 위한 선행 조건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일반적인 학교교육의 체계인 목표, 내용, 방법, 평가면에서의 조사를 기초로 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여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5. 국내 학교 인권교육 정책 동향

학교 인권교육 정책은 교육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시·도교육청 등 여러 국가기관에서 추진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국가인권정책은 법무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인권교육은 국가인권정책의 기본틀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

우리 나라 학교 인권교육 정책은 제3차('15년-'19년) 세계 인권교육 프로그램 행동계획과 국제인권기구에서 인권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에 국제인권기준이 기본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른 학교 인권교육의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학생 개개인의 자기권리 인식 및 인권침해 발생 시 대처능력과 교직원들의 장애인권 인식을 강화한다.

둘째, 학교교육, 공무원 및 인권관련 종사자 인권교육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영역에서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고 교육관련 전문가 양성한다.

셋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편찬상 유의점 및 검·인정기준에서 편

찬 유의점으로 ‘특정한 종교·성별·직업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을 금지하고 인권 친화적 교수·학습법 개발·보급과 교육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법무부, 2017:329-330).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2-2016)에 의한 학교인권교육정책의 이행 상황과 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인권교육 일반

제19대 국회에서 ‘인권교육지원법안’ 제정이 추진되었으나 철회됨.

○ 교육부 - 학교 인권교육 추진 과제 및 이행

○ 인권 친화적 교과서 개발 및 관리

개발된 교과서의 인권관련 내용 수시 수정·보완 체제 구축 및 운영

○ 교원대상 인권교육 지속 추진

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연수 시 ‘인권교육’관련 내용 포함

○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 개발시 인권 관련 내용 반영 및 연수 실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인정 기준’ 개발시 인권 관련 내용 반영('15.12.) 교과서 저작자 및 출판사 대상 연수 실시('15.12.-'16.1.)

○ 일반학교의 장애인권 및 장애 이해교육 강화

장애인권 및 장애 이해교육 연 2회 이상 실시

○ 대학 인권교육 활성화

인권관련 학과개설 유도

인권관련 교육과정 운영 유도

○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및 유관기관 간 협조체제 마련

학교 내 인권 친화적 문화 조성의 내실화 방안 추진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학교규칙의 효율적 운영 안내 및 홍보 추진

인권 관련 유관기관 간 협조체제 마련

○ 법무부 - 인권국, 법교육을 통한 학교 인권교육

법무부에서 진행하는 학교 인권교육은 인권국과 법교육센터를 통한 인권교육으로 나누어진다. 인권국의 업무 및 법교육센터에서 하는 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인권국

인권옹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인권옹호에 관한 각 부처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인권문제에 관한 홍보대책에 관한 사항

- 준법정신의 계도
 - 고교생 헌법 토론대회
 - 일상 생활 및 학교에서 논의될 수 있는 헌법적 문제 탐구 기회 제공
 - 헌법정신과 가치에 대한 인식 확립
 - 전국 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만 15-만17세 청소년
 - 우리 헌법 만들기
 - 구성원들 간에 서로 지켜야 할 약속이나 규칙을 헌법으로 만들기
 - 같은 반 학생들이 회의를 통해 학교생활에서 꼭 지켜야 할 약속 구성
 - 학생을 포함한 누구나 대상
 - 초·중등교사 직무연수
 - 학교 현장에서의 법적 문제에 대한 교사들의 해결능력과 법의식 향상
 - 헌법가치 및 법질서 준수 교육기법 전수
 - 전국 유·초·중·고등학교 교사 대상
 - 법사랑 학교
 - 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질서와 배려가 넘치는 교실 만들기 확산
 - 법무부가 개발한 법교육 및 인성교육프로그램을 교과/창의적 체험활동 활용
 - 전국 초등학교 및 중학교 대상
 - 인권 관련 도서 개발 및 보급
 - 아동학대 없는 행복한 우리가정(초등학생용)
 - 아동학대 없는 행복한 사회(중학생용)
 - 아동학대 없는 행복한 세상(고등학생용)
 - 출장 강연 및 도서 개발
 - 헌법가치교육(초·중·고등학교용)
 - 학교폭력예방교육(초·중·고등학교용, 교사용)
 - 배려교육(초·중·고등학교용)
 - 법동아리 강의-1.학교폭력 예방 7.헌법재판과 기본권(초·중·고등학교용)
 - 소중한 나, 소중한 나의 친구들(초등학교 저학년)
 - 아픔 없는 우리 학교, 행복한 학교생활 만들기(초등학교 고학년)
 - 학교폭력은 범죄입니다(고등학생)
 - 학교폭력 없는 세상을 위하여!(초·중·고등학생)
- 국가인권위원회
 - 교원대상 사이버 인권교육
 - 교육현장에서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과정
 - 전국의 유, 초, 중, 고등 교원 및 교원전문직 대상

‘선생님을 위한 인권 플러스’, ‘학교폭력 예방교육’

○ 집합교육

지식 습득과 기본적 인권의식 함양, 인권역량 강화 및 인식전환 계기 마련

학교 교직원 대상

‘방문프로그램’

○ 특강교육

인권의식 확산 및 인권교육 저변 확대

인권교육을 요청하는 기관(초·중·고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학교 인권특강’

○ 시·도교육청 - 학교 인권교육 담당부서의 업무 추진 및 학생인권조례 제정

○ 시·도교육청별 학교인권교육 담당 부서 현황

시·도교육청별 학교인권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와 해당 부서에서 진행하는 학교 인권교육의 내용은 다음 <표Ⅱ-3>과 같다.

<표Ⅱ-3> 시·도교육청별 학교인권교육 담당부서와 인권교육 내용

교육청	담당부서	인권교육 내용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인권교육센터	현장맞춤형 학생인권교육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부산광역시	교육국 건강생활과 인재개발과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과학직업정보과 유아특수교육과 특수교육지원센터 학교생활문화과	노동인권 근로권익교육 장애학생인권지원단 운영 학교폭력 회복중심 생활교육
인천광역시	민주시민교육과(인권·평화교육팀)	노동인권교육
광주광역시	민주인권생활교육과 민주인권교육 센터	광주 학생인권조례 관련사업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 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학생인권 침해 상담 및 조사·구제
대전광역시	유초등교육과 특수교육지원센터 과학직업정보과 학생생활교육과	장애학생인권교육 노동인권교육 학생인권관련

울산광역시	특수교육지원센터 학생생활교육과	장애학생인권지원, 연수 학생인권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혁신과 민주시민교육담당	학생인권교육 찾아가는 인권연수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경기도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인권센터	학생인권 연수지원 학생인권홍보 및 교육자료개발
강원도	학생지원과 인권인성담당	학교인권교육계획 및 추진 학생노동인권교육연수
충청북도	체육보건안전과 생활지도담당 취업지원센터	학생인권교육 노동인권교육
충청남도	미래인재과 직업교육팀, 취업지원 센터 체육인성건강과 인성인권팀	노동인권교육 인권교육 전반
전라북도	교육국 교육혁신과 교육국 인성건강과 학생인권교육 센터	장애학생 인권교육 학생인권교육센터 운영
전라남도	미래인재과 교육진흥과 학생생활안전과	노동인권보호교육 장애학생 인권지원 학생인권
경상북도	정책과 학생생활과	장애인권교육 학생인권
경상남도	학생생활과 인성교육	학생인권교육 국내외 학생인권교육 분석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생활안전과 학교생활 미래인재교육과 직업교육 학교교육과 인성·문예교육 학교교육과 특수교육	학생인권교육 학생노동인권 4·3평화인권교육 장애인 찾아가는 인권학교운영

전체적으로 보아, 노동인권교육과 장애인 인권교육은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과 청소년 기본법 및 장애인 복지법에 이들 교육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시도 교육청의 경우에는 학생인권조례의 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 경기, 전북, 광주 등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곳에서는 학생(민주)인권(교육)센터를 별도의 기관으로 설립·운영함으로써 지역 내 학교인권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모습이다.

○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및 내용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곳은 경기도교육청(2010), 광주광역시교육청(2011), 서울특별시교육청(2012), 전라북도교육청(2013)이다. 각각의 인권조례에서 학교인권교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는 다음과 같다.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제3장 학생인권의 진흥 제1절 인권교육 제30조(학교 내 인권교육 연수) ①학교는 학생에게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전문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학생 아르바이트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근로권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학교는 교원을 대상으로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원연수를 연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교원에 대한 인권 연수 및 지원) ①교육감은 교원에 대한 각종 연수에 학생의 인권에 관한 내용을 편성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장 인권교육 및 연수 제35조(학교 내 인권교육 및 연수) ①학교는 학기당 2시간 이상 인권에 관한 학생 교육 및 교직원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교직원에 대한 인권 연수) ①교육감은 교육청 주관의 모든 자격연수에서 인권에 관한 교육 내용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교육청 주관의 교직원 연수에 인권에 관한 교육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제3장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체계 제1절 학생인권교육과 홍보 제29조(학생인권교육) ⑥학교의 장은 학생들에게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교직원 및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 ①교육감은 교육청 주관 모든 자격연수에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내용을 연2시간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③학교의 장은 교직원에 대한 연 2시간 이상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3장 학생인권의 진흥 제1절 인권교육 제30조(학생에 대한 인권교육) ①학교

의 장은 학생에게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실습, 학생 노동활동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노동권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1조(교직원에 대한 인권 연수와 지원) ①학교의 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직원 연수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여 시·도교육청별 인권조례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 <표Ⅱ-4>와 같다.

<표Ⅱ-4> 교육청별 인권조례 내용 비교

인권조례 내용 교육청	학교				교육청		
	인권교육		학생인권 교원연수		학생인권 교원연수		
	학기당 2시간 이상	근로권 (노동권) 포함	연2회 이상	학기당 2시간 이상	각종연수 포함	자격연수 포함	자격연수 연2시간 이상
경기도교육청	○	○	○		○		
광주광역시교육청	○			○	○	○	
서울특별시교육청	○		○				○
전라북도교육청	○	○	○				

6. 외국의 학교 인권교육 동향

인권교육의 범위 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학교 인권교육은 국제기구와 각국에서 제안 및 전개되고 있으며, 다만 모든 국가의 인권교육 사례를 망라하여 살펴볼 수 없으므로, 오늘날 인권의 발상지인 유럽과 미국, 그리고 정부주도의 제도적 접근을 하고 있는 일본을 중심으로 각각을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⁴⁾.

○ 국제기구가 제안하는 학교 인권교육

1994년 12월 23일 유엔총회는 1995년부터 2004년까지의 10년간을 ‘인권교육을 위한

4) 이하에서 국제기구가 제안하는 학교 인권교육은 ‘구정화 외(2009). 교사를 위한 학교 인권교육의 이해, 국가인권위원회’를 참고하였고, 일본의 학교 인권교육 동향은 ‘정해숙 외(2011). 초·중·고등학교 인권교육 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참고하였음.

10년'으로 선언하고 이와 관련한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실천을 권장하고 있다. 여기에는 세계인권선언에 근거한 국제규약들과 관련 국제 인권법에 담긴 모든 규범, 개념, 가치에 대한 최대한의 인식과 이해, 정규·비정규 교육에서 전 연령집단과 사회 모든 부분에서 남녀의 동등한 참여, 인권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학습자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성적 편견, 인종적 및 기타 선입견에 맞서 싸워야 하며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워야 함 등을 제시하고 있다(구정화 외, 2009:19).

국제사면위원회의 인권교육은 인권교육의 내용으로서 자신의 권리 인식하기, 인권을 맥락 속에서 파악하기, 인권의 존중, 보호 그리고 증진, 국제적 유대를 위하여 등을 대영역으로 제시하고 각각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하위내용들을 제시하고 있다(구정화 외, 2009: 25)

○ 유럽의 학교 인권교육⁵⁾

유럽의 인권교육은 시민성교육(citizenship education), 공민교육(civic education), 정치 교육 및 사회 등의 학과목을 통해 실시되어 왔다. UNCRC(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이해가 널리 확산되면서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되었다. 성공적인 인권교육 실행 전략 사례가 여럿 제시되어 왔으며, 모든 경우에 있어 학교가 새로운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모색하고 확립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에 성공적인 인권교육이 가능하였다. 유럽의 인권교육 실행에 있어서는 역할분담이 이뤄져 왔다. 즉, 유럽이사회, UNSCO, UNICEF와 같은 정부 간 기구들은 독려와 포괄적인 전략적 지휘를 담당하고 있으며, 정부는 정책을 채택한다. 장학사는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교사 교육담당자와 학자들은 교사 훈련과 모범적 관행 보급을 지원한다. 비정부 기구들은 자료 개발, 네트워크 구축, 훈련 실시 등의 역할을 한다.

○ 미국의 학교 인권교육⁶⁾

미국의 인권교육 역사의 뿌리를 이루는 4대 요소는 1)네트워킹, 2)툴과 매체, 3)훈련모형, 4)영향 및 책임성 척도이다. '미국 인권네트워크'는 세계인권기준에 대한 미국의 책임성을 높인다는 목표로 2003년 결성되어 200개가 넘는 지역기반 단체와 수백 명의 개인 회원들로 구성된 것으로 인권교육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인권교육 툴 및 매체로는 신시내티 대학의 모르간 인권연구소가 발간하는 'Human Rights Quarterly'에서부터 미네소타대학의 인권센터의 '온라인 인권라이브러리', '인권교육시리즈', '초·중등교사의 인권교육 훈련을 위한 전지구적 권고'가 수립되었다. 인권교육 훈련 모형으로는 미네

5) 유럽의 학교 인권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가 2006년 10월 24일 주최한 '유럽에서의 인권교육실천과 한국 인권교육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인권교육 국제워크숍에서 Hugh Starkey(영국 런던대학교 교수)의 발제 논문 '유럽의 인권교육'의 내용을 발췌한 것임.

6) 미국의 학교 인권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가 2006년 10월 24일 주최한 '미국에서의 인권교육실천과 한국 인권교육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인권교육 국제워크숍에서 Kristi Rudelius-Palmer(미국 미네소타대학 인권센터 공동책임자 및 교수)의 발제 논문 '미국의 인권교육 - 집 가까이, 작은 곳에서'의 내용을 발췌한 것임.

소타대학 인권센터의 ‘북부 중서부 협력 프로그램’, ‘인권교육트레이너협회 전미 훈련과정’, 주정부와 대학 간의 제휴를 통한 ‘This is My Home: A Minnesota Human Rights Education Experience’의 개발과 운용 등이 있다. 영향 및 책임성 평가로는 ‘인권교육을 위한 멀티미디어 평가툴’ 등이 있다. 이처럼 미국의 인권교육은 미국내외의 시민사회, 대학, 인권기관 간에 여러 협력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인권교육활동의 효과를 측정하고 이 분야의 책임규명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혁신적인 멀티미디어 및 웹기술과 함께 공교육 현장 및 비공식 부분에서 다양한 집단에 도달하기 위한 새로운 툴, 가이드라인, 실행 모델이 개발되었다. 이와 동시에, 재단 기금, 업종단체(가령, 전미교사 및 교육연합회 총연맹, 전미사회과교육협회), 지역기반단체들을 포함한 미국의 시민사회는 여전히 대학의 지원을 받으며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 일본의 학교 인권교육

일본은 헌법 및 교육기본법 등에 기초하여 인격의 완성, 평화적인 국가 및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의 육성을 목표로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인권 존중 정신을 고양하는 교육을 추진해왔다. 일본은 2000년 12월 인권교육을 법제화하였으며, 법무성과 문부과학성 공공 소관인 인권교육개발추진센터는 인권개발 자료 작성, 각종 이벤트 개최, 조사·연구, 인권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등 인권에 관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정해숙 외, 2011:50-52 참조).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1) 학생

(1) 초등학교

<표Ⅲ-1> 초등학교 학생들의 지역별 학년별 인원 수

학년	지역	중대도시*	소도시**	군***	전체
5학년	남	82	36	85	203
	여	87	39	82	198
	전체	159	81	107	401
6학년	남	63	38	48	149
	여	53	43	59	155
	전체	116	156	274	304

*중대도시-창원, 김해, 진주, 양산 **소도시-밀양, 거제, 통영, 사천 ***군-하동, 남해, 산청, 합천, 의령, 창녕, 함안, 고성

(2) 중학교

<표Ⅲ-2> 중학교 학생들의 지역별 학년별 인원 수

학년	지역	중대도시*	소도시**	군***	전체
1학년	남	86	22	42	150
	여	11	20	66	97
	전체	97	42	108	247
2학년	남	25	25	41	91
	여	20	22	52	94
	전체	45	47	93	185
3학년	남	46	26	43	115
	여	27	27	61	115
	전체	73	53	104	230

*중대도시-창원, 김해, 진주, 양산 **소도시-밀양, 거제, 통영, 사천 ***군-하동, 남해, 산청, 합천, 의령, 창녕, 함안, 고성

(3)고등학교

<표Ⅲ-3> 고등학교 학생들의 지역별 학년별 인원 수

학년	지역	중대도시*	소도시**	군***	전체
1학년	남	25	26	101	152
	여	73	49	86	208
	전체	98	75	187	360
2학년	남	35	29	88	152
	여	87	58	99	244
	전체	122	87	187	396
3학년	남	40	28	102	170
	여	78	65	90	233
	전체	118	93	192	403

*중대도시-창원, 김해, 진주, 양산 **소도시-밀양, 거제, 통영, 사천 ***군-하동, 남해, 산청, 합천, 의령, 창녕, 함안, 고성

2) 교원

(1)일반학교

<표Ⅲ-4> 교원들의 지역별 학교급별 인원 수

학교	지역	중대도시*	소도시**	군***	전체
초등학교	남	54	44	53	151
	여	202	90	103	395
	전체	256	134	156	546
중학교	남	32	17	22	71
	여	59	20	28	107
	전체	91	37	50	178
고등학교*	남	80	47	126	253
	여	86	48	97	231
	전체	166	95	223	484

*고등학교는 모두 일반고임

(2) 특수학교

<표Ⅲ-5> 교원들의 지역별 학교급별 인원 수

학교	지역	중대도시*	소도시**	군***	전체
특수학교	남	48	14	5	67
	여	84	35	23	142
	전체	132	49	28	209

*고등학교는 모두 일반고임

(3) 학교·기관

<표Ⅲ-6> 경남 시군교육청 및 각급 학교 인권교육 담당자 중 응답자 수

지역	중대도시*	소도시**	군***	전체
인권교육 담당 응답자 수	426	140	223	789

2. 연구 내용

본 연구는 경상남도 학생, 교원, 행정기관의 인권교육 실태를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의 내용은 학생, 교원, 행정기관에 따라 각각 차이가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인권교육 (실행) 계획

인권 교육의 계획 및 실행계획은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학교 및 교육기관의 인권교육 계획 및 실행실태를 조사한다.

2) 인권교육 선행 조건

인권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환경이 우선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교원들이 인권교육을 위해서 부족한 자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한다.

3) 인권교육의 운영

인권교육의 운영은 학생, 교원의 관점에서 조사한다. 학생 부분의 인권교육 운영은 1)인권에 대한 개념, 2)인권 관련 선언이나 조례 등, 3)인권교육에 대한 인식, 4)장애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독특한 행동이나 취향을 가진 학생에 대한 인식, 5)인권교육 경험 및 교과, 6)학급 및 학교규칙 등으로 구성하였다. 교원 부분의 인권교육 운영은 1)인권교육에 대한 인식, 2)인권교육 경험, 3)장애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독특한 행동이나 취향을 가진 학생에 대한 인식, 4)인권 관련 선언이나 조례 등, 4)학교규칙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4) 인권교육의 실천

인권교육의 실천내용은 목표, 내용, 방법, 평가(효과)의 측면에서 조사하였다. 인권교육의 목표가 무엇인지, 인권교육의 주된 내용이 무엇인지, 인권교육의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권교육의 효과(평가)가 무엇인지를 조사하였다.

5) 인권교육 사후 관리

인권교육의 사후 관리와 관련해서는, 인권교육에 대한 주요 내용 및 교육의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3. 조사 도구

학교 인권교육의 프로그램 및 운영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질문지 방법에 의한 사회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의 일차적인 목적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의 인권교육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이차적인 목적은 학생, 교원, 행정가들의 인권교육에 대한 욕구인식과 정도, 이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파악하는데 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학생용, 교원용, 관리자용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각각의 설문지는 수차례의 설문지 구성을 위한 현장 및 연구자 회의를 통해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고, 설문지를 실시하기 이전에 예비설문지를 구성하여 현장검토를 통해 다시 재구성하는 검토과정을 거쳤다.

1) 학생용 설문지

학생용 설문지는 설문지 안내문, 인적사항, 도입설문, 본설문의 형태로 구성하였다. 도입설문에서는 인권의 개념, 인권교육의 개념을 학교 수준(초등용, 중등용)에 따라 각각 제시하였다.

<표Ⅲ-7> 학생용 설문지 내용 구성

내용		문항
인권교육의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⑥, ⑥-1, ⑥-2, ⑥-3, ⑦, ⑧, ⑨, ⑩, ⑪, ⑫
인권교육의 실천	목표	⑥-4
	내용	⑥-5
	방법	⑥-6
	평가(효과)	⑥-7
인권교육 사후 관리		⑬, ⑭

인권 교육의 내용은 인권교육의 운영, 인권교육의 실천, 인권교육의 사후관리 등의 세 영역으로 구성하였고, 인권교육의 실천영역에서는 목표, 내용, 방법, 평가의 네 부분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표 Ⅲ-7>과 같다(세부적인 내용은 부록 1 참조).

2) 교원용 설문지

교원용 설문지도 학생용과 마찬가지로 설문지 안내문, 인적사항, 도입설문, 본설문의 형태로 구성하였다. 도입설문에서 인권에 대한 개념은 학생용과 다르게 제시하였다. 설문지의 내용 구성은 인권교육 선행조건, 인권교육의 운영, 인권교육의 실천, 인권교육 사후 관리의 네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학생 설문지에 비해 인권교육의 선행 조건 영역이 추가되었고, 인권교육 사후 관리 영역 문항이 확대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표 Ⅲ-8>과 같다(세부적인 내용은 부록 1 참조).

<표Ⅲ-8> 교원용 설문지 내용 구성

내용		문항
인권교육 선행 조건		④
인권교육의 운영		①, ②, ③, ③-1, ⑥, ⑦, ⑧, ⑨, ⑩, ⑪
인권교육의 실천	목표	③-2
	내용	③-3
	방법	③-4
	평가(효과)	③-5, ③-6
인권교육 사후 관리		⑤, ⑫, ⑬, ⑭, ⑮

3) 학교·기관용 설문지

학교·기관용 설문지는 시군구 교육지원청의 역할과 관련이 있다. 여기에서의 내용은 인권교육 계획, 인권교육 실행계획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의 <표Ⅲ-9> 와 같다(세부적인 내용은 부록 1 참조).

<표Ⅲ-9> 관리자용 설문지 내용 구성

내용	문항
인권교육 계획	②, ③
인권교육 실행계획	①, ①-1, ①-2

4) 설문지 배부 및 회수율

설문지는 크게 학교·기관용, 교원용, 학생용으로 나누어진다. 학교·기관용 설문지는 도내 18개 지역교육청 전체, 956개 초·중·고등학교 전체에 설문 의뢰하였으며, 응답률은 81.1%로 나타났다. 교원용 및 학생용은 18개 시·군 소재 62개 학교에 배부하였다. 설문지는 62개 학교 중 50개 학교에서 회수되었으며, 회수율은 80.6%로 나타났다. 회수율을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다.

<표Ⅲ-10> 학교·기관용 설문 응답 정보

과정 \ 학교·기관	교육지원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설 문	18	502	264	190	974
응 답	11	378	219	167	775
응답률	61.1%	75.3%	82.9%	82.9%	81.1%

<표Ⅲ-11> 학교급별 설문지 회수 정보

과정 \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 계
발 송	26	17	19	62
회 수	24	10	16	50
회수율	92.3%	58.8%	88.9%	80.6%

<표Ⅲ-12> 지역별 설문지 회수 정보(본문에서 편의상 창원, 김해, 진주, 양산은 중대도시, 밀양, 거제, 통영, 사천은 소도시, 10개 군은 군지역으로 분류하였음)

과정 \ 지역	창원	김해	진주	양산	밀양	거제	통영	사천	거창	함양
발 송	12	4	5	4	2	5	4	2	4	2
회 수	8	3	4	1	2	5	4	1	4	2
회수율(%)	66.7	75	80	25	100	100	100	50	100	100
과정 \ 지역	산청	합천	하동	남해	의령	창녕	함안	고성	계	
발 송	3	3	3	4	4	3	3	3	70	
회 수	1	3	3	3	4	3	2	2	55	
회수율(%)	33.3	100	100	75	100	100	66.7	66.7	78.6	

4. 자료 처리

우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를 사용하여 일차적으로 문항별 단순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무응답 반응은 자료처리에서 제외하였으며, 따라서 응답의 총계 수(N)는 일정하지 않다. 복수응답 문항은 단순빈도를 산출하였으며, 우선순위 점수, 즉 5점 척도(예,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경우는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를 부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인 실태 조사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빈도분석하였으며, 순위 점수 항목의 경우 평균 점수를 산출하여 실태의 정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IV. 연구 결과

본 연구의 목적은 경상남도 학교 인권교육 실태를 밝히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본장에서는 질문지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결과를 인권교육의 계획, 인권교육의 선행조건, 인권교육의 운영, 인권교육 실천(목적, 내용, 방법, 평가), 인권교육의 사후 관리의 순으로 제시하며, 설문 내용 따라서는 대상자의 빈도와 점수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1. 인권교육 (실행) 계획

문1. 인권교육이 창의적 체험활동의 주제에 포함 유무

학교 및 기관의 인권교육 계획에서, 인권교육이 창의적 체험활동의 주제에 포함되어 있는지 유무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 <표IV-1>과 같다. 인권교육은 창의적 체험활동 학습 주제 중의 하나로 포함된 비율이 39%로 나타났다.

<표IV-1> 인권교육이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한 학습 주제에 포함 유무 빈도

인식 정도	N	%
인권교육은 창의적 체험활동 학습 주제 중의 하나이다	305	39.0
인권교육은 창의적 체험활동 학습 주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484	61.0
계	789	100.0

문1-1. 인권교육에 배정된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

학교 및 기관의 인권교육 계획에서, 인권교육에 배정된 창의적 체험활동의 시수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 <표 IV-2>와 같다. 창의적 체험활동에 포함된 인권교육 시수는 2시간 20.4%, 4시간 17.6%로 나타났고, 10시간 10.7%, 11시간 이상이 9.6%로 나타났다.

<표 IV-2> 인권교육에 배정된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 빈도

인식 정도	N	%
0시간	4	1.3
1시간	20	6.6
2시간	61	20.4
3시간	17	5.7
4시간	53	17.6
5시간	23	7.6
6시간	25	8.4
7시간	7	2.4
8시간	29	9.6
9시간	1	0.1
10시간	32	10.7
11시간 이상	29	9.6
계	301	100.0

문1-2. 창의적 체험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인권교육 방식

학교 및 기관의 인권교육 계획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인권교육 방식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 <표 IV-3>과 같다. 창의적 체험활동에서의 인권교육 방식은 '유인물 읽어보기 또는 동영상을 시청하는 방법'이 53.4%, '별도의 프로그램 또는 인권 관련 특강이나 행사'가 32.4%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3> 창의적 체험활동에서의 인권교육 방식 빈도

인식 정도	N	%
인권교육 인정도서를 사용한다	19	5.2
별도의 프로그램 또는 인권 관련 특강이나 행사를 한다	119	32.4
유인물 읽어보기 또는 동영상을 시청하는 방법으로 한다	196	53.4
기타	33	9.0
계	367	100.0

문2. 인권교육을 위한 계획 수립에 대한 인식

학교 및 기관의 인권교육 계획에서, 인권교육을 위한 계획 수립에 대한 인식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 <표IV-4>와 같다. 응답 기관의 62%는 인권교육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IV-4> 인권교육을 위한 계획 수립 여부 빈도

인식 정도	N	%
그렇다	298	38.0
그렇지 않다	491	62.0
계	789	100.0

문3. 인권교육 계획의 내용

학교 및 기관의 인권교육 계획에서, 인권교육 계획의 내용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 <표IV-5>와 같다. 인권교육 계획의 내용으로는 학급운영, 학생지도, 진로지도, 교육상담 등 인권교육에 관한 교과 외 활동 21%, 인권교육에 대한 목표 및 계획 19%, 인권주간 등 인권 관련 행사 14%로 나타났다.

<표IV-5> 인권교육 계획에 포함된 내용 빈도

인식 정도	N	%
인권교육에 대한 목표 및 계획	148	19.0
인권교육에 대한 각 교과별 목표 및 계획	65	8.0
학급운영, 학생지도, 진로지도, 교육상담 등 인권교육에 관한 교과 외 활동	166	21.0
가정·지역사회·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51	6.0
인권주간 등 인권 관련 행사	109	14.0
교직원 인권교육연수에 대한 목표 및 계획	66	8.0
기타	12	2.0
계	617	100.0

2. 인권교육 선행 조건

문4. 인권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

학교에서 교원들이 인권교육 실시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으로 지적한 응답 결과는 다음 <표IV-6>과 같다. ‘인권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의 어려움’에 대한 평균 점수가 3.4~3.6의 범위에 있어 어느 정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편이다. 인권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인권교육과 관련된 연수 부족, 교내외 활동조직 부족, 프로그램 미흡, 지역 사회와의 연대 부족에 대한 빈도는 <표IV-7>, <표IV-8>, <표IV-9>, <표IV-10>과 같으며, 모두 부족하거나 미흡한 편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 항목별 평균 점수

<표IV-6> ‘인권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의 어려움’에 대한 항목별 반응 점수⁷⁾

내용	평균	표준편차
인권교육 관련 교원 및 예비교사 연수 부족	3.4506	.99577
인권교육에 필요한 학교 내외의 활동조직 부족	3.4626	.98490
인권교육 프로그램(자료, 정보 등) 미흡	3.5966	.98373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의 연대 부족	3.5402	.99193

○ 인권 교육 관련 교원 및 예비교사 연수 부족

<표 IV-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인권 교육 관련 교원 및 예비교사 연수 부족’에 대한 반응은 52.3%가 응답하였다. 선생님 중 52.3%는 ‘인권 교육 관련 교원 및 예비교사 연수 부족’이 인권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주요 어려움 중 하나라고 보았다.

<표 IV-7> 인권 교육 관련 및 예비교사 연수 부족에 대한 인식 빈도

인식 정도	N	%
전혀 그렇지 않다	63	4.4
그렇지 않다	157	11.1
보통이다	457	32.2
그렇다	560	39.5
매우 그렇다	181	12.8
계	1418	100.0

7) 이하 평균 및 표준편차로 표시된 표는 모두 5점 척도임.

○ 인권교육에 필요한 학교 내외의 활동 조직 부족

<표 IV-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인권교육에 필요한 학교 내외의 활동 조직 부족'에 대한 반응은 52.1%가 응답하였다. 선생님 중 52.1%는 '인권교육에 필요한 학교 내외의 활동 조직 부족'이 인권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주요 어려움 중 하나라고 보았다.

<표 IV-8> 인권교육에 필요한 학교 내외의 활동 조직 부족에 대한 인식 빈도

인식 정도	N	%
전혀 그렇지 않다	60	4.2
그렇지 않다	147	10.4
보통이다	472	33.3
그렇다	555	39.1
매우 그렇다	184	13.0
계	1418	100.0

○ 인권교육 프로그램(자료, 정보 등) 미흡

<표IV-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인권교육 프로그램(자료, 정보 등) 미흡'에 대한 반응은 62.7%가 응답하였다. 선생님 중 62.7%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자료, 정보 등) 미흡'이 인권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주요 어려움 중 하나라고 보았다.

<표IV-9> 인권교육 프로그램(자료, 정보 등) 미흡에 대한 인식 빈도

인식 정도	N	%
전혀 그렇지 않다	54	3.8
그렇지 않다	123	8.7
보통이다	394	27.8
그렇다	616	43.4
매우 그렇다	231	16.3
계	1418	100.0

○ 지역사회 및 관련 기관과의 연대 부족

<표IV-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지역사회 및 관련 기관과의 연대 부족'에 대한 반응은 55.7%가 응답하였다. 선생님 중 55.7%는 '지역사회 및 관련 기관과의 연대 부족'이 인권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주요 어려움 중 하나라고 보았다.

<표Ⅳ-10> 지역사회 및 관련 기관과의 연대 부족에 대한 인식 빈도

인식 정도	N	%
전혀 그렇지 않다	58	4.1
그렇지 않다	128	9.0
보통이다	441	31.1
그렇다	572	40.3
매우 그렇다	219	15.4
계	1418	100.0

3. 인권교육의 운영

1) 학생

문1. '인권'의 개념에 대한 인식

학생들의 '인권'의 개념 인식정도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Ⅳ-11>, <표Ⅳ-12>와 같다. 학생들의 '인권'의 개념에 대한 인식은 3.97점으로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69.9%, 중학생의 75.5%, 고등학생의 76.4%가 인권의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다', 또는 '잘 알고 있다'에 반응하였다.

<표Ⅳ-11> '인권'의 개념에 대한 평균 점수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점수	3.9092	.95360	4.0166	.82033	3.9888	.76227	3.9739	.83542

<표Ⅳ-12> '인권'의 개념에 대한 인식 빈도

인식 정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N	%	N	%	N	%	N	%
전혀 모른다	13	1.8	9	1.4	8	.7	30	1.2
모른다	39	5.5	5	.8	15	1.3	59	2.3
보통이다	160	22.7	148	22.4	250	21.6	558	22.1
알고 있다	280	39.7	304	45.9	595	51.3	1179	46.7
잘 알고 있다	213	30.2	196	29.6	291	25.1	700	27.7
계	705	100.0	662	100.0	1159	100.0	2526	100.0

문2. 인권 정보 획득 출처에 대한 인식(복수응답)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경로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IV-13>과 같다. 초등학생의 '인권 정보 획득 출처'에 대한 인식은 학교에서 54.5%로 나타났으며, 학교 외에서 44.7%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인권정보 획득 출처'는 학교 교과 수업, TV, 신문 등 언론매체, 책(교과서 제외), 학교 교과 수업 외 활동 등에서 10% 이상의 비율로 반응하였다. 소수의 학생들은 친구를 통해서도 인권정보를 획득하는 것으로 반응하였다(2.1%).

고등학생의 인권정보 획득 출처'는 학교 교과 수업, TV, 신문 등 언론매체, 책(교과서 제외) 등에서 10% 이상의 비율로 반응하였다. 소수의 학생들은 학교 교과 수업 외 활동에서, 부모님이나 주위 어른, 친구를 통해서도 인권정보를 획득하는 것으로 반응하였다.

<표IV-13> '인권 정보 획득 출처'에 대한 인식 빈도

인식 정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N	%	N	%	N	%	N	%
학교 교과 수업에서	566	41.7	551	43.7	830	36.8	1947	39.9
학교 교과 수업 외 활동에서	174	12.8	209	16.6	206	9.1	589	12.1
책에서(교과서 제외)	184	13.6	124	9.8	300	13.3	608	12.5
TV, 신문 등 언론 매체	264	19.5	265	21.0	748	33.1	1277	26.2
부모님이나 주위 어른들을 통해서	104	7.7	66	5.2	84	3.7	254	5.2
친구들을 통해서	41	3.0	27	2.1	64	2.8	132	2.7
들어본 적이 없다	12	0.9	7	0.6	9	0.4	28	0.6
기타	12	0.9	11	0.9	16	0.7	39	0.8
계	1,357	100.0	1260	100.0	2257	100.0	4874	100.0

문3.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독특성을 가진 학생에 대한 인식

학생들이 인식하는 장애학생, 다문화가정학생, 독특성을 가진 학생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IV-14> ~ <표IV-20>과 같다.

○ 항목별 평균 점수

<표IV-14>에 따르면, 따돌림의 대상으로 인식하는지에 대한 학생들의 점수가 3.3~3.6의 범위에 있어 따돌림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설문 내용

상, 점수가 낮을수록 부정적임). 다문화가정학생, 독특한 행동이나 취향을 가진 학생, 장애학생 순으로 점수가 높았다(각각 초 : 4.0, 3.8, 3.5, 중 : 3.8, 3.7, 3.5, 고 : 3.3, 3.2, 3.2). 성희롱, 성폭력의 대상으로 인식하는지에 대한 학생들의 점수가 3.4~3.7의 범위에 있어 성희롱, 성폭력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는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학생, 독특한 행동이나 취향을 가진 학생, 장애학생의 순으로 점수가 높았다.(각각 초 : 4.2, 4.2, 4.0, 중 : 4.0, 4.0, 3.8, 고 : 3.4, 3.4, 3.3).

<표 IV-14> '장애학생, 다문화가정학생, 독특성을 가진 학생'에 대한 평균 점수

내용	대상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따돌림의 대상	장애학생	3.5035	1.24216	3.4592	1.88408	3.2114	1.11250	3.3436	1.16206
	다문화가정학생	3.9631	1.16838	3.7749	1.07472	3.2573	1.15270	3.6481	1.16008
	독특 행동, 취향 학생	3.7631	1.17831	3.6813	1.14047	3.2355	1.16093	3.5907	1.17948
성희롱, 성폭력의 대상	장애학생	4.0426	1.08889	3.8218	1.05590	3.3089	1.16194	3.7795	1.14185
	다문화가정학생	4.1816	1.00479	4.0060	.99315	3.4055	1.18256	3.4996	1.18564
	독특 행동, 취향 학생	4.1589	1.03230	3.9819	1.00210	3.3969	1.18912	3.7629	1.15166

○ 장애학생에 대한 따돌림 인식

<표IV-1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장애학생에 대한 따돌림'은 초등학교 59%, 중학교 49.3%, 고등학교 43.2%의 학생들이 '그렇지 않다'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 반응하였다. 따돌림에 대한 반응 즉,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에 빈응한 비율이 초등학교 23.2%, 중학생 25.1%, 고등학교 28.7%로 나타났다.

<표 IV-15> '장애학생에 대한 따돌림'에 대한 인식 빈도

인식 정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N	%	N	%	N	%	N	%
매우 그렇다	41	5.8	27	4.1	67	5.8	135	5.3
그렇다	123	17.4	139	21.0	265	22.9	527	20.9
보통이다	190	27.0	170	25.7	327	28.2	687	27.2
그렇지 않다	142	20.1	195	29.5	352	30.4	689	27.3
전혀 그렇지 않다	209	29.6	131	19.8	148	12.8	488	19.3
계	705	100.0	662	100.0	1159	100.0	2526	100.0

○ 다문화가정학생에 대한 따돌림 인식

<표Ⅳ-16>에 제시된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 학생 따돌림’은 초등학교 69%, 중학교 62.2%, 고등학교 44.2%의 학생들이 ‘그렇지 않다’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 반응하였다. 따돌림에 대한 반응 즉,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에 반응한 비율이 초등학교 14.9%, 중학생 13.9%, 고등학생 27.6%로 나타났다.

<표Ⅳ-16> ‘다문화가정 학생 따돌림’에 대한 인식 빈도

인식 정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N	%	N	%	N	%	N	%
매우 그렇다	22	3.1	13	2.0	77	6.6	112	4.4
그렇다	83	11.8	79	11.9	243	21.0	405	16.0
보통이다	113	16.0	158	23.9	327	28.2	598	23.7
그렇지 않다	168	23.8	206	31.1	327	28.2	701	27.8
전혀 그렇지 않다	319	45.2	206	31.1	185	16.0	710	28.1
계	705	100.0	662	100.0	1159	100.0	2526	100.0

○ 독특한 행동이나 취향을 가진 학생에 대한 따돌림 인식

<표Ⅳ-17>에 제시된 바와 같이, ‘독특한 행동이나 취향을 가진 학생 따돌림’은 초등학교 60.9%, 중학교 59.1%, 고등학교 43.4%의 학생들이 ‘그렇지 않다’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 반응하였다. 따돌림에 대한 반응 즉,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에 반응한 비율이 초등학교 17.3%, 중학생 17.0%, 고등학생 27.7%로 나타났다.

<표Ⅳ-17> ‘독특한 행동이나 취향을 가진 학생 따돌림’에 대한 인식 빈도

인식 정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N	%	N	%	N	%	N	%
매우 그렇다	24	3.4	24	3.6	88	7.6	136	5.4
그렇다	98	13.9	89	13.4	233	20.1	420	16.6
보통이다	154	21.8	158	23.9	335	28.9	647	25.6
그렇지 않다	174	24.7	194	29.3	324	28.0	692	27.4
전혀 그렇지 않다	255	36.2	197	29.8	179	15.4	631	25.0
계	705	100.0	662	100.0	1159	100.0	2526	100.0

○ 장애학생에 대한 성희롱이나 성폭력 대상 인식

<표Ⅳ-1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장애학생에 대한 성희롱이나 성폭력’은 초등학교 70.5%, 중학교 64.8%, 고등학교 45.3%의 학생들이 ‘그렇지 않다’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 반응하였다.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대한 반응이,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에 반응한 비율이 초등학생 10.2%, 중학생 13.0%, 고등학생 25.6%로 나타났다.

<표Ⅳ-18> ‘장애학생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대한 인식 빈도

인식 정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N	%	N	%	N	%	N	%
매우 그렇다	17	2.4	11	1.7	77	6.6	105	4.2
그렇다	55	7.8	75	11.3	220	19.0	350	13.9
보통이다	136	19.3	147	22.2	337	29.1	620	24.5
그렇지 않다	170	24.1	217	32.8	318	27.4	705	27.9
전혀 그렇지 않다	327	46.4	212	32.0	207	17.9	746	29.5
계	705	100.0	662	100.0	1159	100.0	2526	100.0

○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성희롱이나 성폭력 대상 인식

<표Ⅳ-19>에 제시된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 학생 성희롱이나 성폭력’은 초등학교 76.2%, 중학교 70.4%, 고등학교 49.2%의 학생들이 ‘그렇지 않다’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 반응하였다.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대한 반응이,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에 반응한 비율이 초등학생 7.3%, 중학생 7.4%, 고등학생 22.1%로 나타났다.

<표Ⅳ-19> ‘다문화가정 학생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대한 인식 빈도

인식 정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N	%	N	%	N	%	N	%
매우 그렇다	11	1.6	10	1.5	86	7.4	107	4.2
그렇다	40	5.7	39	5.9	170	14.7	249	9.9
보통이다	117	16.6	147	22.2	333	28.7	597	23.6
그렇지 않다	179	25.4	207	31.3	328	28.3	714	28.3
전혀 그렇지 않다	358	50.8	259	39.1	242	20.9	859	34.0
계	705	100.0	662	100.0	1159	100.0	2526	100.0

○ 독특한 행동이나 취향을 가진 학생 성희롱이나 성폭력 대상 인식

<표Ⅳ-20>에 제시된 바와 같이, ‘독특한 행동이나 취향을 가진 학생 성희롱이나 성폭력’은 초등학교 75.1%, 중학교 75.7%, 고등학교 48.6%의 학생들이 ‘그렇지 않다’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 반응하였다.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대한 반응이,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에 반응한 비율이 초등학생 7%, 중학생 8.1%, 고등학생 22.3%로 나타났다.

<표Ⅳ-20> ‘독특한 행동이나 취향을 가진 학생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대한 인식 빈도

인식 정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N	%	N	%	N	%	N	%
매우 그렇다	18	2.6	12	1.8	89	7.7	119	4.7
그렇다	31	4.4	42	6.3	169	14.6	242	9.6
보통이다	126	17.9	140	21.1	338	29.2	605	24.0
그렇지 않다	174	24.7	220	33.2	319	27.5	713	28.2
전혀 그렇지 않다	355	50.4	248	37.5	244	21.1	847	33.5
계	705	100.0	662	100.0	1159	100.0	2526	100.0

문4. 인권 관련 선언, 협약, 조례, 지침 등에 대한 인식(복수응답)

학생들의 인권 관련 선언, 협약, 조례, 지침 등에 대한 인식 응답 결과는 <표Ⅳ-21>과 같다. 인권정보 획득 출처에 대한 반응은 세계인권선언, 유엔 아동권리협약, 학생인권조례 항목에서 20%를 상회하였다. (경남)학생생활제규정표준안,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조성 지침 등에 대해서는 10% 이하로 반응하였다.

<표Ⅳ-21> 인권 관련 선언, 협약, 조례, 지침 등에 대한 인식 빈도

인식 정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N	%	N	%	N	%	N	%
세계인권선언	469	35.9	509	35.7	1046	39.7	2024	37.7
유엔 아동권리협약	286	21.9	252	17.7	393	14.9	931	17.4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156	11.9	151	10.6	294	11.2	601	11.2
학생인권조례	281	21.5	338	23.7	609	23.1	1228	22.9
(경남)학생생활제규정표준안	68	5.2	137	9.6	225	8.5	430	8.0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 지침	48	3.7	37	2.6	66	2.5	151	2.8
계	1308	100.0	1424	100.0	2633	100.0	5365	100.0

문5.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학생들의 인권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 응답 결과는 <표IV-22>와 같다.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83.4%, 중학생의 82.7%, 고등학생의 87.0%가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 또는 ‘매우 필요하다’에 반응하였다.

<표IV-22>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빈도

인식 정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N	%	N	%	N	%
전혀 필요하지 않다	11	1.6	4	.6	10	.9
필요하지 않다	10	1.4	9	1.4	10	.9
보통이다	96	13.6	101	15.3	130	11.2
필요하다	271	38.4	277	41.8	493	42.5
매우 필요하다	317	45.0	271	40.9	516	44.5
계	705	100.0	662	100.0	1159	100.0

문6. 학교에서의 인권교육 경험 유무

학생들이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경험했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IV-23>과 같다. ‘인권교육 경험유무’에 대한 반응에서 초등학생은 ‘받은 적 있다’가 94.8%로 높게 나타났다. 약 5%는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반응하였다. 중학생은 ‘받은 적 있다’가 89%로 높게 나타났다. 11%는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반응하였다. 고등학생은 ‘받은 적 있다’가 63.6%로 나타났다. 36.4%는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반응하였다.

<표IV-23> 인권교육 경험유무에 대한 인식 빈도

인식 정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N	%	N	%	N	%	N	%
받은 적 있다	668	94.8	589	89.0	737	63.6	1993	78.9
받은 적 없다	37	5.2	73	11.0	422	36.4	532	21.1
계	705	100.0	662	100.0	1159	100.0	2526	100.0

문6-1.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을 받은 경로(복수응답)

학생들이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경우,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는 <IV-24>와 같다. '인권교육 받은 시간'에 대한 반응은 교과수업시간 초등학교 56.7%, 중학교 67.3%, 고등학교 61.5%,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초등학교 28.2%, 중학교 21.9%, 고등학교 31.1%로 나타났다. 부분적으로 조회나 종례시간, 상담시간이 인권교육 시간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4> 인권교육 받은 경로에 대한 인식 빈도

인식 정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N	%	N	%	N	%	N	%
교과 수업 시간	646	56.7	523	67.3	584	61.5	1753	61.1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322	28.2	170	21.9	295	31.1	787	27.5
조회나 종례시간	94	8.2	46	5.9	36	3.8	176	6.1
상담 시간	45	3.9	19	2.4	11	1.2	75	2.6
기타	33	2.9	19	2.4	24	2.5	76	2.7
계	1140	100.0	777	100.0	950	100.0	2867	100.0

문6-2. 학교에서의 인권교육 받은 교과목에 대한 인식(복수응답)

학생들이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경우, 어떤 교과목에서 받았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는 <IV-25>와 같다. 초등학교의 경우, '인권교육 받은 교과목'에 대한 반응은 도덕과, 사회과, 국어과 순으로 나타났다(각각 45.1%, 28%, 18.1%). 그 외 교과목은 5% 미만으로 낮게 나타났다. 중학생의 '인권교육 받은 교과목'에 대한 반응은 도덕과, 사회과, 국어과 순으로 나타났다(각각 46.1%, 28.2%, 5.6%). 그 외 교과목은 5% 미만으로 낮게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인권교육 받은 교과목'에 대한 반응은 사회과, 도덕과, 국어과 순으로 나타났다(각각 55.3%, 21.5%, 7.8%). 그 외 교과목은 5% 미만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Ⅳ-25> 인권교육 받은 교과목에 대한 인식 빈도

교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N	%	N	%	N	%
국어과	237	18.1	54	5.6	84	7.8
사회과	366	28.0	272	28.2	594	55.3
도덕과	589	45.1	445	46.1	231	21.5
수학과	13	1.0	4	0.4	5	0.5
과학과	7	0.5	2	0.2	6	0.6
실과과/기술·가정	61	4.7	53	5.5	31	2.9
체육과	18	1.4				
음악과	7	0.5				
미술과	6	0.5				
예체능과(체육 음악 미술 등)			32	3.3	16	1.5
영어과/외국어과	3	0.2	4	0.4	4	0.4
보건과			32	3.3	30	2.8
인권과목			24	2.5	27	2.5
기타			44	4.6	46	4.3
계	1307	100.0	966	100.0	1074	100.0

문6-3. 교과 수업 시간 이외의 인권교육 시간에 대한 인식

학생들이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경우, 학생들의 교과 수업 시간 이외에 인권교육을 받은 시간에 대한 인식은 <표Ⅳ-26>과 같다. ‘교과 수업 시간 이외의 인권교육 시간’에 대한 인식은 외부강사초청 강연, 방송 등을 통한 계기교육, 학교행사 순으로 많고,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는 ‘방송 등을 통한 계기 교육’, ‘외부강사초청 강연’, ‘학교 행사’ 등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각각 30.4%, 29.4%, 28%), 중학교, 고등학교는 외부강사초청 강연, ‘방송 등을 통한 계기 교육’, ‘학교 행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각각 중 : 37.9%, 24.3%, 19.2%, 고 : 21%, 18.5%, 16.2%).

<표Ⅳ-26> 교과 수업 시간 이외의 인권교육 시간에 대한 인식 빈도

교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N	%	N	%	N	%	N	%
학교행사	203	28.8	127	19.2	188	16.2	518	20.5
방송 등을 통한 계기교육	214	30.4	161	24.3	214	18.5	589	23.3
외부 강사 초청 강연	207	29.4	251	37.9	243	21.0	701	27.8
기타	42	6.0	50	7.6	93	8.0	185	7.3
계	668	94.8	589	89.0	738	63.7	1995	79.0

2) 교원

문1.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교원의 '인권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 응답 결과는 <IV-27>과 같다.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생님의 79.8%가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하다', 또는 '매우 필요하다'에 반응하였다.

<표 IV-27>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빈도

인식 정도	N	%
전혀 필요하지 않다	27	1.9
필요하지 않다	62	4.4
보통이다	198	14.0
필요하다	734	51.8
매우 필요하다	397	28.0
계	1418	100.0

문2. 학교에서의 인권교육 경험 유무

교원의 경우,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 유무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IV-28>과 같다. '인권교육 경험유무'에 대한 반응에서 '받은 적 있다'가 50.5%로 나타났다.

<표 IV-28> 인권교육 경험유무에 대한 인식 빈도

인식 정도	N	%
있다	716	50.5
없다	702	49.5
계	1418	100.0

문3. 인권교육 받은 시간

교원이 인권교육을 받은 경우, 인권교육을 어떤 시간에 받았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IV-29>와 같다. '인권교육 받은 시간'에 대한 반응은 직무연수 37.5%, 자격연수 2.3%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타 11.1%로 나타났다.

<표IV-29> 인권교육 받은 시간에 대한 인식

인식 정도	N	%
자격연수	32	2.3
직무연수(원격연수 포함)	529	37.3
기타	155	10.9
계	716	50.5

문3-1. 인권교육 직무연수 받은 이유

교원이 인권교육을 직무연수로 받은 경우, 어떤 이유로 신청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IV-30>과 같다. '인권교육 직무연수 받은 이유'에 대한 반응 비율은 자기계발 23.8%, 학교권유 12.6%로 나타났다.

<표IV-30> 인권교육 직무연수 받은 이유에 대한 인식

인식 정도	N	%
자기 계발을 위해	338	23.8
학교 권유	178	12.6
직무연수 의무 시간을 채우기 위해	111	7.8
기타	89	6.3
계	716	50.5

문5.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노력

교원이 생각하는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노력으로 어떤 것이 있어야 할지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IV-31> ~ <표IV-37>과 같다.

○ 항목별 평균 점수

<표Ⅳ-3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대한 평균점수의 범위는 3.4~4.0의 범위에 있다. 상대적으로 학교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 다양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은 4점에 근접하였고,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표Ⅳ-31>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노력에 대한 항목별 반응 점수

내용	평균	표준편차
학교교육과정에 인권교육 시간 확보	3.6234	.97133
다양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3.9238	.88896
교사양성 과정에서 인권교육 강화	3.8251	.88850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 강화	3.6869	.90516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	3.9838	.88691
지역사회 및 관계기관과의 연대 강화	3.7264	.92706

○ 학교교육과정에 인권교육 시간 확보

<표Ⅳ-32>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학교교육과정에 인권교육 시간 확보’에 대한 반응은 52.7%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선생님 중 52.7%는 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학교교육과정에 인권교육 시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반응하였다.

<표Ⅳ-32> ‘학교교육과정에 인권교육 시간 확보’에 대한 인식 빈도

인식 정도	N	%
전혀 그렇지 않다	58	4.1
그렇지 않다	109	7.7
보통이다	361	25.5
그렇다	671	47.3
매우 그렇다	219	15.4
계	1418	100.0

○ 다양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표Ⅳ-3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다양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반응은 74.8%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선생님 중 74.8%는 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반응하였다.

<표Ⅳ-33> '다양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인식 빈도

인식 정도	N	%
전혀 그렇지 않다	32	2.3
그렇지 않다	50	3.5
보통이다	276	19.5
그렇다	696	49.1
매우 그렇다	364	25.7
계	1418	100.0

○ 교사양성 과정에서 인권교육 강화

<표Ⅳ-34>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교사양성 과정에서 인권교육 강화'에 대한 반응은 70.7%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선생님 중 70.7%는 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교사양성 과정에서 인권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반응하였다.

<표Ⅳ-34> '교사양성 과정에서 인권교육 강화'에 대한 인식 빈도

인식 정도	N	%
전혀 그렇지 않다	36	2.5
그렇지 않다	54	3.8
보통이다	327	23.1
그렇다	706	49.8
매우 그렇다	295	20.8
계	1418	100.0

○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 강화

<표Ⅳ-3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 강화'에 대한 반응은 52.7%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선생님 중 52.7%는 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 강화'가 필요하다고 반응하였다.

<표Ⅳ-35>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 강화'에 대한 인식 빈도

인식 정도	N	%
전혀 그렇지 않다	39	2.8
그렇지 않다	74	5.2
보통이다	416	29.3
그렇다	652	46.0
매우 그렇다	237	16.7
계	1418	100.0

○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

<표Ⅳ-3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에 대한 반응은 76.9%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선생님 중 76.9%는 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반응하였다.

<표Ⅳ-36>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에 대한 인식 빈도

인식 정도	N	%
전혀 그렇지 않다	32	2.3
그렇지 않다	41	2.9
보통이다	254	17.9
그렇다	682	48.1
매우 그렇다	409	28.8
계	1418	100.0

○ 지역사회 및 관계기관과의 연대 강화

<표Ⅳ-3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지역사회 및 관계기관과의 연대 강화'에 대한 반응은 64%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선생님 중 64%는 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사회 및 관계기관과의 연대 강화'가 필요하다고 반응하였다.

<표Ⅳ-37> '지역사회 및 관계기관과의 연대 강화'에 대한 인식 빈도

인식 정도	N	%
전혀 그렇지 않다	42	3.0
그렇지 않다	68	4.8
보통이다	400	28.2
그렇다	634	44.7
매우 그렇다	274	19.3
계	1418	100.0

문6. 장애학생, 다문화가정학생, 독특성을 가진 학생에 대한 인식

장애학생, 다문화가정학생, 독특성을 가진 학생이 따돌림 대상, 성희롱, 성폭력 대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교사의 응답 결과는 <표Ⅳ-38> ~ <표Ⅳ-44>과 같다.

○ 항목별 평균 점수

<표Ⅳ-38>에 제시된 반응 평균을 보면, 대부분 점수가 3.0이하이나, 독특한 행동이나 취향을 가진 학생(3.4)은 따돌림의 대상에 속하는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Ⅳ-38> '장애학생, 다문화가정학생, 독특성을 가진 학생'에 대한 인식

내용	대상	평균	표준편차
따돌림의 대상	장애학생	3.0790	1.11611
	다문화가정학생	2.8801	1.09777
	독특한 행동이나 취향을 가진 학생	3.3872	1.06608
성희롱, 성폭력 의 대상	장애학생	2.9259	1.13534
	다문화가정학생	2.6312	1.06927
	독특한 행동이나 취향을 가진 학생	2.7581	1.07648

○ 장애학생에 대한 따돌림

<표Ⅳ-3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장애학생에 대한 따돌림'은 41.8%의 교원이 '그렇지 않다'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 반응하였다. 따돌림에 대한 반응 즉,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에 반응한 비율은 33.4%로 나타났다.

<표 IV-39> '장애 학생에 대한 따돌림'에 대한 인식 빈도

인식 정도	N	%
전혀 그렇지 않다	122	8.6
그렇지 않다	351	24.8
보통이다	352	24.8
그렇다	479	33.8
매우 그렇다	114	8.0
계	1418	100.0

○ 다문화가정학생 따돌림

<표 IV-40>에 제시된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 학생 따돌림'은 32.3%의 선생님이 '그렇지 않다'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 반응하였다. 따돌림에 대한 반응 즉,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에 반응한 비율은 38.8%로 나타났다.

<표 IV-40> '다문화가정 학생 따돌림'에 대한 인식 빈도

인식 정도	N	%
전혀 그렇지 않다	159	11.2
그렇지 않다	391	27.6
보통이다	410	28.9
그렇다	377	26.6
매우 그렇다	81	5.7
계	1418	100.0

○ 독특한 행동이나 취향을 가진 학생 따돌림

<표 IV-4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독특한 행동이나 취향을 가진 학생 따돌림'은 54.8%의 선생님이 '그렇지 않다'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 반응하였다. 따돌림에 대한 반응 즉,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에 반응한 비율은 20.7%로 나타났다.

<표Ⅳ-41> '독특한 행동이나 취향을 가진 학생 따돌림'에 대한 인식 빈도

인식 정도	N	%
전혀 그렇지 않다	93	6.6
그렇지 않다	200	14.1
보통이다	348	24.5
그렇다	619	43.7
매우 그렇다	158	11.1
계	1418	100.0

○ 장애학생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대한 인식

<표Ⅳ-4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장애학생에 대한 성희롱이나 성폭력'은 35.2%의 선생님이 '그렇지 않다'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 반응하였다.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대한 반응 즉,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에 반응한 비율이 38%로 나타났다.

<표Ⅳ-42> '장애학생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대한 인식 빈도

인식 정도	N	%
전혀 그렇지 않다	165	11.6
그렇지 않다	374	26.4
보통이다	380	26.8
그렇다	399	28.1
매우 그렇다	100	7.1
계	1418	100.0

○ 다문화가정 학생 성희롱이나 성폭력

<표Ⅳ-4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 학생 성희롱이나 성폭력'은 21.9%의 선생님이 '그렇지 않다'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 반응하였다.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대한 반응 즉,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에 반응한 비율은 48%로 나타났다.

<표 IV-43> '다문화가정 학생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대한 인식 빈도

인식 정도	N	%
전혀 그렇지 않다	213	15.0
그렇지 않다	468	33.0
보통이다	427	30.1
그렇다	249	17.6
매우 그렇다	61	4.3
계	1418	100.0

○ 독특한 행동이나 취향을 가진 학생 성희롱이나 성폭력

<표 IV-4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독특한 행동이나 취향을 가진 학생 성희롱이나 성폭력'은 25.6%의 선생님이 '그렇지 않다'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 반응하였다.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대한 반응 즉,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에 반응한 비율이 41.7%로 나타났다.

<표 IV-44> '독특한 행동이나 취향을 가진 학생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대한 인식 빈도

인식 정도	N	%
전혀 그렇지 않다	186	13.1
그렇지 않다	405	28.6
보통이다	464	32.7
그렇다	292	20.6
매우 그렇다	71	5.0
계	1418	100.0

문7. 학교 규칙 개정에 대해 학교로 부터 안내받은 경험 유무

교원이 학교로부터 학교규칙 개정에 대해 안내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 <표 IV-45>와 같다. 94.9%의 선생님은 학교 규칙 개정에 대해 안내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반응하였다.

<표 IV-45> 학교 규칙 개정의 안내받은 경험

인식 정도	N	%
있다	1345	94.9
없다	73	5.1
계	1418	100.0

문8. '학교규칙에 따른 학생생활 지도'에 대한 인식

교원이 학교규칙에 따라 생활지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 <표IV-46>와 같다. 학교규칙에 따른 학교생활'에 대한 반응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생님의 78%가 '학교 규칙에 따른 학교생활'을 하는 것으로 반응하였다.

<표IV-46> '학교규칙에 따른 학생생활 지도'에 대한 인식 빈도

인식 정도	N	%
그렇다	1301	91.7
그렇지 않다	117	8.3
계	1418	100.0

문9. '학생에게 학급규칙 안내'에 대한 인식

교원이 학교규칙을 학생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는 <IV-47>과 같다. 교원의 52.5%가 학급에서 학생들이 학교규칙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IV-47> '학생에게 학급규칙 안내함'에 대한 인식 빈도

인식 정도	N	%
그렇다	745	52.5
그렇지 않다	562	39.6
기타	111	7.8
계	1408	100.0

문10. 학교규칙 개정을 위한 학교규칙개정위원회 역할 안내받은 경험에 대한 인식

교원이 학교규칙 개정을 위한 학교규칙개정위원회 역할을 안내받은 경험이 있는지 유무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IV-48>과 같다. 교원들은 학급 규칙 개정이 학생, 교원, 학부모 대표로 구성된 학교규칙개정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안내받은 경험에 대하여 긍정적 반응이 82.9%로 나타났다.

<표IV-48> '학교규칙 개정을 위한 학교규칙개정위원회 역할 안내받은 경험'에 대한 인식 빈도

인식 정도	N	%
그렇다	1176	82.9
그렇지 않다	242	17.1
계	1418	100.0

문11. '학교규칙 개정 관련 의견 수렴 참여 경험'에 대한 인식

교원이 학교규칙 개정 관련 의견 수렴시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IV-49>와 같다. 학교규칙 제·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참여에 대한 질문에 대한 반응은 학생회, 학급회의를 통한 방법이 각각 30% 이상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홈페이지 등도 5%를 상회하였다.

<표IV-49> '학교규칙 제·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방법'에 대한 인식 빈도

인식 정도	N	%
그렇다	1051	74.1
그렇지 않다	367	25.9
계	1418	100.0

4. 인권교육의 실천

1) 학생

문6-4. 인권교육의 목적은?

학생의 인권교육의 목적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IV-50> ~ <표IV-54>과 같다.

○ 항목별 평균 점수

<표IV-5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인권교육의 목적에 대한 설문지에서 인권의 뜻, 인권에 대한 지식 알기, 인권 침해 문제 해결하기, 인권을 위한 행동하기, 인권을 존중하는 마음과 태도 갖기 등 모든 항목에서 초등학생, 중학생은 4.2 이상, 고등학생은 4.0 이상

의 반응 점수가 나타났다.

<표Ⅳ-50> '인권교육의 목적'에 대한 항목별 평균 점수

항 목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인권의 뜻 인권에 대한 지식 알기	4.2784	.77461	4.2683	.67966	4.2060	.72060	4.2491	.72538
인권 침해 문제 해결하기	4.2769	.79519	4.2801	.71044	4.0420	.82177	4.1910	.78930
인권을 위한 행동하기	4.3024	.78299	4.2666	.70609	4.0393	.81026	4.1945	.78045
인권을 존중하는 마음과 태도 갖기	4.5479	.68335	4.4312	.67065	4.2629	.74130	4.4080	.71166

○ 인권의 뜻, 인권에 대한 지식 알기

<표Ⅳ-5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인권의 뜻, 인권에 대한 지식알기'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81.3%, 중학생의 77.1%, 고등학생의 55.1%가 '인권의 뜻, 인권에 대한 지식알기'를 인권교육의 목적 중 하나로 인식하였다.

<표Ⅳ-51> '인권의 뜻, 인권에 대한 지식알기'에 대한 인식 빈도

인식 정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N	%	N	%	N	%	N	%
전혀 그렇지 않다	4	.6			3	.3	7	.3
그렇지 않다	9	1.3			6	.5	15	.6
보통이다	82	11.6	78	11.8	91	7.9	251	9.9
그렇다	275	39.0	275	41.5	373	32.2	923	36.5
매우 그렇다	298	42.3	236	35.6	265	22.9	799	31.6
계	668	94.8	589	89.0	738	63.7	1995	79.0

○ 인권 침해 문제 해결하기

<표Ⅳ-5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인권 침해 문제 해결하기'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80.3%, 중학생의 76.4%, 고등학생의 48.8%가 '인권 침해 문제 해결하기'를 인권교육의 목적 중 하나로 인식하였다.

<표 IV-52> '인권 침해 문제 해결하기'에 대한 인식

인식 정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N	%	N	%	N	%	N	%
전혀 그렇지 않다	4	.6			4	.3	8	.3
그렇지 않다	11	1.6	3	.5	21	1.8	35	1.4
보통이다	87	12.3	80	12.1	147	12.7	314	12.4
그렇다	260	36.9	255	38.5	334	28.8	849	33.6
매우 그렇다	306	43.4	251	37.9	232	20.0	789	31.2
계	668	94.8	589	89.0	738	63.7	1995	79.0

○ 인권을 위한 행동하기

<표 IV-5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인권을 위한 행동하기'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81.0%, 중학생의 75.8%, 고등학생의 48.8%가 '인권을 위한 행동하기'를 인권교육의 목적 중 하나로 인식하였다.

<표 IV-53> '인권을 위한 행동하기'에 대한 인식 빈도

인식 정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N	%	N	%	N	%	N	%
전혀 그렇지 않다	5	.7			4	.3	9	.4
그렇지 않다	6	.9	1	.2	18	1.6	25	1.0
보통이다	86	12.2	86	13.0	150	12.9	322	12.7
그렇다	256	36.3	257	38.8	339	29.2	852	33.7
매우 그렇다	315	44.7	245	37.0	227	19.6	787	31.2
계	668	94.8	589	89.0	738	63.7	1995	79.0

○ 인권을 위한 마음과 태도 갖기

<표 IV-5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인권을 위한 마음과 태도 갖기'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87.8%가 중학생의 79.9%, 고등학생의 54.2%가 '인권을 위한 행동하기'를 인권교육의 목적 중 하나로 인식하였다.

<표Ⅳ-54> '인권을 위한 마음과 태도 갖기'에 대한 인식 빈도

인식 정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N	%	N	%	N	%	N	%
전혀 그렇지 않다	4	.6			1	.1	5	.2
그렇지 않다	2	.3			8	.7	10	.4
보통이다	43	6.1	60	9.1	101	8.7	204	8.1
그렇다	194	27.5	215	32.5	314	27.1	723	28.6
매우 그렇다	425	60.3	314	47.4	314	27.1	1053	41.7
계	668	94.8	589	89.0	738	63.7	1995	79.0

문6-5 '인권교육의 내용'에 대한 인식

학생들의 인권교육의 내용 인식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Ⅳ-55> ~ <표Ⅳ-59>와 같다.

○ 항목별 평균 점수

<표Ⅳ-5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인권교육의 내용에는 인권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 참여와 활동을 통하여 인권을 실행하기, 세부적인 인권문제(차별, 편견, 무관심, 대량학살 등), 인권 관련 기준(학급규칙, 규범, 인권선언 등), 제도, 협약의 내용 등을 다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중학생들의 4개의 제시된 내용에 대한 반응은 모두 4.0을 상회하였다. 고등학생들의 4개의 제시된 내용에 대한 반응점수는 인권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 세부적인 인권문제(차별, 편견, 무관심, 대량학살 등)에서 4.0을 상회하였다.

<표Ⅳ-55> '인권교육의 내용'에 대한 항목별 평균 점수

항 목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인권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	4.3353	.74569	4.3056	.67636	4.2276	.71213	4.2867	.71451
참여와 활동을 통하여 인권을 실행	4.0180	.87595	4.0170	.82873	3.7886	.89702	3.9328	.87682
세부적인 인권문제	4.1482	.92955	4.1783	.75399	4.0610	.78681	4.1248	.82947
인권관련 기준 제도 협약의 내용	4.0749	.87636	4.1409	.75739	3.8428	.86369	4.0085	.84769

○ ‘인권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인식

<표Ⅳ-5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인권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82.1%, 중학생의 78.1%, 고등학생의 54.3%가 ‘인권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인권교육의 내용 중 하나로 인식하였다.

<표Ⅳ-56> ‘인권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인식 빈도

인식 정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N	%	N	%	N	%	N	%
전혀 그렇지 않다	2	.3					2	.1
그렇지 않다	6	.9			7	.6	13	.5
보통이다	81	11.5	72	10.9	101	8.7	254	10.1
그렇다	256	36.3	265	40.0	347	29.9	868	34.4
매우 그렇다	323	45.8	252	38.1	283	24.4	858	34.0
계	668	94.8	589	89.0	738	63.7	1995	79.0

○ 참여와 활동을 통하여 인권을 실행하기

<표Ⅳ-5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참여와 활동을 통하여 인권을 실행하기’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68.2%, 중학생의 66.8%, 고등학생의 41.5%가 ‘참여와 활동을 통하여 인권을 실행하기’를 인권교육의 내용 중 하나로 인식하였다.

<표Ⅳ-57> ‘참여와 활동을 통하여 인권을 실행하기’에 대한 인식 빈도

인식 정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N	%	N	%	N	%	N	%
전혀 그렇지 않다	5	.7			10	.9	15	.6
그렇지 않다	19	2.7	25	3.8	42	3.6	86	3.4
보통이다	163	23.1	122	18.4	205	17.7	490	19.4
그렇다	253	35.9	260	39.3	318	27.4	831	32.9
매우 그렇다	228	32.3	182	27.5	163	14.1	573	22.7
계	668	94.8	589	89.0	738	63.7	1995	79.0

○ 세부적인 인권문제 등

<표IV-5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세부적인 인권문제(예, 차별, 편견, 무관심 등) 등’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73.1%, 중학생의 73.4%, 고등학생의 50%가 ‘세부적인 인권문제(예, 차별, 편견, 무관심 등)’을 인권교육의 내용 중 하나로 인식하였다.

<표IV-58> ‘세부적인 인권문제(예, 차별, 편견, 무관심 등) 등’에 대한 인식 빈도

인식 정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N	%	N	%	N	%	N	%
전혀 그렇지 않다	11	1.6	1	.2	5	.4	17	.7
그렇지 않다	19	2.7	8	1.2	12	1.0	39	1.5
보통이다	123	17.4	94	14.2	141	12.2	358	14.2
그렇다	222	31.5	268	40.5	355	30.6	845	33.5
매우 그렇다	293	41.6	218	32.9	225	19.4	736	29.1
계	668	94.8	589	89.0	738	63.7	1995	79.0

○ 인권 관련 기준, 제도, 협약의 내용

<표IV-5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인권 관련 기준, 제도, 협약’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69.9%, 중학생의 71.5%, 고등학생의 42.5%가 ‘인권 관련 기준, 제도, 협약 등’을 인권교육의 내용 중 하나로 인식하였다.

<표IV-59> ‘인권 관련 기준, 제도, 협약 인식 빈도

인식 정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N	%	N	%	N	%	N	%
전혀 그렇지 않다	6	.9	1	.2	6	.5	13	.5
그렇지 않다	14	2.0	6	.9	33	2.8	53	2.1
보통이다	155	22.0	109	16.5	207	17.9	471	18.6
그렇다	242	34.3	266	40.2	317	27.4	825	32.7
매우 그렇다	251	35.6	207	31.3	175	15.1	633	25.1
계	668	94.8	589	89.0	738	63.7	1995	79.0

문6-6. '인권 교육 방법'에 대한 인식

학생들이 인권교육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IV-60>과 같다. '인권 교육 방법'에 대한 인식은 주로 선생님의 설명을 통하여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초 : 67.9%, 중 : 68.3%, 고 : 50.7%).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혼재하거나 학생들의 참여와 활동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초 : 15.2%, 7.5%, 중 : 9.4%, 9.2%, 고 8.4%, 3.4%).

<표IV-60> '인권 교육 방법'에 대한 인식 빈도

인식 정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N	%	N	%	N	%	N	%
선생님의 설명	479	67.9	452	68.3	588	50.7	1519	60.1
학생들의 참여와 활동	53	7.5	61	9.2	39	3.4	153	6.1
여러 가지 방법을 혼합하여	107	15.2	62	9.4	97	8.4	266	10.5
기타	29	4.1	14	2.1	14	1.2	57	2.3
계	668	94.8	589	89.0	738	63.7	1995	79.0

문6-7. 인권교육을 받은 후 어떤 도움이나 변화가 있었는가?에 대한 인식

학생들이 인권교육을 받고 어떤 도움이나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IV-61> ~ <표IV-67>과 같다.

○ 항목별 평균 점수

<표IV-6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인권교육을 받은 후 무엇이 변했는지에 대한 반응에서, 인권교육에 대한 지식 습득, 인권침해에 대한 정보 획득, 인권에 적절한 행동에 대한 정보 획득 친구들이 서로 다름을 알 등에서 초등학생 4.2점, 중학생 4.2점, 고등학생 4.0점 이상의 반응점수가 나타났다. 반면에 인권에 대한 호기심 증가, 인권침해 피해자 도움 제공 태도 증가 부분은 모두 4.0보다 낮았다.

<표 IV-61> ‘인권교육을 받은 후의 도움이나 변화’에 대한 항목별 평균 점수

항 목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인권교육에 대한 지식 습득	4.2006	.78126	4.1341	.74277	4.0542	.78989	4.1288	.76989
인권에 대해 더 알고 싶어짐	3.6108	.97403	3.7759	.90953	3.7127	.91949	3.6992	.93348
인권침해에 대한 정보 획득	4.2096	.80540	4.2139	.73892	4.0840	.76631	4.1659	.77060
인권에 적절한 행동 정보 획득	4.2126	.78001	4.1630	.72651	3.9919	.78136	4.1163	.77090
친구들이 서로 다름을 알	4.2425	.83290	4.2156	.76889	4.1152	.79107	4.1875	.80054
인권침해 피해자 도움 제공 태도 증가	3.9207	.94114	4.0204	.86873	3.9038	.87337	3.9464	.89444

○ 인권교육에 대한 지식 습득

<표IV-6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인권교육에 대한 지식 습득’에 대한 반응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78.3%, 중학생의 71.9%, 고등학생의 50.5%가 ‘인권교육에 대한 지식 습득’을 인권교육을 받은 후 도움이나 변화 중 하나로 인식하였다.

<표 IV-62> ‘인권교육에 대한 지식 습득’에 대한 인식 빈도

인식 정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N	%	N	%	N	%	N	%
전혀 그렇지 않다	4	.6	1	.2	6	.5	11	.4
그렇지 않다	7	1.0	5	.8	9	.8	21	.8
보통이다	105	14.9	107	16.2	138	11.9	350	13.9
그렇다	287	40.7	277	41.8	367	31.7	931	36.9
매우 그렇다	265	37.6	199	30.1	218	18.8	682	27.0
계	668	94.8	589	89.0	738	63.7	1995	79.0

○ 인권교육에 대해 더 알고 싶어짐

<표IV-6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인권교육에 대한 대해 더 알고 싶어짐’에 대한 반응은 다소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47.3%, 중학생의 52.6%, 고등학생의 38%가 ‘인권에 대해 더 알고 싶어짐’을 인권교육을 받은 후 도움이나 변화 중 하나로 인식하였다.

<표 IV-63> '인권에 대해 더 알고 싶어짐'에 대한 인식 빈도

인식 정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N	%	N	%	N	%	N	%
전혀 그렇지 않다	12	1.7	5	.8	13	1.1	30	1.2
그렇지 않다	51	7.2	29	4.4	38	3.3	118	4.7
보통이다	272	38.6	207	31.3	246	21.2	725	28.7
그렇다	183	26.0	200	30.2	288	24.8	671	26.6
매우 그렇다	150	21.3	148	22.4	153	13.2	451	17.9
계	668	94.8	589	89.0	738	63.7	1995	79.0

○ 인권침해에 대한 정보 획득

<표 IV-6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인권침해에 대한 정보 획득'에 대한 반응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77.3%, 중학생의 73.9%, 고등학생의 50.4%가 '인권침해에 대한 정보 획득'을 인권교육을 받은 후 도움이나 변화 중 하나로 인식하였다.

<표 IV-64> '인권침해에 대한 정보 획득'에 대한 인식 빈도

인식 정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N	%	N	%	N	%	N	%
전혀 그렇지 않다	4	.6	1	.2	3	.3	8	.3
그렇지 않다	9	1.3	3	.5	7	.6	19	.8
보통이다	110	15.6	96	14.5	143	12.3	349	13.8
그렇다	265	37.6	258	39.0	354	30.5	877	34.7
매우 그렇다	280	39.7	231	34.9	231	19.9	742	29.4
계	668	94.8	589	89.0	738	63.7	1995	79.0

○ 인권에 적절한 행동에 대한 정보 획득

<표 IV-6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인권에 적절한 행동에 대한 정보 획득'에 대한 반응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77.3%, 중학생의 73.3%, 고등학생의 47.6%가 '인권에 적절한 행동에 대한 정보 획득'을 인권교육을 받은 후 도움이나 변화 중 하나

나로 인식하였다.

<표 IV-65> '인권에 적절한 행동에 대한 정보 획득'에 대한 인식 빈도

인식 정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N	%	N	%	N	%	N	%
전혀 그렇지 않다	2	.3	1	.2	5	.4	8	.3
그렇지 않다	7	1.0	3	.5	8	.7	18	.7
보통이다	114	16.2	100	15.1	174	15.0	388	15.4
그렇다	269	38.2	280	42.3	352	30.4	901	35.7
매우 그렇다	276	39.1	205	31.0	199	17.2	680	26.9
계	668	94.8	589	89.0	738	63.7	1995	79.0

○ 친구들이 서로 다름을 알

<표IV-6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친구들이 서로 다름을 알'에 대한 반응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75.8%, 중학생의 72.2%, 고등학생의 50.4%가 '인권에 적절한 행동에 대한 정보 획득'을 인권교육을 받은 후 도움이나 변화 중 하나로 인식하였다.

<표 IV-66> '친구들이 서로 다름을 알'에 대한 인식 빈도

인식 정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N	%	N	%	N	%	N	%
전혀 그렇지 않다	4	.6	1	.2	5	.4	10	.4
그렇지 않다	8	1.1	4	.6	7	.6	19	.8
보통이다	122	17.3	106	16.0	142	12.3	370	14.6
그렇다	222	31.5	234	35.3	328	28.3	784	31.0
매우 그렇다	312	44.3	244	36.9	256	22.1	812	32.1
계	668	94.8	589	89.0	738	63.7	1995	79.0

○ 인권침해 피해자 도움 제공 태도 증가

<표IV-6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인권침해 피해자 도움 제공 태도 증가'에 대한 반응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62.7%, 중학생의 64.5%, 고등학생의 44.1%가 '인권침해 피해자 도움 제공 태도 증가'를 인권교육을 받은 후 도움이나 변화 중 하나로 인식하였다.

<표 IV-67> '인권침해 피해자 도움 제공 태도 증가'에 대한 인식 빈도

인식 정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N	%	N	%	N	%	N	%
전혀 그렇지 않다	12	1.7	4	.6	11	.9	27	1.1
그렇지 않다	19	2.7	17	2.6	19	1.6	55	2.2
보통이다	195	27.7	141	21.3	197	17.0	533	21.1
그렇다	226	32.1	228	34.4	313	27.0	767	30.4
매우 그렇다	216	30.6	199	30.1	198	17.1	613	24.3
계	668	94.8	589	89.0	738	63.7	1995	79.0

문7. 학교 규칙 개정의 안내받은 경험 유무

학생들이 학교규칙 개정될 때 안내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IV-68>과 같다. 85%의 학생들이 안내받은 경험이 있고, 초등학생의 91.5%, 중학생의 91.7%, 고등학생의 77.4%는 학교 규칙 개정에 대해 안내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반응하였다.

<표 IV-68> 학교 규칙 개정의 안내 빈도

인식 정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N	%	N	%	N	%	N	%
있다	645	91.5	607	91.7	897	77.4	2149	85.1
없다	60	8.5	55	8.3	262	22.6	377	14.9
계	705	100	662	100.0	1159	100.0	2526	100.0

문8. '학교규칙에 따른 학교생활'에 대한 인식

학교에서 학교규칙에 따라 학생생활을 지도하고 있는지에 대한 학생의 응답 결과는 <표 IV-69>와 같다. '학교 규칙에 따른 학교 생활'에 대한 반응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71.6%, 중학생의 78%, 고등학생의 73.5%가 '학교 규칙에 따른 학교 생활'을 하는 것으로 반응하였다.

<표 IV-69> '학교규칙에 따른 학교생활'에 대한 인식 빈도

인식 정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N	%	N	%	N	%	N	%
매우 그렇지 않다	2	.3	7	1.1	12	1.0	21	.8
그렇지 않다	10	1.4	14	2.1	22	1.9	46	1.8
보통이다	188	26.7	125	18.9	274	23.6	587	23.2
그렇다	339	48.1	319	48.2	579	50.0	1237	49.0
매우 그렇다	166	23.5	197	29.8	272	23.5	635	25.1
계	705	100.0	662	100.0	1159	100.0	2526	100.0

문9. '학급에서 학급규칙 확인 가능'에 대한 인식

학교에서 학급규칙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에 대한 학생의 응답 결과는 <표 IV-70>과 같다. '학급에서 학급규칙 확인 가능'에 대한 반응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63%, 중학생의 74.5%, 고등학생의 59.5%가 '학급에서 학급규칙을 확인 가능함'으로 반응하였다.

<표 IV-70> '학급에서 학급규칙 확인 가능'에 대한 항목별 인식 빈도

인식 정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N	%	N	%	N	%	N	%
매우 그렇지 않다	3	.4	11	1.7	20	1.7	34	1.3
그렇지 않다	41	5.8	24	3.6	90	7.8	155	6.1
보통이다	217	30.8	134	20.2	359	31.0	710	28.2
그렇다	244	34.6	291	44.0	500	43.1	1035	41.0
매우 그렇다	200	28.4	202	30.5	190	16.4	592	23.4
계	705	100.0	662	100.0	1159	100.0	2526	100.0

문10. 학급규칙 제정 주체에 대한 인식(복수응답)

학급규칙 제정 주체에 대한 학생들의 학교급별 응답 결과는 <표IV-71>, <표IV-72>과 같다.

(1) 초등학생

<표IV-71>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학급 규칙 제정 주체에 대한 질문에 대해, 학생, 교사, 학부모의 순으로 높은 반응이 나타났다(각각 34%, 33.2%, 22.6%). 그리고 학부모가 참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반응하였다(8.8%).

<표IV-71> '학급규칙 제정 주체'에 대한 인식 빈도

인식 정도	N	%
학교	319	22.6%
교사	469	33.2%
학생들	480	34.0%
학부모	124	8.8%
기타	19	1.3%
계	1411	100.0%

(2) 중학생 및 고등학생

<표IV-72>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학생들은 학급규칙 개정이 학생, 교원, 학부모 대표로 구성된 학교규칙제개정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안내 받은 경험은 중학생의 65.7%, 고등학생의 44.8%로 나타났다.

<표IV-72> '학급 규칙 개정을 위한 학교규칙제개정위원회 역할 안내받은 경험에 대한 인식 빈도

인식 정도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N	%	N	%	N	%
그렇다	435	65.7	519	44.8	954	52.4
그렇지 않다	227	34.3	640	55.2	867	47.6
계	662	100.0	1159	100.0	1821	100.0

문11. '학급규칙 제정 과정 참여 경험'에 대한 인식

학급규칙 제정 과정 참여 경험에 대한 학생들의 학교급별 응답 결과는 <표IV-73>, <표IV-74>과 같다.

(1) 초등학생

<표IV-73>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학급규칙 제정 주체에 대한 질문에 대해 긍정적 반응이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59%가 '학급규칙 제정 과정 참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반응하였다.

<표IV-73> '학급규칙 제정 과정 참여 경험'에 대한 인식 빈도

인식 정도	N	%
매우 그렇지 않다	52	7.4
그렇지 않다	69	9.8
보통이다	168	23.8
그렇다	241	34.2
매우 그렇다	175	24.8
계	705	100.0

문11. '학교규칙 제.개정을 위한 학생의견 수렴 방법'에 대한 인식

(2) 중학생 및 고등학생

학교규칙 제.개정을 위한 학생의견 수렴 방법에 대한 중·고등학생들의 응답 결과는 <표IV-74>와 같다. 학급규칙 제.개정을 위한 학생의견 수렴 방법에 대한 질문에 대한 반응은 학생회, 학급회의를 통한 방법이 각각 30%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IV-74> '학급규칙 제·개정을 위한 학생의견 수렴 방법'에 대한 인식

인식 정도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N	%	N	%	N	%
의견을 듣고 모으는 과정이 없다.	82	7.5	182	10.6	264	9.4
학생회에서 학생생활개정위원을 구성하여 개정해야 할 의견을 모으고 학생회(안)을 만든다.	336	30.8	550	32.0	886	31.5
학급회의와 학생회(대의원회) 회의를 거친다.	328	30.0	561	32.7	889	31.6
설문조사는 공청회를 거친다.	121	11.1	73	4.3	194	6.9
학교 홈페이지, 게시한 등에 의견을 실는다.	58	5.3	66	3.8	124	4.4
기타	10	0.9	37	2.2	47	1.7
잘 모르겠다.	157	14.4	248	14.4	405	14.4
계	1092	100.0	1717	100.0	2809	100.0

문12. '선생님의 학급 운영, 수업 및 생활교육'에 대한 인식

학생들이 선생님의 학급 운영, 수업 및 생활교육에 대한 인식 반응결과는 <표IV-75> ~ <표IV-81>과 같다.

○ 항목별 평균 점수

<표IV-7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선생님의 학급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초등학생은 학급규칙을 스스로 정함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5개 항목 모두에서, 중학생은 6개 항목 모두에서 학생들의 반응 점수가 4.0을 넘었다. 고등학생은 6개 항목 모두에서 3.3에서 4.0의 사이의 점수로 반응하였다.

<표 IV-75> '선생님의 학급 운영, 수업 및 생활교육'에 대한 반응 점수

내용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학생의 인권존중	4.1872	.83537	4.1903	.88012	3.6247	1.00591	3.9299	.96976
학급 수업에서 학생 참여 촉구	4.1830	.82520	4.3293	.77617	3.9957	.87420	4.1354	.84706
학급 규칙 학생 스스로 정함	3.9135	1.04564	4.0589	.95963	3.3883	1.15817	3.7106	1.11896
열린 마음으로 대화	4.0525	.93165	4.1692	.88272	3.5893	1.08551	3.8690	1.02593
체벌 사용하지 않음	4.0539	.97843	4.1586	.91578	3.8404	.97706	3.9834	.97113
개인 정보를 존중	4.2780	.88349	4.2356	.87427	3.7446	1.06215	4.0234	.99735

○ 학생의 인권존중

<표Ⅳ-76>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학생의 인권존중’에 대한 반응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78.7%, 중학생의 78.2%, 고등학생의 56.3%가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반응하였다.

<표Ⅳ-76> ‘학생의 인권존중’에 대한 인식 빈도

인식 정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N	%	N	%	N	%	N	%
전혀 그렇지 않다	4	.6	5	.8	41	3.5	50	2.0
그렇지 않다	11	1.6	18	2.7	87	7.5	116	4.6
보통이다	135	19.1	121	18.3	378	32.6	634	25.1
그렇다	254	36.0	220	33.2	413	35.6	887	35.1
매우 그렇다	301	42.7	298	45.0	240	20.7	839	33.2
계	705	100.0	662	100.0	1159	100.0	2526	100.0

○ 학급이나 수업에서 학생 참여 촉구

<표Ⅳ-77>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학급이나 수업에서 학생 참여 촉구’에 대한 반응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78.7%, 중학생의 83.3%, 고등학생의 71.0%가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반응하였다.

<표Ⅳ-77> ‘학급이나 수업에서 학생 참여 촉구’에 대한 인식 빈도

인식 정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N	%	N	%	N	%	N	%
전혀 그렇지 않다	3	.4	1	.2	10	.9	14	.6
그렇지 않다	11	1.6	5	.8	29	2.5	45	1.8
보통이다	136	19.3	105	15.9	298	25.7	539	21.3
그렇다	259	36.7	215	32.5	441	38.1	915	36.2
매우 그렇다	296	42.0	336	50.8	381	32.9	1013	40.1
계	705	100.0	662	100.0	1159	100.0	2526	100.0

○ 학급규칙을 학생 스스로 정함

<표IV-78>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학급규칙을 학생 스스로 정함’에 대한 반응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66.1%, 중학생의 72.0%, 고등학생의 45.2%가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반응하였다.

<표IV-78> ‘학급 규칙을 학생 스스로 정함’에 대한 인식 빈도

인식 정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N	%	N	%	N	%	N	%
전혀 그렇지 않다	17	2.4	4	.6	83	7.2	104	4.1
그렇지 않다	47	6.7	37	5.6	149	12.9	233	9.2
보통이다	175	24.8	151	22.8	403	34.8	729	28.9
그렇다	207	29.4	194	29.3	283	24.4	684	27.1
매우 그렇다	259	36.7	276	41.7	241	20.8	776	30.7
계	705	100.0	662	100.0	1159	100.0	2526	100.0

○ 학생들과 열린 마음으로 대화함

<표IV-79>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학생들과 열린 마음으로 대화함’에 대한 반응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72.0%, 중학생의 76.1%, 고등학생의 52.7%가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반응하였다.

<표IV-79> ‘학생들과 열린 마음으로 대화함’에 대한 인식 빈도

인식 정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N	%	N	%	N	%	N	%
전혀 그렇지 않다	9	1.3	6	.9	51	4.4	66	2.6
그렇지 않다	23	3.3	11	1.7	107	9.2	141	5.6
보통이다	165	23.4	141	21.3	391	33.7	697	27.6
그렇다	233	33.0	212	32.0	331	28.6	776	30.7
매우 그렇다	275	39.0	292	44.1	279	24.1	846	33.5
계	705	100.0	662	100.0	1159	100.0	2526	100.0

○ 학생지도시 체벌 사용하지 않음

<표Ⅳ-80>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학생지도시 체벌 사용하지 않음’에 대한 반응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71.7%, 중학생의 76.3%, 고등학생의 63.4%가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반응하였다.

<표Ⅳ-80> ‘학생지도시 체벌 사용하지 않음’에 대한 인식 빈도

인식 정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N	%	N	%	N	%	N	%
전혀 그렇지 않다	11	1.6	6	.9	23	2.0	40	1.6
그렇지 않다	29	4.1	23	3.5	60	5.2	112	4.4
보통이다	166	23.5	128	19.3	342	29.5	636	25.2
그렇다	204	28.9	208	31.4	388	33.5	800	31.7
매우 그렇다	295	41.8	297	44.9	346	29.9	938	37.1
계	705	100.0	662	100.0	1159	100.0	2526	100.0

○ 학생의 개인 정보를 존중해 줌

<표Ⅳ-81>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학생의 개인 정보를 존중해 줌’에 대한 반응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80.8%, 중학생의 67.8%, 고등학생의 59.8%가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반응하였다.

<표Ⅳ-81> ‘학생의 개인 정보를 존중해 줌’에 대한 인식 빈도

인식 정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N	%	N	%	N	%	N	%
전혀 그렇지 않다	7	1.0	6	.9	42	3.6	55	2.2
그렇지 않다	17	2.4	8	1.2	77	6.6	102	4.0
보통이다	111	15.7	133	20.1	347	29.9	591	23.4
그렇다	208	29.5	192	29.0	359	31.0	759	30.0
매우 그렇다	362	51.3	323	48.8	334	28.8	1019	40.3
계	705	100.0	662	100.0	1159	100.0	2526	100.0

2) 교원

문1.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교원의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IV-82>와 같다.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생님의 79.8%가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하다', 또는 '매우 필요하다'에 반응하였다.

<표IV-82>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빈도

인식 정도	N	%
전혀 필요하지 않다	27	1.9
필요하지 않다	62	4.4
보통이다	198	14.0
필요하다	734	51.8
매우 필요하다	397	28.0
계	1418	100.0

문2. 학교에서의 인권교육 경험 유무

교원의 학교에서의 인권교육 경험 유무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IV-83>과 같다. '인권교육 경험유무'에 대한 반응에서 '받은 적 있다'가 50.5%로 나타났다.

<표IV-83> 인권교육 경험유무에 대한 인식 빈도

인식 정도	N	%
있다	716	50.5
없다	702	49.5
계	1418	100.0

문3. 인권교육 받은 시간

교원의 인권교육 받은 시간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Ⅳ-84>와 같다. ‘인권교육 받은 시간’에 대한 반응에서 직무연수 37.5%, 자격연수 2.3%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타 11.1%로 나타났다.

<표Ⅳ-84> 인권교육 받은 시간에 대한 인식 빈도

인식 정도	N	%
자격연수	32	2.3
직무연수(원격연수 포함)	529	37.3
기타	158	11.1
계	719	50.7

문3-1. 인권교육 직무연수 받은 이유

교원의 인권교육 직무연수 받은 이유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Ⅳ-85>와 같다. ‘인권교육 직무연수 받은 이유’에 대한 반응 비율은 자기계발 23.8%, 학교 권유 12.6%로 나타났다.

<표Ⅳ-85> 인권교육 직무연수 받은 이유에 대한 인식 빈도

인식 정도	N	%
자기 계발을 위해	338	23.8
학교 권유	178	12.6
직무연수 의무 시간을 채우기 위해	111	7.8
기타	92	6.5
계	719	50.7

문5.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노력

교원의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IV-86> ~ <표IV-92>과 같다.

○ 항목별 평균 점수

<표IV-8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대한 반응 비율의 범위는 3.4~4.0의 범위에 있었다. 상대적으로 학교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 다양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은 4점에 근접하였다.

<표IV-86>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대한 항목별 반응 점수

내용	평균	표준편차
학교교육과정에 인권교육 시간 확보	3.6234	.97133
다양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3.9238	.88896
교사양성 과정에서 인권교육 강화	3.8251	.88850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 강화	3.6869	.90516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	3.9838	.88691
지역사회 및 관계기관과의 연대 강화	3.7264	.92706

○ 학교교육과정에 인권교육 시간 확보

<표IV-87>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학교교육과정에 인권교육 시간 확보'에 대한 반응은 52.7%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선생님 중 52.7%는 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학교 교육과정에 인권교육 시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반응하였다.

<표IV-87> '학교교육과정에 인권교육 시간 확보'에 대한 인식 빈도

인식 정도	N	%
전혀 그렇지 않다	58	4.1
그렇지 않다	109	7.7
보통이다	361	25.5
그렇다	671	47.3
매우 그렇다	219	15.4
계	1418	100.0

○ 다양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표IV-88>에 제시된 바와 같이, ‘다양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반응은 74.8%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선생님 중 74.8%는 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반응하였다.

<표IV-88> ‘다양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인식 빈도

인식 정도	N	%
전혀 그렇지 않다	32	2.3
그렇지 않다	50	3.5
보통이다	276	19.5
그렇다	696	49.1
매우 그렇다	364	25.7
계	1418	100.0

○ 교사양성 과정에서 인권교육 강화

<표IV-89>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교사양성 과정에서 인권교육 강화’에 대한 반응은 70.7%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선생님 중 70.7%는 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교사양성 과정에서 인권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반응하였다.

<표IV-89> ‘교사양성 과정에서 인권교육 강화’에 대한 인식 빈도

인식 정도	N	%
전혀 그렇지 않다	36	2.5
그렇지 않다	54	3.8
보통이다	327	23.1
그렇다	706	49.8
매우 그렇다	295	20.8
계	1418	100.0

○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 강화

<표IV-9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 강화'에 대한 반응은 52.7%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선생님 중 52.7%는 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 강화'가 필요하다고 반응하였다.

<표IV-90>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 강화'에 대한 인식 빈도

인식 정도	N	%
전혀 그렇지 않다	39	2.8
그렇지 않다	74	5.2
보통이다	416	29.3
그렇다	652	46.0
매우 그렇다	237	16.7
계	1418	100.0

○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

<표IV-9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에 대한 반응은 76.9%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선생님 중 76.9%는 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반응하였다.

<표IV-91>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에 대한 인식 빈도

인식 정도	N	%
전혀 그렇지 않다	32	2.3
그렇지 않다	41	2.9
보통이다	254	17.9
그렇다	682	48.1
매우 그렇다	409	28.8
계	1418	100.0

○ 지역사회 및 관계기관과의 연대 강화

<표IV-9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지역사회 및 관계기관과의 연대 강화'에 대한 반응은 64%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선생님 중 64%는 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사회 및 관계기관과의 연대 강화'가 필요하다고 반응하였다.

<표IV-92> '지역사회 및 관계기관과의 연대 강화'에 대한 인식 빈도

인식 정도	N	%
전혀 그렇지 않다	42	3.0
그렇지 않다	68	4.8
보통이다	400	28.2
그렇다	634	44.7
매우 그렇다	274	19.3
계	1418	100.0

문6. 장애학생, 다문화가정학생, 독특성을 가진 학생에 대한 인식

교원의 장애학생, 다문화가정학생, 독특성을 가진 학생에 대한 인식에 대한 반응 결과는 <표IV-93> ~ <표IV-99>과 같다.

○ 항목별 평균 점수

<표IV-93>에 제시된 반응 평균을 보면, 따돌림의 대상 내용에서(매우 그렇다 5, 그렇다 4, 보통이다 3, 그렇지 않다 2, 전혀 그렇지 않다 1), 독특한 행동이나 취향을 가진 학생, 장애학생, 다문화가정학생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각각 3.4, 3.1, 2.9).

성희롱, 성폭력의 대상이 된다는 반응의 평균은 장애학생, 독특한 행동이나 취향을 가진 학생, 다문화가정학생 순으로 나타났다(각각 2.9, 2.8, 2.6).

<표 IV-93>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독특성을 가진 학생'에 대한 항목별 평균 점수

내용	대상	평균	표준편차
따돌림의 대상	장애학생	3.0790	1.11611
	다문화가정학생	2.8801	1.09777
	독특한 행동이나 취향을 가진 학생	3.3872	1.06608
성희롱, 성폭력의 대상	장애학생	2.9259	1.13534
	다문화가정학생	2.6312	1.06927
	독특한 행동이나 취향을 가진 학생	2.7581	1.07648

○ 장애학생에 대한 따돌림

<표 IV-9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장애학생에 대한 따돌림'은 41.8%의 선생님이 '그렇지 않다'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 반응하였다. 따돌림에 대한 반응 즉,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에 반응한 비율은 33.4%로 나타났다.

<표 IV-94> '장애 학생에 대한 따돌림'에 대한 인식 빈도

인식 정도	N	%
전혀 그렇지 않다	122	8.6
그렇지 않다	351	24.8
보통이다	352	24.8
그렇다	479	33.8
매우 그렇다	114	8.0
계	1418	100.0

○ 다문화가정학생 따돌림

<표IV-95>에 제시된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 학생 따돌림'은 32.3%의 선생님이 '그렇지 않다'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 반응하였다. 따돌림에 대한 반응 즉,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에 반응한 비율은 38.8%로 나타났다.

<표IV-95> '다문화가정 학생 따돌림'에 대한 인식 빈도

인식 정도	N	%
전혀 그렇지 않다	159	11.2
그렇지 않다	391	27.6
보통이다	410	28.9
그렇다	377	26.6
매우 그렇다	81	5.7
계	1418	100.0

○ 독특한 행동이나 취향을 가진 학생 따돌림

<표IV-96>에 제시된 바와 같이, '독특한 행동이나 취향을 가진 학생 따돌림'은 54.8%의 선생님이 '그렇지 않다'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 반응하였다. 따돌림에 대한 반응 즉,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에 반응한 비율은 20.7%로 나타났다.

<표IV-96> '독특한 행동이나 취향을 가진 학생 따돌림'에 대한 인식 빈도

인식 정도	N	%
전혀 그렇지 않다	93	6.6
그렇지 않다	200	14.1
보통이다	348	24.5
그렇다	619	43.7
매우 그렇다	158	11.1
계	1418	100.0

○ 장애학생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대한 인식

<표Ⅳ-9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장애학생에 대한 성희롱이나 성폭력'은 35.2%의 선생님이 '그렇지 않다'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 반응하였다.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대한 반응 즉,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에 반응한 비율이 38%로 나타났다.

<표Ⅳ-97> '장애 학생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대한 인식 빈도

인식 정도	N	%
전혀 그렇지 않다	165	11.6
그렇지 않다	374	26.4
보통이다	380	26.8
그렇다	399	28.1
매우 그렇다	100	7.1
계	1418	100.0

○ 다문화가정 학생 성희롱이나 성폭력

<표Ⅳ-98>에 제시된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 학생 성희롱이나 성폭력'은 21.9%의 선생님이 '그렇지 않다'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 반응하였다.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대한 반응 즉,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에 반응한 비율은 48%로 나타났다.

<표Ⅳ-98> '다문화가정 학생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대한 인식 빈도

인식 정도	N	%
전혀 그렇지 않다	213	15.0
그렇지 않다	468	33.0
보통이다	427	30.1
그렇다	249	17.6
매우 그렇다	61	4.3
계	1418	100.0

○ 독특한 행동이나 취향을 가진 학생 성희롱이나 성폭력

<표IV-99>에 제시된 바와 같이, ‘독특한 행동이나 취향을 가진 학생 성희롱이나 성폭력’은 25.6%의 선생님이 ‘그렇지 않다’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 반응하였다.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대한 반응 즉,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에 반응한 비율이 41.7%로 나타났다.

<표IV-99> ‘독특한 행동이나 취향을 가진 학생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대한 인식 빈도

인식 정도	N	%
전혀 그렇지 않다	186	13.1
그렇지 않다	405	28.6
보통이다	464	32.7
그렇다	292	20.6
매우 그렇다	71	5.0
계	1418	100.0

문7. 학교규칙 개정의 안내받은 경험 유무

교원의 학교규칙 개정의 안내받은 경험 유무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IV-100>과 같다. 94.9%의 선생님은 학교규칙 개정에 대해 안내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반응하였다.

<표IV-100> 학교규칙 개정의 안내받은 경험 빈도

인식 정도	N	%
있다	1345	94.9
없다	73	5.1
계	1418	100.0

문8. '학교규칙에 따른 학생생활 지도'에 대한 인식

교원의 학교규칙에 따른 학생생활 지도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Ⅳ-101>과 같다. '학교규칙에 따른 학교생활'에 대한 반응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생님의 78%가 '학교규칙에 따른 학교생활'을 하는 것으로 반응하였다.

<표Ⅳ-101> '학교규칙에 따른 학생생활 지도'에 대한 인식 빈도

인식 정도	N	%
그렇다	1301	91.7
그렇지 않다	117	8.3
계	1418	100.0

문9. '학생에게 학급규칙 안내'에 대한 인식

교원의 학생에게 학급규칙 안내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Ⅳ-102>와 같다. '학급에서 학급규칙 확인 가능'에 대한 반응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생님의 74.5%가 '학급에서 학급규칙을 확인 가능함'으로 반응하였다.

<표Ⅳ-102> '학생에게 학급규칙 안내'에 대한 인식 빈도

인식 정도	N	%
그렇다	745	52.5
그렇지 않다	562	39.6
계	1307	92.2

문10. 학급규칙 개정을 위한 학교규칙개정위원회 역할 안내받은 경험에 대한 인식

교원의 학급규칙 개정을 위한 학교규칙개정위원회 역할 안내받은 경험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Ⅳ-103>와 같다. 선생님은 학급규칙 개정이 학생, 교원, 학부모 대표로 구성된 학교규칙개정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는 내용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82.9%로 나타났다.

<표Ⅳ-103> '학급 규칙 개정을 위한 학교규칙개정위원회 역할 안내받은 경험'에 대한 인식 빈도

인식 정도	N	%
그렇다	1176	82.9
그렇지 않다	242	17.1
계	1418	100.0

문11. '학교규칙 개정 관련 의견 수렴 참여 경험'에 대한 인식

교원의 학교규칙 개정 관련 의견 수렴 참여 경험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Ⅳ-104>와 같다. 학급규칙 제·개정을 위한 학생의견 수렴 방법에 대한 질문에 대한 반응은 학생회, 학급회의를 통한 방법이 각각 30% 이상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홈페이지 등도 5%를 상회하였다.

<표Ⅳ-104> '학급규칙 제·개정을 위한 학생의견 수렴 방법'에 대한 인식 빈도

인식 정도	N	%
그렇다	1051	74.1
그렇지 않다	367	25.9
계	1418	100.0

3. 인권교육의 사후관리

1) 학생

문13. 적절한 인권교육 시간에 대한 인식(중복응답)

학생들의 적절한 인권교육 시간에 대한 인식 반응결과는 <표Ⅳ-105>와 같다. ‘적절한 인권교육 시간’에 대한 질문에 대해, 교과수업시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생활지도 시간(각각 초등학생 : 48.1%, 22.1%, 18.7%, 중학생 : 46.7%, 20.9%, 18.8%, 고등학생 : 35.5%, 25.4%, 23.3%)의 순으로 반응하였다. 기타 행사시간 또한 적절한 것으로 인식하였다(초등학생 : 9.9%, 중학생 : 12.1%, 고등학생 : 15.5%).

<표Ⅳ-105> ‘적절한 인권교육 시간’에 대한 인식 빈도

인식 정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N	%	N	%	N	%	N	%
교과수업시간	581	48.1	510	46.7	712	35.5	1803	41.9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267	22.1	228	20.9	510	25.4	1005	23.3
생활지도 시간	226	18.7	205	18.8	472	23.5	903	21.0
학교 행사시간	120	9.9	132	12.1	270	13.5	522	12.1
기타	15	1.2	17	1.6	41	2.0	73	1.7
계	1209	100.0	1092	100.0	2005	100.0	4306	100.0

문14. 인권교육 방법에 대한 인식(중복응답)

학생들의 인권교육 방법에 대한 인식 반응결과는 <표Ⅳ-106>과 같다. ‘적절한 인권교육 방법’에 대한 질문에 대해 초등학생은 동영상 활용 수업, 체험 및 참여식 수업(학교행사) 외부강사 활용, 체험 및 참여식 수업(학급행사), 토의.토론식 수업(각각 25.9%, 21.5%, 17.1%, 17.1%, 14.2%)의 순으로 반응하였다.

중학생은 동영상 활용수업, 외부강사 활용, 체험 및 참여식 수업(학교행사), 체험 및 참여식 수업(학급행사) 등의 순으로 반응하였다(각각 26.5%, 23.4%, 17.3%)의 순으로 반응하였다. 토의토론식 수업을 제안한 경우는 10.6%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은 동영상 활용수업, 체험 및 참여식 수업(학교행사), 체험 및 참여식 수업(학급행사),외부강사 활용 수업(각각 24.3%, 24.2%, 19.9%, 18%)의 순으로 반응하였다.

토의토론식 수업을 제안한 경우는 13.6%로 나타났다.

<표 IV-106> '인권교육 방법'에 대한 인식 빈도

인식 정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N	%	N	%	N	%	N	%
체험 및 참여식 수업(학교행사)	272	21.5	266	22.3	528	24.2	1066	23.0
체험 및 참여식 수업(학급행사)	216	17.1	206	17.3	434	19.9	856	18.4
토의.토론식 수업	180	14.2	126	10.6	297	13.6	603	13.0
동영상 활용 수업	328	25.9	316	26.5	530	24.3	1174	25.3
외부 강사 활용 수업	269	21.3	279	23.4	393	18.0	941	20.3
계	1265	100.0	1193	100.0	2182	100.0	4640	100.0

2) 교원

문12. 인권관련 선언, 협약, 조례의 친숙도 등에 대한 인식(다중응답)

교원의 인권관련 선언, 협약, 조례의 친숙도 등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IV-107>과 같다. 인권관련 선언, 협약, 조례의 친숙도에 대한 선생님들의 반응은 세계인권선언, 유엔 아동권리협약, 학생인권조례 항목에서 20%를 상회하였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경남)학생생활제규정표준안 등에 대해서는 약 15%로 반응하였다.

<표 IV-107> '인권관련 선언, 협약, 조례의 친숙도'에 대한 인식 빈도

항 목	N	%
세계인권선언	1078	24.4%
유엔 아동권리협약	707	16.0%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79	6.3%
학생인권조례	1329	30.0%
(경남)학생생활제규정표준안	670	15.1%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조성 지침	363	8.2%
계	4426	100.0%

문13.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노력에 대한 인식(다중응답)

교원의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노력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IV-108>과 같다.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노력으로서, 학생 대상 인권교육 및 교원 대상 인권교육, 권위주의 의식, 행사 개선 등이 20%를 상회하였다(각각 29.5%, 24.7%). 학생인권 및 교권보호조례 제정과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학칙으로 개정은 각각 14.7%, 14%로 나타났다.

<표IV-108>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노력'에 대한 인식 빈도

내용	N	%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학칙으로 개정	377	14.0%
권위주의 의식, 행사 개선	665	24.7%
의사결정에 학생, 학부모 참여 증대	361	13.4%
학생 대상 인권교육 및 교원 대상 인권교육	792	29.5%
학생인권 및 교권보호조례 제정	395	14.7%
기타	99	3.7%
계	2689	100.0%

문14. 인권교육 연수에 참여할 의향에 대한 인식

교원의 인권교육 연수에 참여할 의향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IV-109>와 같다. 인권교육 연수에 참여할 의향에 대한 반응에서 64.9%의 선생님이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에 반응하였다. 선생님의 9.5%는 부정적으로 반응하였다.

<표IV-109> '인권교육 연수에 참여할 의향'에 대한 인식

인식 정도	N	%
전혀 그렇지 않다	51	3.6
그렇지 않다	83	5.9
보통이다	363	25.6
그렇다	712	50.2
매우 그렇다	209	14.7
계	1418	100.0

문15.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연수 내용에 대한 인식

교원의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연수 내용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IV-110>과 같다.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연수 내용에 대해, 학생인권 및 교권 관련 침해와 보장에 관한 내용, 학생과의 인간관계형성 및 면학분위기 조성 등에 관한 내용에서 20%를 상회하였다(각각 30.6%, 25.1%).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문제와 그 대안에 관한 내용, 인권교육 수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자료, 기법에 관한 내용은 각각 19.7%, 18.9%로 나타났다.

<표IV-110>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연수 내용'에 대한 인식

내용	N	%
학생인권 및 교권 관련 침해와 보장에 관한 내용	808	30.6%
학생과의 인간관계형성 및 면학분위기 조성 등에 관한 내용	662	25.1%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문제와 그 대안에 관한 내용	519	19.7%
인권교육 수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자료, 기법에 관한 내용	500	18.9%
지역사회와 관계기관의 역할, 그 기관과의 연대방침에 관한 내용	100	3.8%
기타	50	1.9%
계	2639	100.0%

V. 요약 및 제언

1.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경상남도 초·중등학교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남도 초·중·고등학교의 인권교육 실태를 조사하여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학교 인권교육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인권교육의 개념과 학교 인권교육 체계, 선행 연구 및 정책 동향을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경상남도의 초·중·고등학교의 인권교육 실태 조사를 상세화하기 위하여 설문지는 기관용, 교원용, 학생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으며, 기관용은 경상남도 지역교육청(18개)과 초·중·고등학교(956개) 전체에 설문 의뢰하였고, 교원용 및 학생용은 지역, 학생수, 공·사립 등을 고려하여 62개 학교를 선정하여 설문 의뢰하였다. 기관용은 11개 지역교육청과 764개 초·중·고등학교에서 응답하여 응답률은 81.1%이고, 교원용 및 학생용은 50개 학교로부터 설문지를 회수 받음으로써 회수율은 80.6%이었다.

이상과 같은 응답과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상남도의 학교 인권교육의 실태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경상남도의 학교 인권교육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인권교육의 개념과 (학교)인권교육 체계, 선행 연구 및 정책 동향

인권의 의미는 시대를 거치면서 그 내용을 확장해 오고 있으며, 오늘날에는 인권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에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학교)인권교육의 의미는 국제기구에 따라 정의와 강조점을 달리 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요소들을 추출하여 정의해보면, 인권의 지식, 기능, 가치·태도의 발달을 통하여 보편적인 인권 문화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학교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인권교육이 학교라는 공간으로 들어오기 위한 제반 환경이나 과정으로서 인권교육 계획 및 선행 조건 조성과 운영 방식의 결정이 있고, 이런 연후에 학교 교육 일반의 체계에 따라 인권교육은 목표, 내용, 방법, 평가로 구분되어 실천되며, 마지막으로 인권교육 활동에 대한 사후 관리가 뒤따르게 된다.

학교규칙은 본 연구를 진행하는 현재 시점에서 학교 인권교육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맞는다. 경상남도의 경우, 학교 인권교육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모든 학교가 학교규칙의 제·개정 등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학교규칙은 그나마 일정 부분 학교 인권교육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학교규칙과 관련한 실태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학교 인권교육 관련 선행연구에는 별도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 인권 관련 내용에 대한 차별화된 수업 방안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 초·중등교육에서 인권실태를 조사한 연구가 있다. 이들 연구는 본 연구가 경상남도라는 특정 지역의 학교 인권교육 실태를 조사하고, 학교교육의 일반 체계에 따라 인권 교육의 계획, 선행조건, 운영, 실천(목표, 내용, 방법, 평가), 사후 관리 면에서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국내 학교 인권교육 정책은 교육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시·도교육청 등 여러 국가기관에서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정책은 법무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학교 인권교육은 국가인권정책의 기본틀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 학교 인권교육의 주요 동향을 보면, 19대 국회에서 ‘인권교육지원법’ 제정이 추진되었으나 철회되었고, 시·도교육청의 경우, 전체적으로 장애학생 인권교육 및 노동인권교육을 인권교육의 주요 업무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4개 교육청(경기, 광주, 서울, 전북)에서는 독립된 운영기관을 설립하여 학교 인권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13개 교육청의 경우 각 교육청별로 1-2개 부서에서 인권교육을 담당 업무로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 경상남도의 학교 인권교육 현황 실태 조사 및 결과

○ 설문 체계 및 구성

학교 인권교육 현황 및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지 내용의 형식은 안내문, 인적사항, 도입설문, 본설문으로 나누어지며, 본설문은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한 내용으로서 교육 계획, 선행조건, 운영, 실천, 사후 관리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본설문 각각의 설문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인권교육 계획’ 설문 조사 결과

‘인권교육 계획’면에서의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기관의 경우, 인권교육이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39%이며,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인권교육을 운영하는 시수는 4시간 이하가 51.6%이고 10시간 이상 운영하는 경우는 2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의 인권교육 방식은 유인물 읽기 또는 동영상 시청이 53%, 별도 프로그램 또는 인권특강이나 행사가 32.4%로 모두 85.4%이다.

셋째, 학교·기관의 인권교육 계획의 주요 내용은 교과 외 활동 21%, 목표 및 계획 19%, 인권 관련 행사 14%이다. 그러나 학교 인권교육 프로세스에 필요한 요소인 교과와의 연계 8%, 교원 인권연수 8%, 가정·지역사회·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인권교육 선행 조건’ 설문 조사 결과

‘인권교육 선행 조건’면에서의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요약하여 살펴보면, 인권교육을 위한 교원 및 예비교원 연수, 교내외 활동 조직, 프로그램, 지역사회와의 연대에 대한 부족감을 느끼는 평균점수가 3.4 -3.6점 범위에 있으며, 각 항목별 빈도에서 교원 및 예비교원 연수 부족 52.3%, 교내외 활동 조직 부족 52.1%, 프로그램 미흡 62.7%, 지역사회와의 연대 부족 55.7%로 응답하였다. ‘인권교육 선행 조건’면에서 교원 및 예비교원 연수, 교내외 활동 조직, 프로그램, 지역사회와의 연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인권교육의 운영’ 설문 조사 결과

‘인권교육의 운영’면에서의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 개념에 대한 초등학생 69.9%, 중학생 75.5%, 고등학생 76.4%가 ‘알고 있다’, 또는 ‘잘 알고 있다’로 반응하여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생들의 인권정보 획득경로는 초·중·고등학생 모두 학교 교과 수업에서 가장 많이 획득하며, 학교 교과 수업 외의 활동과 합하면 초등학생 54.5%, 중학생 60.3%, 고등학생 45.9%로 학교에서 인권 정보를 획득하는 비중이 큰 편이다. 다만, 초등학생 19.5%, 중학생 21.0%, 고등학생 33.1%가 언론매체를 통하여 획득하므로 인권교육에서 언론매체의 역할이 상당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학생들의 ‘장애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독특성을 가진 학생의 따돌림 대상에 대한 평균 점수’가 각각 3.5, 3.9, 3.7이고, ‘성희롱·성폭력 대상에 대한 평균 점수’가 각각 4.0, 4.1, 4.1이어서(점수가 높을수록 대상이 아니다) 긍정적이다. 한편, 초등학생과 중

학생에 비하여 고등학생은 장애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독특성을 가진 학생에 대한 따돌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각각 28.7%(초등학생 13.2%, 중학생 25.1%), 37.6%(초등학생 14.9%, 중학생 13.9%), 27.7%(초등학생 17.3%, 중학생 17.0%)이고,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각각 25.6%(초등학생 10.2%, 중학생 13.0%), 22.1%(초등학생 7.3%, 중학생 7.4%), 22.3%(초등학생 7.0%, 중학생 8.1%)로 상대적으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인권교육을 학교급별로 달리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교사들의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따돌림 대상으로서의 부정적 인식은 38.8%(긍정적 인식 32.3%)이고, 장애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독특성을 가진 학생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대상으로서의 부정적 인식은 각각 38%, 48%, 41.7%(긍정적 인식 각각 35.2%, 21.9%, 25.6%)로 응답하였다.

다섯째, 학생들이 국제규범을 들어본 경험은 초등학생 57.8%, 중학생 53.4%, 고등학생 54.6%이고, 학생인권조례는 초등학생 21.5%, 중학생 23.7%, 고등학생 23.1%가 들어본 것으로 응답하였다.

여섯째, 학생과 교원 모두 인권교육을 필요성에 대하여 초등학생 83.4%, 중학생 82.7%, 고등학생 87%, 교원 79.8%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학생들의 인권교육 경험은 초등학생 94.8%, 중학생 89%, 고등학생 63.6%이고, 교원들의 인권교육 경험은 50.5%이었다.

일곱째, 학생들이 교과 수업시간에 인권교육을 받는 것은 초등학생 56.7%, 중학생 67.3%, 고등학교 61.7%이고,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받는 것은 초등학생 28.2%, 중학생 21.9%, 고등학생 31.1%이고, 학생들은 인권교육을 받는 교과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도덕과(각각 45.1%, 46.1%), 사회과(각각 28%, 28.2%), 국어과(각각 18.1%, 5.6%) 순이고, 고등학생은 사회과 55.3%, 도덕과 21.5%, 국어과 7.8% 순이며, 학생들이 교과 외 시간에 인권교육을 받는 경우는 방송 계기교육, 외부강사 초청 강연, 학교 행사를 통하여서 이다.

여덟째, 전체 교원 중, 직무연수를 통하여 인권교육을 받는 교원은 37.3%이고, 전체 교원의 23.8%가 자기 계발을 위해 받고, 12.6%는 학교의 권유에 의하여 받는다.

아홉째, 교원들 대부분은 학교 규칙을 학교로부터 안내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학교규칙에 근거하여 학생생활을 교육하고 있었다. 그러나 학교규칙을 학생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경우는 52.5%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로부터 학급규칙 개정을 위해 학교규칙개정위원회의 역할을 안내받은 경험은 가진 교원은 82.9%로 긍정적이었으며, 학급규칙 제·개정을 위해 의견수렴 참여 경험을 가진 교사는 74.1%에 달하였다.

○ ‘인권교육의 실천’ 설문 조사 결과

‘인권교육의 실천’면에서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인식하는 인권교육의 목적은 인권의 뜻·인권에 대한 지식알기, 인권침해 문제 해결하기, 인권을 위한 행동하기, 인권을 존중하는 마음과 태도 갖기 각각 4.0 이상의 긍정적인 점수를 받았다.

둘째,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인식하는 인권교육의 내용은 인권의 뜻, 참여와 활동으로 인권실행하기, 세부적인 인권문제, 인권관련 기준·제도·협약 각각 4.0 이상의 긍정적인 점수를 받았다.

셋째,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인식하는 인권교육의 방법은 주로 선생님의 설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초등학생 67.9%, 중학생 68.3%, 고등학생 50.7%).

넷째,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인식하는 인권교육에 대한 평가는 ‘인권교육에 대한 지식 습득, 인권침해에 대한 정보 획득, 인권에 적절한 행동 정보 획득, 친구들이 서로 다름을 알게 됨’ 등 인권 관련 지식과 정보에 대한 인식은 4.0점 이상으로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인권침해 피해자에게 도움 제공 태도 증가, 인권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짐’에 대한 인식 점수는 각각 3.9, 3.6으로 상대적으로 부정적이었다.

다섯째, 학생들은 대부분 학교 규칙 개정을 안내받은 경험이 있었고(초등학생 91.5%, 중학생 91.7%, 고등학생 77.4%), 학교 규칙에 따른 학교생활을 하도록 하는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편이었다(초등학생 71.6%, 중학생 78%, 고등학생 73.5%).

여섯째, 학생들은 학급에서 학급규칙 확인 가능한지에 대해 초등학생 63%, 중학생 74.5%, 고등학생 59.5%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일곱째, 초등학생들은 학급규칙 제정주체에 대한 인식이 학생 34%, 교사 33.2%, 학교 22.6% 순으로 나타났으며, 중등학생들은 학교규칙 개정을 위해 학교규칙제개정위원회의 역할을 안내받은 경험이 중학생은 65.7%, 고등학생은 44.8%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초등학생 59%는 학급규칙 제정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 중등학생들은 학교규칙 제·개정을 위한 학생의견수렴 방법으로 학생회, 학급회의를 통한 방법이 각각 32%, 32.7%로 나타났으며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없는 경우도 10.6%나 되었다. 학생들이 학교규칙 제정과정 참여와 의견수렴 방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홉째, 학생들은 선생님의 학급운영, 수업 및 생활교육에 대한 인식 점수가 ‘학생의 인권존중, 학급이나 학생 참여 촉구, 학급규칙 학생 스스로 정함, 학생들과 열린 마음으로 대화, 체벌사용 없음, 학생의 개인정보 존중’에서 초등학생의 경우 5개 항목이 4.0점 이상, 1개 항목이 3.9점이고, 중학생의 경우 6개 항목 모두 4.0점 이상이며, 고등학생의 경우 5개 항목이 3.5점 이, 1개 항목이 3.4점이었다. 전체가 긍정적인 편으로 점수를 받았으나, 초·중·고등학생 모두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항목이 ‘학급규칙을 학생 스스로 정함’이었다.

○ ‘인권교육의 사후 관리’ 설문 조사 결과

‘인권교육의 사후 관리’면에서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은 적절한 인권교육 시간에 대하여 교과수업시간(초등학생 48.1%, 중학생 46.7%, 고등학생 35.5%),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초등학생 22.1%, 중학생 20.9%, 고등학생 35.5%), 생활지도 시간(초등학생 18.7%, 중학생 18.8%, 고등학생 23.5%) 순으로 응답하였다.

둘째, 학생들은 인권교육의 방법에 대해서 초등은 외부강사 활용, 학교행사로써 체험 및 참여식 수업, 학급행사로써 체험 및 참여식 수업, 토의·토론식 수업 순으로 선호하고 있으며, 중·고등학생의 경우 동영상 활용수업, 외부강사 활용 수업, 학교행사로써 체험 및 참여식 수업, 학급 행사로서 체험 및 참여식 수업 순으로 선호하고 있다.

셋째, 교원들은 학교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 다양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사양성 과정에서 인권교육 강화, 지역사회 및 관계기관과의 연대 강화,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 강화, 학교교육과정에 인권교육 시간 확보 필요성 평균점수가 3.4-4.0의 범위에 있어 이들 모두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넷째, 교원들은 인권관련 선언, 협약, 조례의 친숙도에 대하여 세계인권선언, 유엔 아동권리협약, 학생인권조례 항목에서는 20%를 넘는 응답을 하였으나, 유엔 아동권리협약, 경남학생생활제규정표준안 등에 대하여는 응답률이 낮은 편이었다.

다섯째, 교원들은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권위주의적인 의식과 행사의 개선에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 다음으로, 학교인권조례의 제정하고,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학칙으로 개정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결정에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으로 지적하였다.

여섯째, 교원들의 64.9%가 인권교육 연수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며, 인권교육 연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9.5% 밖에 되지 않았다.

일곱째, 교원들은 인권교육 연수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으로 학생인권과 교권 침해에 보장, 학생과의 인간관계 및 면학분위기 조성, 우리 사회의 인권문제와 대안, 인권교육 자료와 수업기법 순으로 들고 있었다.

2. 제언 : 경상남도 학교 인권교육을 위한 개선방안

이상과 같은 경상남도의 학교 인권교육 실태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의 학교 인권교육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학교 인권교육에 대한 학생과 교원의 사전 요구 조사 필요

실태 조사에 따르면, 학교 인권교육과 학생 및 교사의 요구 사이에는 괴리가 발견된다. 학생이 인식하는 인권교육의 필요성은 초등학생 83.4%, 중학생 82.7%, 고등학생 87%, 교원 79.8%로 긍정적인데 비하여, 학생들이 학교로부터 인권정보를 획득하는 것은 초등학생 54.5%, 중학생 60.3%, 고등학생 45.9%밖에 안 되고, 교원의 인권교육 경험은 50.5%이다. 기관 및 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인권교육을 포함한 경우가 39%이나 학생들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인권교육을 받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초등학생 28.2%, 중학생 21.9%, 고등학생 31.1%으로 인권교육을 계획하고 있는 기관 및 학교 비율인 39%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교원들의 64.9%가 인권교육 연수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나 실제 직무연수를 받은 교원은 37.3%이다. 교원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인권 직무연수를 확대해야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교원의 인권교육에 대한 요구 사항을 사전에 조사하여 학교 현장에 필요로 하는 인권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어떠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이를 인권교육의 계획과 실천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인권교육 운영 시수 확보 및 학교급별 인권교육 프로그램 마련

인권교육 계획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교과와의 연계, 교원 인권연수, 가정·지역사회·관계기관과의 협조 등 학교 인권교육을 위한 프로세스들이 부족하거나 미비되어 있다. 이러한 선행 조건의 미비는 학교 현장이 인권교육을 실천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 환경으로서 단위 학교가 인권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수를 확보해 주어야 한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함께 여는 인권교실'등 학생인권교육 교재를 여러 차례 발간하였으나 학교 현장에 일반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학교가 인권교육을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즉 운영 시수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체 학교 중 39%만이 그 중에서도 51.6%가 4시간 이하로 인권교육을 주제로 하고 있는 자율적인 상황에서는 인권교육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학교 인권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초기에는 접근하기 쉬우면서 기초적인 방법들을 안내해주고, 점차 심화된 내용과 자료 및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물론 각각의 프로그램은 교과와의 연계에서부터 가정·지역사회·관계기관과의 협조에 이르기까지 학교 인권교육을 위한 선행 조건을 구비한 프로그램이어야 하며, 학교급의 요구에 맞는 적용 가능하고 검증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학교급별로 인식의 차이는 본 실태 조사의 여러 부

문에서 나타난다. 장애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독특성을 가진 학생에 대한 따돌림 및 성희롱·성폭력 대상으로서 학생들의 인식의 정도는 학교급별로 차이가 나고, 학생들은 인권교육의 방법에서도 학교급별로 선호도 차이가 발견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장 적합성이 높고 학교급에 따른 학생들의 눈높이를 고려한 학교 인권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일이 필요하다.

○ 교원과 학생의 실제 삶과 학교생활에 관련된 인권교육 우수 사례 발굴·보급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학교 인권교육에 대한 평가는 ‘인권교육에 대한 지식 습득, 인권침해에 대한 정보 획득, 인권에 적절한 행동 정보 획득, 친구들이 서로 다름을 알게 됨’등과 같은 인권 관련 지식과 정보에 대한 인식 점수는 4.0점 이상(5점 만점)이다. 그러나 ‘인권침해 피해자에게 도움 제공 태도 증가, 인권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짐’에 대한 인식 점수는 각각 3.9점, 3.6점으로 상대적으로 부정적이었다. 학생들이 지식이나 정보의 습득에 편중하는 것은 학교 인권교육의 지향과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교원들은 인권교육 연수에 필요한 내용으로 ‘인권침해 보장’이나 ‘학생과의 인간관계 조성’과 같이 학교생활에서 부딪히는 현실적인 내용을 선호하고 있으므로, 삶의 경험의 일부로서 학교생활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인권 관련 내용 사례를 발굴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현행 법령에 규정된 실천 가능한 학교 인권교육(학교규칙교육, 장애학생 인권교육, 노동 인권교육) 실시 권고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교원의 94.9%가 학교로부터 학교규칙 개정에 대한 안내를 받고, 70% 이상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교규칙에 따른 학생생활지도를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학생에게 학교규칙을 확인 가능하도록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39.6%나 되며, 중등학교의 경우 학교규칙제개정위원회 역할 안내를 받지 못한 학생들이 47.6%나 된다. 학교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학교규칙 교육이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학교규칙 교육과 마찬가지로 장애학생 인권교육, 노동 인권교육 모두 법령에 명시되어 있고 학교 현장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에 밀착된 참여형 주제들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명백하게 법령으로 규정된 인권교육, 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한 학교규칙 교육, 장애인 복지법에 근거한 장애학생 인권교육,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한 노동 인권교육부터 학교 현장에서 반드시 실천하도록 권고한다.

○ 인권교육 기본 방법인 ‘참여적 접근법’을 각종 교원연수의 주제로 개설

인권교육의 목적이나 내용이 아무리 바람직하더라도 인권교육의 방법이 잘못되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실태 조사에 따르면, 학교 교육계획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등에서 이루어지는 인권교육 방식의 대부분은 유인물 읽기, 동영상 시청, 인권특강이나 행사 등 학생들에게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인식하는 인권교육 방법은 ‘선생님의 설명’이 60.1%이고, 학생들의 참여와 활동은 6.1%밖에 되지 않는다. 인권에 대한 개인의 지식과 경험의 공유를 장려하고 중시하며, 상호 존중 및 상호 학습 원칙에 기반을 두는 ‘참여적 접근법’이 결여 되어 있는 것이다. 학교 인권교육 실천의 기본인 ‘참여적 접근법’에 대한 이해와 현장 적용이 요청된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교원연수에서 ‘참여적 접근법’을 연수 주제로 도입하여야 하고, 여기에는 교원들이 참여적 접근법을 실제 현장에서 실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상세화된 수업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가칭 ‘인권교육지원센터’와 같은 독립된 학교 인권교육 추진 기관 설립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교사들은 인권교육을 위한 선행 조건인 교원 및 예비교원 연수, 교내외 활동 조직, 프로그램, 지역사회와의 연대 모두 부족하거나 미흡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교원 연수, 교내외 활동의 조직, 지역사회 연대 등은 경상남도 교육청의 1-2개의 담당부서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고, 이들 선행 조건들은 미리 준비해야 할 물적·인적 환경들로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될 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안들이다. 따라서,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칭 ‘인권교육지원센터’와 같은 별도의 전담 추진 기관의 설립이 요청된다. 물론, 이를 위해 법령의 근거와 예산의 소요가 뒤따라야 하는 일이지만, 학교 현장에서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고(초등학생 83.4%, 중학생 82.7%, 고등학생 87%, 교원 79.8%), 학교 교육내용 중 가장 기초적인 3R의 읽기(Reading), 쓰기(wRiting), 셈하기(aRithmetic)에 권리(Rights)를 더하여 4R이라고 할 정도로 인권교육이 인간으로서의 삶을 위한 기본적인 학습내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독립된 학교 인권교육 추진기관의 설립은 충분한 근거를 가진다고 본다.

<참고문헌>

- 강경옥(2012).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반편견 및 장애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은지 역(2015). 인권교육가를 위한 인권교육 활동평가 길라잡이. 국가인권위원회.
- 경상남도교육청(2018).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학생인권 실태조사 연구.
- 교육과학기술부(2008).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2009). 사회과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2012). 사회과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부(2017). 사회 4-2. ㈜지학사.
- 교육부(2017). 사회 6-2. ㈜지학사.
- 구정화 외(2009). 교사를 위한 학교 인권교육의 이해.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2006). 유럽·미국의 인권교육 실천과 한국 인권교육의 방향. 인권교육 국제 워크숍 자료집.
- 구정우·김선웅·김두년·유성상·정병은·신인철(2016). 2016년 국민인권의식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권영성(1988). 헌법학원론. 법문사.
- 김덕진(2009). 의사소통기술향상구조 학습활동이 초등학생의 인권감수성에 미치는 영향:4학년을 중심으로.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보위(2016). 인권교육프로그램이 지적장애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기술에 미치는 효과. 창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필(2012). 고등학생의 인권감수성 연구:서귀포시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로(2008). 중학교 인권교육의 효과에 대한 사례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신·박가나(2013). 영화읽기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중학생의 인권감수성 향상. 사회과교육연구, Vol.20 No.2, 29-44.
- 김윤정·조경진(2017). 인권교육에 따른 온라인 대학 성인학습자의 인권감수성 변화에 대한 연구. 교육종합연구, Vol.15 No.1, 27-53
- 김윤정(2013). '나의 도덕이야기 쓰기'를 활용한 도덕수업이 통합학급 아동의 인권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진(2017). 의사결정학습 단계를 활용한 장애인권교육프로그램이 일반학생의 장애인식 및 수용태도에 미치는 효과.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련(2016). 인권교육프로그램이 노인요양시설종사자의 인권감수성과 공감능력에 미치는 효과. 꽃동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용린 외(2002). **인권감수성 지표개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박용조(2013).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사회과 교과서 편찬 방향. 한국사회과 수업학회 학술대회지 통권2호, 1-13.
- 박은경·장석진(2017). 초등학교 고학년의 공감능력, 인권감수성이 집단따돌림 방관태도에 미치는 영향. 법과인권교육연구, Vol.10 No.2, 209-230.
- 박은영(2013). 사회과 인권 딜레마 토론 수업이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효과.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현지(2017). 초등사회교과서의 일본군 '위안부'관련 서술내용 분석:인권감수성을 중심으로.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형원(2013). 사회복지과목 이수 대학생의 인권감수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원격대학 성인학습자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3 No.8, 191-200.
- 서기남(2003). 도덕과 교육에서 인권교육의 방안 및 효과-중학교 2학년 도덕과 수업을 통한 현장적용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은아(2014). 반편견 주제의 동화읽어주기 활동이 통합학급 학생의 다문화 인식 및 인권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봉선(2016). 반편견 주제의 그림동화 읽어주기 활동이 비장애학생의 인권감수성 및 장애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옥임(2006). 초등학교에서의 장애아동과의 통합교육이 일반아동의 인권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경환 외(2011).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기본용어. 국가인권위원회.
- 염하나(2009). 동화자료를 활용한 사회과 인권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경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원미순·박미현(2015). 학교환경이 인권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 고등학생 비교. 청소년복지연구, Vol.17 No.1, 239-260.
-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2006). 학교 인권교육 길라잡이 - 유엔의 초·중등학교 인구너학습 활동안내서. 국가인권위원회.
- 이미선(2015). 공익광고를 활용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다문화 인식에 미치는 효과 : 인권교육을 중심으로.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민영(2016).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경도 지적장애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전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애(2009). 가출청소년을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성. 성공회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희(2007). 중학생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성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주은(2012). 인권감수성 함양을 위한 사회 교과서 탐구활동의 재구성. 한국교원대학

- 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효인(2013). 학교스트레스가 학교폭력허용도에 미치는 영향: 인권감수성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지원·이양희(2015). 비장애초등학생의 정서지능과 인권감수성이 장애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장애아동인권연구, Vol.6 No.1, 1-26.
- 정소영(2009). 반편견 교육을 강화한 교과수업이 통합학급 아동의 인권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순례(2015). 아동의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성 연구. 호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지석(2012). 초등학생의 인권감수성과 학교생활만족도의 관계. 경인교육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해숙(2011). 초·중·고등학교 인권교육 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조윤정(2006). 고등학생의 인권감수성과 실제 인권 옹호 경향과의 상관성 조사연구: 경기지역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은미(2012). 르포만화의 감상과 비평지도 연구:고등학생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인숙(2005). 초등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분석. 한경대학교 전자정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효경(2013). 인권감수성 훈련이 정신간호사의 인권의식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용성(2014).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대안적 개발·적용·검증에 관한 연구. 윤리교육연구, Vol.35, 175-233.
- 홍선영(2009).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의 성인학습자 적용 효과연구. 동아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 심의대응 한국 NGO모임(2018). 2018. 3.16 보도자료
- Amnesty International(2015). Human Rights Education Questions and Answers. *Human Rights Education Amnesty International*, March.
- Council of Europe(2002). *Compass Manual for human rights education with young people*.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 Council of Europe(2012). *Compass Manual for human rights education with young people*.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 Inter-Parliamentary Union & United Nations(2016). *Human Rights. Handbook for Parliamentarians N°26*. Retrieved from <http://www.ohchr.org/Documents/Publications>

- /HandbookParliamentarians.pdf [accessed 27 December 2017]
- NCSS(2014a). Executive Summary of NCSS Position Statement: Human Rights Education – A Necessity for Effective Social and Civic Learning. Retrieved from <http://www.theworldasitcouldbe.org/wp-content/uploads/2015/02/Executive-Summary-of-NCSS-Position-Statement-on-Human-Rights-Education.pdf> [accessed 27 December 2017]
- NCSS(2014b). Human Rights Education: A Necessity for Effective Social and Civic Learning. National Council for the Social Studies. Retrieved from https://www.socialstudies.org/positions/human_rights_education_2014 [accessed 27 December 2017]
- Reardon, Betty A.(1995). *Educating for Human Dignity - Learning about rights and responsibilities*,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2012). *Human Rights Education in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Systems: A Self-assessment Guide for Governments*. New York and Geneva.
- The Advocates for Human Rights(2009). *Rights Sites News*, Fall 2009. Retrieved from <http://www.theadvocatesforhumanrights.org/mission> [accessed 27 December 2017]

2018년 학교 인권교육 실태 조사(학교 . 기관용)

※ 학교 및 기관의 인권교육 담당자가 답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경상남도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추진하는 <학교 인권교육 활성화
를 위한 기초연구>의 일환으로 학교에서 실천하고 있는 인권교육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진주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으로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여러분의 응답내용은 통계법(제33조, 제34조)에 의해 그 비밀이 철저히 보
장되며, 정책연구 이외의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답이 있
는 것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생각을 솔직하게 선택하여 답변해 주시고, 되도록
한 질문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생각을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	<input type="checkbox"/> 1) 창원시 <input type="checkbox"/> 2) 김해시 <input type="checkbox"/> 3) 진주시 <input type="checkbox"/> 4) 양산시 <input type="checkbox"/> 5) 밀양시 <input type="checkbox"/> 6) 거제시 <input type="checkbox"/> 7) 통영시 <input type="checkbox"/> 8) 사천시 <input type="checkbox"/> 9) 거창군 <input type="checkbox"/> 10) 함양군 <input type="checkbox"/> 11) 산청군 <input type="checkbox"/> 12) 함천군 <input type="checkbox"/> 13) 하동군 <input type="checkbox"/> 14) 남해군 <input type="checkbox"/> 15) 의령군 <input type="checkbox"/> 16) 창녕군 <input type="checkbox"/> 17) 함안군 <input type="checkbox"/> 18) 고성군
학교 및 기관	<input type="checkbox"/> 1) 초등학교 <input type="checkbox"/> 2) 중학교 <input type="checkbox"/> 3) 일반고 <input type="checkbox"/> 4) 특성화고 <input type="checkbox"/> 5) 특수학교(초, 중, 고) <input type="checkbox"/> 6) 교육지원청
설립유형	<input type="checkbox"/> 1) 국 . 공립 <input type="checkbox"/> 2) 사립
공학여부	<input type="checkbox"/> 1) 남녀공학 <input type="checkbox"/> 2) 남학교 <input type="checkbox"/> 3) 여학교 <input type="checkbox"/> 4) 해당 없음
학교유형	<input type="checkbox"/> 1) 행복학교 <input type="checkbox"/> 2) 행복(맞이)학교 <input type="checkbox"/> 3) 다문화교육 중점학교 <input type="checkbox"/> 4) 특수학급 설치학교 <input type="checkbox"/> 5) 해당 없음
직위	<input type="checkbox"/> 1) 교사 <input type="checkbox"/> 2) 교감 <input type="checkbox"/> 3) 교장 <input type="checkbox"/> 4) 장학사(연구사) <input type="checkbox"/> 5) 장학관(연구관)
성별	<input type="checkbox"/> 1) 남자 <input type="checkbox"/> 2) 여자

연령	<input type="checkbox"/> 1) 29세 이하 <input type="checkbox"/> 2) 30~39세 <input type="checkbox"/> 3) 40~49세 <input type="checkbox"/> 4) 50~59세 <input type="checkbox"/> 5) 60세 이상
교육경력	<input type="checkbox"/> 1) 5년 이하 <input type="checkbox"/> 2) 6~10년 <input type="checkbox"/> 3) 11~15년 <input type="checkbox"/> 4) 16~20년 <input type="checkbox"/> 5) 21년 이상
담당교과	<input type="checkbox"/> 1) 초등 담임 <input type="checkbox"/> 2) 초등 전담 <input type="checkbox"/> 3) 초등 특수학급 <input type="checkbox"/> 4) 중등 특수학급 <input type="checkbox"/> 5) 국어과 <input type="checkbox"/> 6) 사회과 <input type="checkbox"/> 7) 수학과 <input type="checkbox"/> 8) 과학과 <input type="checkbox"/> 9) 실과과(기술가정) <input type="checkbox"/> 10) 도덕과 <input type="checkbox"/> 11) 음악과 <input type="checkbox"/> 12) 미술과 <input type="checkbox"/> 13) 체육과 <input type="checkbox"/> 14) 외국어과(영어 등) <input type="checkbox"/> 15) 영양과 <input type="checkbox"/> 16) 인권과목 <input type="checkbox"/> 17) 보건과 <input type="checkbox"/> 18) 해당 없음 <input type="checkbox"/> 19) 기타()

※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보기 번호 앞 에 √를 해 주십시오.

인권 :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권리입니다. 인권의 종류는 매우 많으며, 그 중에는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고 자유로우며, 생명과 자유를 지키는 것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의 내용과 형태는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면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학교 인권교육 : 모든 사람들이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여러 교과 시간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인권 학습을 말합니다.

문1.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을 이용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귀 기관에는 인권교육이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한 학습 주제 중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습니까?

- 1) 인권교육은 창의적 체험활동 학습 주제 중의 하나이다
(☞문1-1로 가시오)
- 2) 인권교육은 창의적 체험활동 학습 주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문2로 가시오)

문1-1. 인권교육을 위해 배정된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는 얼마나 됩니까?

연간 _____ 시간

문1-2. 창의적 체험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인권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1) 인권교육 인정도서를 사용한다
- 2) 별도의 프로그램 또는 인권 관련 특강이나 행사를 한다
- 3) 유인물 읽어보기 또는 동영상 시청하는 방법으로 한다
- 4) 기타(_____)

문2. 귀 기관에서는 인권교육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까?

- 1) 그렇다 (☞문3으로 가시오)
- 2) 그렇지 않다 (설문이 끝났습니다)

문3. 인권교육 계획에는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1) 인권교육에 대한 목표 및 계획
- 2) 인권교육에 대한 각 교과별 목표 및 계획
- 3) 학급운영, 학생지도, 진로지도, 교육상담 등 인권교육에 관한 교과 외 활동
- 4) 가정·지역사회·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 5) 인권주간 등 인권 관련 행사
- 6) 교직원 인권교육연수에 대한 목표 및 계획
- 7) 기타 (_____)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8년 학교 인권교육 실태 조사(교원용)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경상남도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추진하는 <학교 인권교육 활성화
를 위한 기초연구>의 일환으로 학교에서 실천하고 있는 인권교육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진주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으로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여러분의 응답내용은 통계법(제33조, 제34조)에 의해 그 비밀이 철저히 보
장되며, 정책연구 이외의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답이 있
는 것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생각을 솔직하게 선택하여 답변해 주시고, 되도록
한 질문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생각을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	<input type="checkbox"/> 1) 창원시 <input type="checkbox"/> 2) 김해시 <input type="checkbox"/> 3) 진주시 <input type="checkbox"/> 4) 양산시 <input type="checkbox"/> 5) 밀양시 <input type="checkbox"/> 6) 거제시 <input type="checkbox"/> 7) 통영시 <input type="checkbox"/> 8) 사천시 <input type="checkbox"/> 9) 거창군 <input type="checkbox"/> 10) 함양군 <input type="checkbox"/> 11) 산청군 <input type="checkbox"/> 12) 함천군 <input type="checkbox"/> 13) 하동군 <input type="checkbox"/> 14) 남해군 <input type="checkbox"/> 15) 의령군 <input type="checkbox"/> 16) 창녕군 <input type="checkbox"/> 17) 함안군 <input type="checkbox"/> 18) 고성군
학교급	<input type="checkbox"/> 1) 초등학교 <input type="checkbox"/> 2) 중학교 <input type="checkbox"/> 3) 일반고 <input type="checkbox"/> 4) 특성화고 <input type="checkbox"/> 5) 특수학교(초, 중, 고)
설립유형	<input type="checkbox"/> 1) 국 . 공립 <input type="checkbox"/> 2) 사립
공학여부	<input type="checkbox"/> 1) 남녀공학 <input type="checkbox"/> 2) 남학교 <input type="checkbox"/> 3) 여학교
학교유형	<input type="checkbox"/> 1) 행복학교 <input type="checkbox"/> 2) 행복(맞이)학교 <input type="checkbox"/> 3) 다문화교육 중점학교 <input type="checkbox"/> 4) 특수학급 설치학교 <input type="checkbox"/> 5) 해당 없음
직위	<input type="checkbox"/> 1) 교사 <input type="checkbox"/> 2) 교감 <input type="checkbox"/> 3) 교장 <input type="checkbox"/> 4) 장학사(연구사) <input type="checkbox"/> 5) 장학관(연구관)
성별	<input type="checkbox"/> 1) 남자 <input type="checkbox"/> 2) 여자
연령	<input type="checkbox"/> 1) 29세 이하 <input type="checkbox"/> 2) 30~39세 <input type="checkbox"/> 3) 40~49세 <input type="checkbox"/> 4) 50~59세 <input type="checkbox"/> 5) 60세 이상

교육경력	<input type="checkbox"/> 1) 5년 이하 <input type="checkbox"/> 2) 6~10년 <input type="checkbox"/> 3) 11~15년 <input type="checkbox"/> 4) 16~20년 <input type="checkbox"/> 5) 21년 이상
담당교과	<input type="checkbox"/> 1) 초등 담임 <input type="checkbox"/> 2) 초등 전담 <input type="checkbox"/> 3) 초등 특수학급 <input type="checkbox"/> 4) 중등 특수학급 <input type="checkbox"/> 5) 국어과 <input type="checkbox"/> 6) 사회과 <input type="checkbox"/> 7) 수학과 <input type="checkbox"/> 8) 과학과 <input type="checkbox"/> 9) 실과과(기술가정) <input type="checkbox"/> 10) 도덕과 <input type="checkbox"/> 11) 음악과 <input type="checkbox"/> 12) 미술과 <input type="checkbox"/> 13) 체육과 <input type="checkbox"/> 14) 외국어과(영어 등) <input type="checkbox"/> 15) 영양과 <input type="checkbox"/> 16) 인권과목 <input type="checkbox"/> 17) 보건과 <input type="checkbox"/> 18) 기타()

※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보기 번호 앞 에 √ 해 주십시오.

인권 :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권리입니다. 인권의 종류는 매우 많으며, 그 중에는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고 자유로우며, 생명과 자유를 지키는 것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의 내용과 형태는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면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학교 인권교육 : 모든 사람들이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여러 교과 시간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인권 학습을 말합니다.

문1. 선생님께서는 교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1) 매우 필요하다 2) 필요하다 3) 보통이다
 4) 필요하지 않다 5) 전혀 필요하지 않다

문2. 선생님께서는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1) 있다(☞문3으로 가시오.) 2) 없다(☞문4로 가시오.)

문3. 인권교육을 주로 어느 시간에 받았습니까?

- 1) 자격연수 2) 직무연수(원격연수 포함) 3) 기타()

문3-1. 선생님께서는 인권교육 직무연수 교육을 받으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 1) 자기 계발을 위해 2) 학교 권유
 3) 직무연수 의무 시간을 채우기 위해 4) 기타()

문3-2. 인권교육은 주로 어떤 목적을 가진 것이었습니까?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 1) 인권 개념, 인권 관련 사건, 법과 제도 등 지식의 이해
 2)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 함양
 3) 인권 문제에 대한 현실 참여의식 고취
 4) 인권 친화적 태도의 형성과 가치의 습득
 5) 기타

문3-3. 인권교육은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1) 인권의 개념, 제도, 지식
 2) 참여와 활동을 통한 인권 가치의 실행
 3) 세부적인 인권문제(차별, 편견, 무관심, 대량학살 등)
 4) 인권 관련 기준(학급규칙, 규범, 인권선언 등), 제도, 협약의 내용
 5) 기타()

문3-4. 인권교육 연수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 졌습니까?

- 1) 강의식 2) 참여 활동식 3) 혼합형 4) 기타()

문3-5. 인권교육 연수를 받고 만족하였습니까?

-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렇지 않다 5) 전혀 그렇지 않다

문3-6. 인권 관련 교육이나 연수가 도움이 되었습니까?

내 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았다
1) 학교 인권교육의 필요성 인식					
2) 인권 관련 지식과 정보의 습득					
3) 인권교육을 통한 학생 생활교육과 교수기법의 학습					
4) 인권감수성 고양					
5)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					
6) 인권 관련 단체 참여					

문4. 학생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내 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았다
1) 인권교육 관련 교원 및 예비교사 연수 부족					
2) 인권교육에 필요한 학교 내외의 활동 조직 부족					
3) 인권교육 프로그램(자료, 정보 등) 미흡					
4) 지역사회 및 관련 기관과의 연대 부족					

문5. 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내 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았다
1) 학교교육과정에 인권교육시간 확보					
2) 다양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3) 교사양성과정에서 인권교육 강화					
4)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 강화					
5)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					
6) 지역사회 및 관계 기관과의 연대 강화					

문6. 다음 내용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았다
1) 장애학생들은 또래로부터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2) 장애학생들은 성희롱이나 성폭력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3)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또래로부터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4)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성희롱이나 성폭력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5) 독특한 행동이나 취향을 가진 학생들은 또래로부터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6) 독특한 행동이나 취향을 가진 학생들은 성희롱이나 성폭력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문7. 선생님께서는 현재 학교의 학교규칙(학교생활규정 포함)에 대해 안내 받은 적이 있습니까?

- 1) 있다 2) 없다

문8. 선생님께서는 학교규칙(학교생활규정 포함)에 근거하여 학생생활을 교육하고 있습니까?

- 1) 그렇다(☞문9로 가시오)
 2) 그렇지 않다(☞문10으로 가시오)

문9. 선생님께서는 학교규칙(학교생활규정 포함)을 학생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안내(학급비치 등)하고 있습니까?

- 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문10. 학교규칙 개정은 학생, 교원, 학부모 대표로 구성된 '학교규칙제개정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안내받은 적이 있습니까?

- 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문15.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연수에 어떤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개만** 선택해 주십시오.

- 1) 학생인권 및 교권 관련 침해와 보장에 관한 내용
- 2) 학생과의 인간관계 형성 및 면학분위기 조성 등에 관한 내용
- 3)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문제와 그 대안에 관한 내용
- 4) 인권교육 수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자료, 기법에 관한 내용
- 5) 지역사회와 관계기관의 역할, 그 기관과의 연대방침에 관한 내용
- 6) 기타 ()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8년 학교 인권교육 실태 조사(초등용)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경상남도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추진하는 <학교 인권교육 활성화
를 위한 기초연구>의 일환으로 학교에서 실천하고 있는 인권교육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진주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으로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여러분의 응답내용은 통계법(제33조, 제34조)에 의해 그 비밀이 철저히 보
장되며, 정책연구 이외의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답이 있
는 것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생각을 솔직하게 선택하여 답변해 주시고, 되도록
한 질문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생각을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급	<input type="checkbox"/> 1) 초등학교 <input type="checkbox"/> 2) 중학교 <input type="checkbox"/> 3) 일반고 <input type="checkbox"/> 4) 특성화고 <input type="checkbox"/> 5) 특수학교(초, 중, 고)
설립유형	<input type="checkbox"/> 1) 국 . 공립 <input type="checkbox"/> 2) 사립
공학 여부	<input type="checkbox"/> 1) 남녀공학 <input type="checkbox"/> 2) 남학교 <input type="checkbox"/> 3) 여학교
학년	<input type="checkbox"/> 1) 1학년 <input type="checkbox"/> 2) 2학년 <input type="checkbox"/> 3) 3학년 <input type="checkbox"/> 4) 5학년 <input type="checkbox"/> 5) 6학년
성별	<input type="checkbox"/> 1) 남자 <input type="checkbox"/> 2) 여자
지역	<input type="checkbox"/> 1) 창원시 <input type="checkbox"/> 2) 김해시 <input type="checkbox"/> 3) 진주시 <input type="checkbox"/> 4) 양산시 <input type="checkbox"/> 5) 밀양시 <input type="checkbox"/> 6) 거제시 <input type="checkbox"/> 7) 통영시 <input type="checkbox"/> 8) 사천시 <input type="checkbox"/> 9) 거창군 <input type="checkbox"/> 10) 함양군 <input type="checkbox"/> 11) 산청군 <input type="checkbox"/> 12) 합천군 <input type="checkbox"/> 13) 하동군 <input type="checkbox"/> 14) 남해군 <input type="checkbox"/> 15) 의령군 <input type="checkbox"/> 16) 창녕군 <input type="checkbox"/> 17) 함안군 <input type="checkbox"/> 18) 고성군

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았다
1) 장애학생들은 또래로부터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2) 장애학생들은 성희롱이나 성폭력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3)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또래로부터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4)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성희롱이나 성폭력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5) 독특한 행동이나 취향을 가진 학생들은 또래로부터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6) 독특한 행동이나 취향을 가진 학생들은 성희롱이나 성폭력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문4. 다음 중 여러분이 들어본 적이 있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1) 세계인권선언 2) 유엔 아동권리협약 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4) 학생인권조례 5) (경남)학생생활제규정표준안
 6)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 지침

문5. 여러분은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1) 매우 필요하다 2) 필요하다 3) 보통이다
 4) 필요하지 않다 5) 전혀 필요하지 않다

문6. 현재 다니는 학교에서 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1) 예 (☞ 문6-1로 가시오)
- 2) 아니오 (☞ 문7로 가시오)

문6-1.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면, 다음 중 어느 시간에 많이 받았습니까? 기억나는 대로 두 개만 선택해 주십시오.

- 1) 교과 수업 시간 2)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 3) 조회나 종례 시간 4) 상담 시간 5) 기타 (_____)

문6-2. 교과 수업 시간에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면, 무슨 교과(목)에서 받았습니까? 기억나는 대로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1) 국어과 2) 사회과 3) 도덕과 4) 수학과
- 5) 과학과 6) 실과과 7) 체육과 8) 음악과
- 9) 미술과 10) 영어과

문6-3. 교과 수업 시간 이외의 시간에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면 주로 어떤 활동이었습니까?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 1) 학교 행사 2) 방송 등을 통한 계기교육
- 3) 외부 강사 초청 강연

문6-4. 인권교육은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내 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았다
1) 인권의 뜻, 인권에 대한 지식 알기					
2) 인권 침해 문제 해결하기					
3) 인권을 위한 행동하기					
4) 인권을 존중하는 마음과 태도 갖기					

문6-5. 인권교육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내 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았다
1) 인권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					
2) 참여와 활동을 통하여 인권을 실행 하기					
3) 세부적인 인권문제(차별, 편견, 무관 심, 대량 학살 등)					
4) 인권 관련 기준(학급규칙, 규범, 인 권선언 등), 제도, 협약의 내용					

문6-6. 인권교육은 주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졌습니까?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 1) 선생님의 설명 2) 학생들의 참여와 활동
 3) 여러 가지 방법을 혼합하여 4) 기타

문6-7.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후, 어떤 도움이나 변화가 있었습니까?

내 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았다
1) 인권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하게 되었다.					
2) 인권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 졌다.					
3) 어떤 것이 인권 침해에 해당되는지 알게 되었다.					
4) 인권에 적절한 행동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5) 나와 다른 친구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존중하게 되었다.					
6) 내 주위에서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태도가 생겼다.					

문7. 학급규칙(학교생활규정 포함)에 대한 안내(설명)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1) 있다 2) 없다

문8. 학급규칙(학교생활규정 포함)에 따라 학교생활을 하도록 합니까?

-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지 않다

문9. 학급에서 학급규칙(학교생활규정 포함)을 학생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까?

-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지 않다

문10. 학급규칙(학교생활규정 포함)을 누가 정하는지 모두 선택해주세요.

- 1) 학교 2) 교사 3) 학생들 4) 학부모 5) 기타

문11. 학급규칙(학교생활규정 포함)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지 않다

문12. 우리 학교 선생님께서는 학급 운영이나, 수업 및 생활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해당하는 사항에 선택해 주십시오.

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았다
1) 학급규칙을 잘 알고 있으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며 적용하신다.					
2) 우리 학교 선생님은 학급이나 수업에서 학생 참여를 북돋아 주신다.					
3) 우리 학교 선생님은 학생들이 학급의 규칙을 스스로 정하도록 하신다.					
4) 우리 학교 선생님은 학생들과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신다.					
5) 우리 학교 선생님은 학생을 지도(교과 교육, 생활지도 등)할 때, 체벌보다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신다.					
6) 우리 학교 선생님은 학생의 개인 정보를 존중해주시다.					

문13. 학생들의 인권교육을 어느 시간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를 선택해 주십시오.

- 1) 교과 수업 시간 2)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3) 생활지도 시간
 4) 학교 행사시간 5) 기타 (_____)

문14. 학생들의 인권교육을 위한 방법 중 어떤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두 가
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 1) 체험 및 참여식 수업(학교 행사)
 2) 체험 및 참여식 수업(학급 행사)
 3) 토의·토론식 수업
 4) 동영상 활용 수업
 5) 외부 강사 활용 수업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2018년 학교 인권교육 실태 조사(중등용)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경상남도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추진하는 <학교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의 일환으로 학교에서 실천하고 있는 인권교육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진주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으로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여러분의 응답내용은 통계법(제33조, 제34조)에 의해 그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정책연구 이외의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생각을 솔직하게 선택하여 답변해 주시고, 되도록 한 질문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생각을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급	<input type="checkbox"/> 1) 초등학교 <input type="checkbox"/> 2) 중학교 <input type="checkbox"/> 3) 일반고 <input type="checkbox"/> 4) 특성화고 <input type="checkbox"/> 5) 특수학교(초, 중, 고)
설립유형	<input type="checkbox"/> 1) 국 . 공립 <input type="checkbox"/> 2) 사립
공학 여부	<input type="checkbox"/> 1) 남녀공학 <input type="checkbox"/> 2) 남학교 <input type="checkbox"/> 3) 여학교
학년	<input type="checkbox"/> 1) 1학년 <input type="checkbox"/> 2) 2학년 <input type="checkbox"/> 3) 3학년 <input type="checkbox"/> 4) 5학년 <input type="checkbox"/> 5) 6학년
성별	<input type="checkbox"/> 1) 남자 <input type="checkbox"/> 2) 여자
지역	<input type="checkbox"/> 1) 창원시 <input type="checkbox"/> 2) 김해시 <input type="checkbox"/> 3) 진주시 <input type="checkbox"/> 4) 양산시 <input type="checkbox"/> 5) 밀양시 <input type="checkbox"/> 6) 거제시 <input type="checkbox"/> 7) 통영시 <input type="checkbox"/> 8) 사천시 <input type="checkbox"/> 9) 거창군 <input type="checkbox"/> 10) 함양군 <input type="checkbox"/> 11) 산청군 <input type="checkbox"/> 12) 합천군 <input type="checkbox"/> 13) 하동군 <input type="checkbox"/> 14) 남해군 <input type="checkbox"/> 15) 의령군 <input type="checkbox"/> 16) 창녕군 <input type="checkbox"/> 17) 함안군 <input type="checkbox"/> 18) 고성군

※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보기 번호 앞 에 √ 해 주십시오.

인권 :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지만, 이들이 지닌 차이와 관계없이 모든 인간은 존엄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명, 자유, 재산 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인간이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인권이라고 합니다.

학교 인권교육 : 모든 사람들이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여러 교과 시간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인권 학습을 말합니다.

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았다
1) 장애학생들은 또래로부터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2) 장애학생들은 성희롱이나 성폭력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3)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또래로부터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4)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성희롱이나 성폭력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5) 독특한 행동이나 취향을 가진 학생들은 또래로부터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6) 독특한 행동이나 취향을 가진 학생들은 성희롱이나 성폭력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문4. 다음 중 여러분이 들어본 적이 있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1) 세계인권선언 2) 유엔 아동권리협약 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4) 학생인권조례 5) (경남)학생생활제규정표준안
 6)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 지침

문5. 여러분은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1) 매우 필요하다 2) 필요하다 3) 보통이다

- 4) 필요하지 않다 5) 전혀 필요하지 않다

문6. 현재 다니는 학교에서 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1) 예 (☞ 문6-1로 가시오)
 2) 아니오 (☞ 문7로 가시오)

문6-1.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면, 다음 중 어느 시간에 받았습니까? 기억 나는대로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1) 교과 수업 시간 2)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3) 조회나 종례 시간 4) 상담 시간 5) 기타 ()

문6-2. 교과 수업 시간에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면, 무슨 교과(목)에서 받았습니까? 기억나는 대로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1) 국어과 2) 사회과 3) 도덕과 4) 수학과

- 5) 과학과 6) 기술가정과 7) 예체능과(체육, 음악, 미술 등)
 8) 외국어과 9) 보건과 10) 인권과목
 11) 기타 ()

문6-3. 교과 수업 시간 이외의 시간에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면 주로 어떤 활동이었습니까?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 1) 학교 행사 2) 방송 등을 통한 계기교육
 3) 외부 강사 초청 강연

문6-4. 인권교육은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내 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았다
1) 인권의 뜻, 인권에 대한 지식 알기					
2) 인권 침해 문제 해결하기					
3) 인권을 위한 행동하기					
4) 인권을 존중하는 마음과 태도 갖기					

문6-5. 인권교육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내 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았다
1) 인권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					
2) 참여와 활동을 통하여 인권을 실행 하기					
3) 세부적인 인권문제(차별, 편견, 무관 심, 대량 학살 등)					
4) 인권 관련 기준(학급규칙, 규범, 인 권선언 등), 제도, 협약의 내용					

문6-6. 인권교육은 주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졌습니까?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 1) 선생님의 설명 2) 학생들의 참여와 활동
 3) 여러 가지 방법을 혼합하여 4) 기타

문6-7.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후, 어떤 도움이나 변화가 있었습니까?

내 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았다
1) 인권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하게 되었다.					
2) 인권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 졌다.					
3) 어떤 것이 인권 침해에 해당되는지 알게 되었다.					
4) 인권에 적절한 행동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5) 나와 다른 친구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존중하게 되었다.					
6) 내 주위에서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태도가 생겼다.					

문7. 학교규칙(학교생활규정 포함)이 개정될 때 마다 안내(설명) 하고 있습니까?

- 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문8. 학교규칙(학교생활규정 포함)에 따라 학생생활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까?

- 1) 매우 그렇다
- 2) 그렇다
- 3) 보통이다
- 4)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지 않다

문9. 학교에서 학교규칙(학교생활규정 포함)을 학생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까?

- 1) 매우 그렇다
- 2) 그렇다
- 3) 보통이다
- 4)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지 않다

문10. 학교규칙(학교생활규정 포함) 개정은 학생, 교원, 학부모 대표로 구성된 '학교규칙제개정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안내받은 적이 있거나 알고 있습니까?

- 1) 그렇다
- 2) 그렇지 않다

문11. 우리 학교에서는 학교규칙(학교생활규정 포함)을 만들고 바꾸기 위해 학생

문13. 학생들의 인권교육을 어느 시간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두 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 1) 교과 수업 시간 2)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3) 생활지도 시간
- 4) 학교 행사시간 5) 기타 (_____)

문14. 학생들의 인권교육을 위한 방법 중 어떤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두 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 1) 체험 및 참여식 수업(학교 행사)
- 2) 체험 및 참여식 수업(학급 행사)
- 3) 토의·토론식 수업
- 4) 동영상 활용 수업
- 5) 외부 강사 활용 수업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2018년 교육정책 연구보고서
학교 인권교육 개선방안 연구 :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발행일 | 2018년 12월 28일 인쇄
2018년 12월 28일 발행

발행인 |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원 장 황 선 준

기획 |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관 김진규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사 이상제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사 박소진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사 이화순

발행기관 |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51141) 경상남도 창원시 사림로 111번길 20
누리집 : <http://www.gerii.go.kr>
전화 : (055)269-0777
전송 : (055)269-0789

인쇄 | 삼영인쇄 주식회사 (Tel. 055-252-3041)



2018년 교육정책 연구보고서

학교 인권교육 8권
개선방안 연구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GYEONGSANGNAMDO EDUCATION RESEARCH & INFORMATION INSTITUTE



비매품/무료



9 791196 578671
ISBN 979-11-965786-7-1